

2018년 해외 이슈조사 보고서

# 2018년 중국 농식품 통관 가이드북



농림축산식품부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1. 농식품 수출 사전준비** **1**


---

- 가. 중국 행정기구 통폐합 이슈 ..... 1
- 나. HS CODE 조회, 수입조건 및 검역유형 확인 ..... 1
- 다. 국가표준 확정 ..... 3
- 라. 성분 심의 ..... 11
- 마. 보건식품과 일반식품 ..... 15
- 바. 외포장지 심의 ..... 18
- 사. 중문라벨링 ..... 19
- 아. 수출(생산)업체 등록 ..... 22

---

**2. 통관 관련 서류준비** **23**


---

- 가. HS CODE 확정 ..... 23
- 나. 수출 서류작성 및 신고 ..... 26
- 다. 원산지증명서(C/O) 발급 ..... 27
- 라. 영문 위생증명서(H/C) 발급 ..... 33

---

**3. 농식품 통관절차** **36**


---

- 가. 2018년 통관제도 변화 ..... 36
- 나. 서류 준비 및 해관 신고 ..... 37
- 다. 관세 납부 ..... 38
- 라. 실물 검사 및 세부 검역 ..... 40
- 마.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위생증) 발급 ..... 41

---

**4. 품목별 사전 검토사항** **43**

---

|                    |     |
|--------------------|-----|
| 가. 과자류 .....       | 45  |
| 나. 면류 .....        | 73  |
| 다. 음료 .....        | 84  |
| 라. 주류 .....        | 113 |
| 마. 식물성유지 .....     | 122 |
| 바. 기타 조제 농산물 ..... | 129 |
| 사. 채소류 .....       | 162 |
| 아. 버섯류 .....       | 168 |
| 자. 코코아류 .....      | 173 |
| 차. 커피류 .....       | 181 |
| 카. 차류 .....        | 187 |
| 타. 인삼류 .....       | 190 |
| 파. 과일류 .....       | 198 |
| 하. 곡류 .....        | 210 |
| 거. 소스류 .....       | 215 |
| 너. 낙농품 .....       | 224 |
| 더. 삼계탕 .....       | 252 |

---

**5. 식품 수출시 유의사항** **257**

---

|                       |     |
|-----------------------|-----|
| 가. 사전 검토 .....        | 257 |
| 나. 통관서류 준비 .....      | 257 |
| 다. 품목별 검역 동향 파악 ..... | 257 |

# 1

## 농식품 수출 사전준비

### 가. 중국 행정기구 통폐합 이슈

행정기관별 중복된 직무와 업무효율 저하 등 경영 비효율 제거를 목적으로 2018년 3월 중국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기구 개혁방안 통과, 중국 행정 부문의 신설/통폐합 진행

기존 검역국, 상검국으로 불리던 출입경검험검역국(CIQ)은 해관으로 통합, 검역합격증 등 발행 문서의 명칭 및 날인 인장의 명칭이 해관으로 변경됨(CIQ의 해관 통합에 따른 통관절차 변화에 관한 내용은 제 3장 참조)

해관에서 수출입 관련 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업무효율 증대, 통관 시간이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 통관 후 유통 관리감독 강화 예정

#### ■ 수입식품 통관/검역 및 유통 관할 행정부처 변경 참고 ■

| 기존                   | 대표 직무                          | 변경 후                               |
|----------------------|--------------------------------|------------------------------------|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AQSIQ) | 국가/품목별 수출입 허가, 수입식품 생산공장등록관리 등 | 해관총서로 대표 직무 이관, 국가시장감독관리국으로 통합(신설) |
| 출입경검험검역국(CIQ)        | 수출입 화물 검역                      | 해관 총서(통합)                          |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경영허가, 불법행위 단속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통합 신설)                 |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CFDA)   | 식품, 약품 생산/수입 허가 및 유통 관리 감독     |                                    |

### 나. HS CODE 조회, 수입조건 및 검역 유형 확인

#### (1) HS CODE 조회

수입 식품은 반드시 수입 식품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일부 품목은 수입이 제한되어 있거나 별도의 수입허가 제도 적용

또한 수입 신고시 HS CODE별로 식품의 세부품목이 나뉘어져 있으며, 세부 품목별로 국가별 수입 허가 목록이 있거나 국가표준 등 검역조건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파악이 중요함

## (2) 수입조건 및 검역유형 확인

HS CODE에 따른 세부 검역신고 가능 품목조회가 가능하며 수입 조건 및 검역유형 확인 가능

Ⅰ HS CODE에 따른 수입/검역조건 예시 Ⅰ

| 품목   | HS CODE     | 해관 수입조건  | 추가 검역조건             | 수입가능 여부        |
|------|-------------|----------|---------------------|----------------|
| 신선우유 | 04012000.00 | 자동수입허가   | 유제품 생산 공장 등록, 동물검역증 | 가능             |
| 올리브유 | 15091000.00 | 자동수입허가   | 식물검역증               | 가능             |
| 건인삼  | 12112099.00 | 수입약품 통관단 | 국가별 수입허가 목록, 식물검역증  | 가능             |
| 곶감   | 08134020.00 | -        | 국가별 수입허가 목록, 식물검역증  | 불가<br>(’18 기준) |

※ 곶감은 국가별 수입허가 목록 중 수입이 허가된 국가가 없어 한국산 곶감 수입 불가

특히 영유아 조제분유, 유제품, 육류, 수산물, 제비집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해외 생산공장이 중국 CNCA(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에 생산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쌀, 포도, 삼계탕 또한 재배지 생산농장과 최종 포장이 진행된 공장, 도축장 및 생산공장 등록 필요

또한 제품의 유형, 성분, 함량에 따른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 HS CODE를 분류해야 하고 해당 HS CODE의 경우 공장등록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ex) HS CODE 0401100000-0406900000, 1901100010, 1901900000, 2106909001, 3501100000, 3502200000 중 유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생산 공장 등록 필요

■ 한국 육류생산기업(레토르트 삼계탕) 중국공장 등록 명단 예시 ■



中华人民共和国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局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韩国肉类生产企业在华注册名单

( 2018 年 2 月 9 日更新 )

| 参鸡汤注册企业信息 ( 11 家 )                                                      |                           |                              |                                                                                 |                              |                                |            |
|-------------------------------------------------------------------------|---------------------------|------------------------------|---------------------------------------------------------------------------------|------------------------------|--------------------------------|------------|
| Information of the Registered Ginseng Chicken Soup Establishment ( 11 ) |                           |                              |                                                                                 |                              |                                |            |
| 序号<br>No                                                                | 注册编号<br>Registration No.  | 企业名称<br>Est. Name            | 地址<br>Est. Address                                                              | 生产方式<br>Activities           | 产品<br>Registration<br>Products | 备注<br>Note |
| 1                                                                       | 19980476002               | Harin<br>Corporations        | 14, MANGSUNG-RO,<br>MANGSUNG-MYUN, IKSAN-CITY,<br>JEONBUK, KOREA                | 加工、储藏<br>Processing, Storing | 参鸡汤<br>Ginseng Chicken<br>Soup |            |
| 2                                                                       | 6430000-004-200<br>6-0014 | Nonghyup<br>Mogichon<br>INC. | Daegu-ro 1278 Beon-gil 81,<br>Guanwang-eub, Eunseong-gun,<br>Chungbuk-Do, Korea | 加工、储藏<br>Processing, Storing | 参鸡汤<br>Ginseng Chicken<br>Soup |            |
| 3                                                                       | 2013-0476004              | CHARMFRE<br>CO., LTD.        | 32-29, Okyeo-gil, Haengun-myeon,<br>Buan-gun, Jeonbuk-Do, Korea                 | 加工、储藏<br>Processing, Storing | 参鸡汤<br>Ginseng Chicken<br>Soup |            |
| 4                                                                       | 6460000-004-199           | SAJO                         | 792,Geunyeong-Ro,                                                               | 加工、储藏                        | 参鸡汤                            |            |

## 다. 국가표준 확정

### ■ 법률 근거 : 식품안전법 제92조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함

### (1) 식품안전 국가표준이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국무원 산하 위생행정부문(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이하 위생부)과 국가지장감독관리총국의 제정, 공포를 거쳐 제정되는 식품안전표준으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반드시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함

현 식품 관련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총 1,157개(2017년 4월 기준)가 있으며, 식품 수입시 통상 참고하는 표준으로는 통용표준 11개, 제품표준 64개, 특수식품 9개가 있음

2017년 4월 중국 위생부에서는 국가표준 정리 및 수정 통합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며, 매년 수정과 갱신, 통합 작업을 통해 식품안전 국가표준 정리 작업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 2017년 4월 발표된 식품안전 국가표준 1차 정리 목록

| 분류   | 내용                                      | 개수  |
|------|-----------------------------------------|-----|
| 통용표준 | 식품첨가제 기준, 오염물질 제한량, 라벨통칙 등 포괄 적용되는 통용표준 | 11개 |
| 제품표준 | 조제유, 음료, 라면 등 개별 제품 유형에 적용되는 제품표준       | 64개 |
| 특수식품 | 영유아식품, 특수용도식품 등에 적용되는 특수 제품표준           | 9개  |

※ 2018년 11월 기준 추가 발표된 국가표준은 총 27개로 그중 제품표준 7개, 식품첨가제 및 영양강화제 16개, 생산경영규범 4개가 있으며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까지 시행 년도 상이

### 2018년 11월 기준 주요 식품안전 국가표준 목록 1 - 통용표준

| 순  | 식품안전 국가표준 명칭          | 표준 번호         |
|----|-----------------------|---------------|
| 1  | 식품중 진균독소제한량           | GB 2761-2017  |
| 2  | 식품중 오염물질제한량           | GB 2762-2017  |
| 3  | 식품중 농약최대잔류제한량         | GB 2763-2016  |
| 4  | 식품중 병원균제한량            | GB 29921-2013 |
| 5  | 식품첨가제 사용표준            | GB 2760-2014  |
| 6  | 식품접착재료 및 제품용 첨가제 사용표준 | GB 9685-2016  |
| 7  |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         | GB 14880-2012 |
| 8  | 예포장식품 라벨통칙            | GB 7718-2011  |
| 9  | 예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 GB 28050-2011 |
| 10 | 예포장특수선식용식품 라벨         | GB 13432-2013 |
| 11 | 식품첨가제 표시통칙            | GB 29924-2013 |

### 2018년 11월 기준 주요 식품안전 국가표준 목록 2 - 제품표준

| 순 | 표준 명칭        | 표준 번호         |
|---|--------------|---------------|
| 1 | 치즈           | GB 5420-2010  |
| 2 | 유청분말과 유청단백분말 | GB 11674-2010 |
| 3 | 연유           | GB13102-2010  |
| 4 | 생우유          | GB 19301-2010 |

| 순  | 표준 명칭                        | 표준 번호          |
|----|------------------------------|----------------|
| 5  | 발효유                          | GB 19302-2010  |
| 6  | 분유                           | GB 19644-2010  |
| 7  | 파스퇴르(저온)살균유                  | GB19645-2010   |
| 8  | 크림, 버터와 무수 유지방               | GB 19646-2010  |
| 9  | 멸균유                          | GB 25190-2010  |
| 10 | 조제유                          | GB 26191-2010  |
| 11 | 재가공치즈                        | GB 25192-2010  |
| 12 | 유당                           | GB 25595-2010  |
| 13 | 벌꿀                           | GB 14963-2011  |
| 14 | 급속냉동 밀가루 및 쌀류 가공제품           | GB 19295-2011  |
| 15 | 식용염의 요오드 함량                  | GB 26878-2011  |
| 16 | 증류주 및 증류 혼합주                 | GB 2757-2012   |
| 17 | 발효주 및 발효 혼합주                 | GB 2758-2012   |
| 18 | 글루텐 제품                       | GB 2711-2014   |
| 19 | 두류(콩) 제품                     | GB 2712-2014   |
| 20 | 양조장류                         | GB 2718-2014   |
| 21 | 식용균 및 식용균 제품                 | GB 7096-2014   |
| 22 | 초콜릿, 코코아버터 대체 유지 초콜릿 및 관련 제품 | GB 9678.2-2014 |
| 23 | 수산 조미품                       | GB10133-2014   |
| 24 | 식용 설탕                        | GB 13104-2014  |
| 25 | 전분당                          | GB 15203-2014  |
| 26 | 보건식품                         | GB 16740-2014  |
| 27 | 팽화식품                         | GB 17401-2014  |
| 28 | 포장음용수                        | GB 19298-2014  |
| 29 | 견과 및 씨앗류 식품                  | GB 19300-2014  |
| 30 | 전분제품                         | GB 2713-2015   |
| 31 | 염장채소                         | GB 2714-2015   |
| 32 | 미정(화학조미료)                    | GB 2720-2015   |

| 순  | 표준 명칭                   | 표준 번호         |
|----|-------------------------|---------------|
| 33 | 식용염                     | GB 2721-2015  |
| 34 | 염지 육가공품                 | GB 2730-2015  |
| 35 | 신선, 냉동 동물성 수산물          | GB 2733-2015  |
| 36 | 알 및 알 가공품               | GB 2749-2015  |
| 37 | 빙과류 및 빙과류 반제품           | GB 2759-2015  |
| 38 | 통조림식품                   | GB 7096-2015  |
| 39 | 케이크, 빵                  | GB 7099-2015  |
| 40 | 과자                      | GB 7100-2015  |
| 41 | 음료                      | GB 7101-2015  |
| 42 | 동물성 수산제품                | GB 10136-2015 |
| 43 | 식용 동물유지                 | GB 10146-2015 |
| 44 | 콜라겐 소시지 케이싱             | GB 14967-2015 |
| 45 | 식용유지제품                  | GB 15196-2015 |
| 46 | 식품공업용 농축액(죽, 농도가 진한 액즙) | GB 17325-2015 |
| 47 | 인스턴트면                   | GB 17400-2015 |
| 48 | 젤리                      | GB 19299-2015 |
| 49 | 식용 식물유 원료               | GB 19641-2015 |
| 50 | 건해삼                     | GB 31602-2015 |
| 51 | 신선(냉동)축산, 가금류 제품        | GB 2707-2016  |
| 52 | 양식(곡물 등 식량)             | GB 2715-2016  |
| 53 | 익힌 육가공 제품               | GB 2726-2016  |
| 54 | 당절임 식품                  | GB 14884-2016 |
| 55 | 식품가공용 박(지게미)류           | GB 14932-2016 |
| 56 | 캔디                      | GB 17399-2016 |
| 57 | 시리얼 제품                  | GB 19640-2016 |
| 58 | 조류 및 조류제품               | GB 19643-2016 |
| 59 | 식품가공용 식물단백              | GB 20371-2016 |
| 60 | 화분                      | GB 31636-2016 |



| 순  | 표준 명칭     | 표준 번호         |
|----|-----------|---------------|
| 61 | 식용전분      | GB 31637-2016 |
| 62 | 카제인       | GB 31638-2016 |
| 63 | 식품 가공용 효모 | GB 31639-2016 |
| 64 | 식용 주정     | GB 31640-2016 |
| 65 | 식물유       | GB 2716-2018  |
| 66 | 간장        | GB 2717-2018  |
| 67 | 식초        | GB 2719-2018  |
| 68 | 음용천연광천수   | GB 8537-2018  |
| 69 | 유당        | GB 25595-2018 |
| 70 | 복합조미료     | GB 31644-2018 |
| 71 | 콜라겐 펩타이드  | GB 31645-2018 |

■ 2018년 11월 기준 주요 식품안전 국가표준 목록 3- 특수식품표준 ■

| 순 | 식품안전 국가표준 명칭           | 표준 번호         |
|---|------------------------|---------------|
| 1 | 영아 조제식품                | GB 10765-2010 |
| 2 | 생후 6~12개월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 | GB 10767-2010 |
| 3 | 영유아 곡류 보조식품            | GB 10769-2010 |
| 4 | 영유아 캔 보조식품             | GB 10770-2010 |
| 5 | 특수의학용도 영유아 조제식품 통칙     | GB 25596-2010 |
| 6 |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통칙         | GB 29922-2013 |
| 7 | 이유식 영양 보충식품            | GB 22570-2014 |
| 8 | 운동 영양식품 통칙             | GB 24154-2014 |
| 9 | 임산부 및 수유기 여성 영양 보충식품   | GB 31601-2015 |

## (2) 2018년 개정/신규 국가표준

제품 국가표준 중 2010년 이전 발표된 표준은 지속적으로 갱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존 위생표준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으로 개정, 복합조미료와 콜라겐 펩타이드 국가표준 신규 제정

■ 2018년 신규/개정 국가표준 주요 내용 참고 ■

| 표준 명칭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식물유   | 표준번호 | GB 2716-2005<br>위생표준                                               | GB 2716-2018<br>식품안전 국가표준<br>2018년 12월 21일 시행                                              |
|       | 이화지표 | 용제잔류량:<br>식물원유 ≤ 100mg/kg,<br>식용식물유 ≤ 50mg/kg                      | 용제잔류량: 식물원유 ,<br>식용식물유 ≤ 20mg/kg ,<br>압착유용제잔류량 10mg/kg 미만                                  |
|       | 중문라벨 | -                                                                  | 식용식물혼합유는 중문라벨 명칭에<br>기재, 각 식물유의 비율 기재                                                      |
| 간장    | 표준번호 | GB 2717-2003<br>위생표준                                               | GB 2717-2018<br>식품안전 국가표준<br>2019년 12월 21일 시행                                              |
|       | 적용품목 | 양조간장, 혼합간장                                                         | 양조간장에만 적용, 혼합간장은<br>복합조미료 GB 31644-2018 적용                                                 |
|       | 이화지표 | 미생물: 균락총수<br>(좌찬용 간장에만 적용)<br>30,000(CFU/100mL),<br>대장균 30(MFN/mL) | 미생물: 균락총수<br>5×10 <sup>3</sup> (CFU/mL),<br>대장균 10(CFU/mL)                                 |
| 식초    | 표준번호 | GB 2719-2003<br>위생표준                                               | GB 2719-2018<br>식품안전 국가표준<br>2019년 12월 21일 시행                                              |
|       | 적용품목 | 양조식초, 혼합식초                                                         | 식초, 단맛식초에만 적용,<br>혼합식초는 복합조미료 GB<br>31644-2018 적용                                          |
|       | 이화지표 | 유리무기산도: 검출 불가,<br>미생물: 균락총수<br>10,000(CFU/100mL),<br>대장균 3(MFN/mL) | 총 산: 식초 ≥ 3.5,<br>단맛식초 ≥ 2.5<br>미생물: 균락총수<br>5×10 <sup>3</sup> (CFU/mL),<br>대장균 10(CFU/mL) |

| 표준 명칭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음용천연광천수     | 표준번호 | GB 8537-2008<br>위생표준                 | GB 8537-2018<br>식품안전 국가표준<br>2019년 6월 21일 시행       |
|             | 감관지표 | 색도/도 $\leq 15$ ,<br>혼탁도/NTU $\leq 5$ | 색도/도 $\leq 10$ ,<br>혼탁도/NTU $\leq 1$               |
|             | 경계지표 | 7항                                   | 8항(요오드화물 삭제)                                       |
|             | 제한지표 | 산소소비량 3.0mg/L                        | 산소소비량 2.0mg/L                                      |
| 유당          | 표준번호 | GB 25595-2010<br>식품안전 국가표준           | GB 25595-2018<br>식품안전 국가표준<br>2019년 6월 21일 시행      |
|             | 표준번호 | -                                    | GB 31644-2018<br>식품안전 국가표준(신규)<br>2019년 12월 21일 시행 |
|             | 이화지표 | pH/(10%수용액) : 4.5~7.0                | pH 제한 삭제                                           |
| 복합<br>조미료   | 표준번호 | -                                    | GB 31644-2018<br>식품안전 국가표준(신규)<br>2019년 12월 21일 시행 |
| 콜라겐<br>펩타이드 | 표준번호 | -                                    | GB 31645-2018<br>식품안전 국가표준(신규)<br>2018년 12월 21일 시행 |

그 밖에 영유아곡류보조식품의 카드뭉 임시 제한량을 0.06mg/kg으로 발표함

국가표준의 시행일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상이하며,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개정 국가표준의 내용에 유의해야 하며, 기존 국가표준이 없어 원료 사용 및 표기가 제한되었던 콜라겐 제품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콜라겐 펩타이드(胶原蛋白肽)”라는 명칭 사용 가능

### (3) 수출 진행 전 제품 사전심의 절차

수입식품의 검역기준이 되는 ‘국가표준(제품표준과 통용표준)’을 사전에 확정하고, 해당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검역 항목을 확인, 중국의 규정에 맞는 제품이력 확보 후 수출을 준비하여 수입통관시 불합격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식품안전<br>국가표준 확정 | 포장지, 원재료,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심의<br>검역 요구 조건 확인 | 중문라벨 제작 및<br>수출 준비 |

#### (4) 심의시 필요한 서류

- 외포장지 전개도 (포장형태, 제품가공 형태에 따라 국가표준 적용이 상이할 수 있음)
- 성분배합 비율표 (성분과 함량비율에 따라 국가표준 적용이 상이할 수 있음)
- 제조공정도 (제조공정에 따라 국가표준 적용이 상이할 수 있음)

#### ▶ Q&A\_1 국가표준

##### 1. 국가표준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식품안전 국가표준 데이터 검색 포털 <http://bz.cfsa.net.cn/db>에서 국가표준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제품의 성분,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표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표준을 잘못 적용하여 수출을 준비할 경우 실제 통관시 적용되는 표준과 달라 예상치 못한 검역 항목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적용 가능한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 절차를 통해 중국 위생부에 국가표준 신청을 하고 심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표준이 제정되거나, 기존 국가표준 적용이 가능함이 확인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적용 가능 국가표준이 없는지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용 가능 국가표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
|----------------------------|------------------------------------------------------------------|
| 1                          | 통용표준 혹은 제품표준이 포괄할 수 있는 식품유형일 경우                                  |
| 2                          | 국무원 관련 기관에서 공고 혹은 비준한 식품일 경우                                     |
| 3                          | 기존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있는 각종 원료를 혼합하여 생산한 식품 및 기타 국가표준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료 출처: 2017년 4월 17일 중국 위생부 통지 国卫办食发(2017)14호

(1) 적용 가능한 “제품표준”이 없는 경우, 통용표준으로 적용이 가능하면 국가표준이 있는 것으로 간주

ex) ‘고추장’이라는 GB 제품표준은 없지만, 통용표준 중 “조미료”의 항목별 제한량 기준이 있어 검역시 적용 가능하므로, 국가표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입이 가능함

(2) 중국 위생부에 국가표준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사용된 주원료가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또 그로 인해 최종제품 유형이 통용표준 등 그 어떤 표준으로도 참고가 불가능한 경우, 위생부나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에서 판단했을 때 새로운 표준 없이는 수입이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음

3. 식품안전 국가표준 GB 외 기타 하위 지역표준이나 기업표준을 수입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나요? 일부 검역 담당관들은 국가표준이 없거나 소재지 항구에서는 해당 유형의 제품이 수입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법 제92조에서는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등 식품관련 제품은 반드시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식품은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하위 표준을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국에서 이미 하위 표준이 있어 제품의 유형을 특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통용표준의 세부 분류에서 검역 항목을 찾아 담당 검역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라. 성분 심의

■ 법률 근거 : 식품안전법 제34조 제1항

식품원료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가 아닌 화학물질이나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한 식품, 회수된 원료로 생산된 식품을 생산 혹은 경영하는 것을 금지함

### (1) 성분 심의 대상

중국에서 식품은 크게 보건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나뉘며 일반제품으로 수입시에도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는 중국의 관련기준에 부합함이 증명되어야 수입이 가능함

특히 원재료 중 “보건식품 원료(한국의 기능성 식품)”를 포함하는 경우 일반식품으로 수입이 불가하며 제품의 보건식품 인증 획득 후 수입 가능하고 특정 효능에 대한 광고가 가능함

또한 중국은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품목별 첨가 가능 여부와 첨가량을 품목을 세분화하여 제한하고 있어 한국에서 품목에 구매 받지 않고 두루 쓰이거나 제한량이 없는 첨가제라도 중국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함

#### ■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기준 ■

| 원료 구분                                   | 품목 예시                                                                       | 심의 기준                                   |
|-----------------------------------------|-----------------------------------------------------------------------------|-----------------------------------------|
| 특정 지역에서 30년간 전통 식용 관습 보유 및 생산 이력이 있는 원료 | 오이, 토마토, 당근, 시금치, 커피 등                                                      | 사용 원료<br>중국 기준<br>부합 여부 심의              |
| 전통적으로 중약재이면서 식품에도 사용되는 원료               | 대추, 도라지, 은행, 뽕잎, 갈근, 감초, 구기자, 어성초 등                                         |                                         |
| 신식품원료                                   | 5년근 이하 인삼, 알로에(베라) 등 전통 식용 관습이 없는 동/식물 등 중국 위생부의 신식품원료 허가를 받아 일반식품으로 승인된 원료 |                                         |
| 식품첨가제                                   | 인산염, 구연산나트륨 등 국가표준 GB2760에서 규정한 식품첨가제                                       | 국가표준에<br>기재된 종류와<br>품목별 제한량<br>준수 여부 심의 |
| 영양강화제                                   | 비타민C, 칼슘, 철 등 비타민과 광물질 등 GB14880에서 규정한 영양강화제                                |                                         |

※ 2013년 10월 시행된 “신식품원료 안전성평가관리방법”에 따라 기존 ‘신자원식품’이 ‘신식품원료’로 명칭이 변경됨

### 일반식품으로 승인된 신식품원료 예시

| 원료 명칭                 | 영문명                                                            | 사용/표기제한                                                      | 공고일                             |
|-----------------------|----------------------------------------------------------------|--------------------------------------------------------------|---------------------------------|
| 인삼                    | Panax Ginseng<br>C.A.Meyer                                     | 인공재배된 5년근 이하 뿌리,<br>줄기로 섭취량 하루 3g 이하,<br>임산부 영유아 섭취 제한 표기 필수 | 2012-08-29                      |
| 알로에                   | Aloe Vera Gel                                                  | 베라알로에, 임산부와 영유아 섭취<br>제한표기 필수                                | 2008-05-26                      |
| 용충초<br>(인공재배<br>동충하초) | Cordyceps militaris                                            | 인공재배, 영유아와 아동 식용 제한<br>및 식용균에 알레르기 경고 문구 기재                  | 2009-03-16<br>2014-5-20<br>(수정) |
| 치아씨                   | Chia seed                                                      | 영유아식품에 사용 금지                                                 | 2014-05-20                      |
| 아로니아                  | Black chokeberry<br>([Aronia melanocarpa<br>(Michx.) Elliott]) | 아로니아 과실로 1일 식용량 10g,<br>영유아와 임산부 식용 제한 문구기재<br>필수            | 2018-09-12                      |
| 모링가잎                  | Moringa oleifera leaf                                          |                                                              | 2012-11-12                      |

※ 한국에서 일반 식품에 두루 쓰이는 아로니아의 경우 2018년 9월 12일 신식품원료로 승인됨(승인 전  
까지 일반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하였음)

### 특정 원료의 일반식품원료 승인 예시

| 원료 명칭 | 영문명                                 | 사용/표기제한               | 공고일        |
|-------|-------------------------------------|-----------------------|------------|
| 아마씨   | Flaxseed, linseed,<br>semen lini    | “익힌 후 섭취”<br>문구 기재 필수 | 2017-12-21 |
| 히비스커스 | Hibiscus sabdariffa                 | -                     | 2004-08-17 |
| 옥수수수염 | Corn silk                           | -                     | 2012-10-18 |
| 백년초   | Opuntia ficus-indica(Linn.)<br>Mill | -                     | 2012-11-12 |
| 우엉근   | Arctium lappa root                  | -                     | 2012-11-12 |

### ■ 한국 식품첨가제 중 중국 사용 불가/제한 첨가제 예시 ■

| 첨가제 명칭  | 첨가제한량 비교                                        |                                                             |
|---------|-------------------------------------------------|-------------------------------------------------------------|
|         | 한국                                              | 중국                                                          |
| 효소처리 루틴 | 산화방지제/제한량 없음                                    | 식품첨가물 규정<br>GB 2760-2014에 없음                                |
| 적양배추색소  | 착색료                                             | 식품첨가물 규정<br>GB 2760-2014에 없음                                |
| 치자적색소   | 착색료/일부 품목 제외 첨가 가능/<br>제한량 없음                   | 식품첨가물 규정<br>GB 2760-2014에 없음                                |
| 토마토색소   | 천연식품/다류/커피/고춧가루/김치류/<br>고추장, 조미고추장/ 식초 제외 사용 가능 | 풍미발효유 0.006g/kg,<br>음료류(포장음용수 제외) 0.006g/kg                 |
| 규소수지    | 소포제/0.05g/kg                                    | 공제품공정(0.3g/kg), 육가공품 및<br>맥주가공 공정(0.2g/kg) 등 품목별<br>제한량 상이함 |

## (2) 성분 심의에 필요한 서류

### - 성분배합 비율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진실한 내용으로 작성, 임의로 조정하여 제출할 경우 수입  
검역시 식품첨가제 사용량 초과 등으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

## ▶ Q&A\_2 원료/성분

### 1. 전통적인 식용 관습을 30년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소 중국의 성(省)관할 구역에서 30년간 식용한 관습이 있다면, 이는 곧 일정  
원료를 30년간 식용하였음에도 인체의 이상 반응이나 질병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0년의 식용 관습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은 해당 행정구역의  
위생부에서 관할합니다. 만약 30년의 식용 관습이 없는 특정 원료라면 “안전성  
평가보고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위생부의 심의를 받은 후 “신식품원료”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 2. 한국에서 신개발된 특허받은 원료인데,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신개발된 원료, 특히 추출물과 같은 원료는 중국에서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없을 뿐 아니라 동/식물과 미생물에서 분리된 성분이므로 “신식품원료”로 승인을 받은 후 일반식품에 첨가가 가능합니다. 신식품원료로 승인받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원료 선택시 주의해야 합니다.

## 3. 한국 식품공전에 존재하는 식품첨가제인데 왜 중국에서는 첨가가 안 되나요?

중국에서 식품첨가제는 GB2760 식품첨가제 국가표준에 따라 규정된 품목과 제한량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식품첨가제는 중국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중국에서 규정한 첨가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마. 보건식품과 일반식품

### (1) 보건식품, 일반식품 정의

특정 보건기능이 있음을 표명하거나 비타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섭취 대상을 특정하거나 인체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고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인체에 어떠한 급성, 아급성(亞急性) 혹은 만성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식품

일반식품은 일반식품의 형태(캡슐, 알약(tablet, pill)의 형태는 보건식품으로 분류)를 갖추고 있으며, 사용된 원료가 모두 일반식품에 사용이 허가된 것으로 섭취시 인체에 발현되는 어떠한 기능이나 효과도 선전하지 않는 식품을 지칭함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제품 유형과 성분을 검토하여 모든 원료가 일반식품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정 효능을 광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식품으로 수입 가능하며, 마케팅 전략상 반드시 특정효능 광고시 보건식품으로 등록이 선 진행되어야 하나 등록 시간과 비용 소요(2년 이상, 보통 한화 5천만 원 이상)

### ■ 보건식품과 일반식품 비교 ■

| 분류                              | 보건식품           | 일반식품                  |
|---------------------------------|----------------|-----------------------|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br>(구 CFDA) 등록 혹은 비안 | ○              | ×                     |
| 특정 기능 강조                        | ○              | ×                     |
| 특정 섭취대상 설정                      | ○              | ×                     |
| 섭취량 제한                          | ○              | ×                     |
|                                 |                | (단, 일부 품목은 제한량 표기 필요) |
| 사용가능 원료                         | 보건식품원료, 일반식품원료 | 일반식품원료                |

### (2) 보건식품 효능

보건식품의 효능은 총 27가지가 있으며 해당 효능을 표명한 제품은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구 CFDA)에 보건식품으로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보건식품은 절차가 간소화된 비안 진행 후 수입 가능

### ■ 보건식품 효능 목록 ■

| 순  | 보건 효능              | 섭취 대상             |
|----|--------------------|-------------------|
| 1  | 면역력 증강             | 면역력 저하자           |
| 2  | 항산화                | 중년층/노인            |
| 3  | 기억력 개선 보조          | 기억력 개선 필요자        |
| 4  | 체력피로 완화            | 쉽게 피로한 자          |
| 5  | 다이어트               | 단순 비만인 자          |
| 6  | 성장발육 개선            | 성장발육이 불량한 아동      |
| 7  | 산소부족에 대한 저항력 향상    | 산소부족 환경에 있는 자     |
| 8  |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조, 보호   | 방사선 접촉자           |
| 9  | 혈중 지질 강하 보조        | 혈중 지질이 높은 자       |
| 10 | 혈당 강하 보조           | 혈당이 높은 자          |
| 11 | 수면 개선              | 수면 상태가 좋지 못한 자    |
| 12 | 결핍성 빈혈개선           | 결핍성 빈혈이 있는 자      |
| 13 | 화학성 간손상에 대한 보조, 보호 | 화학성 간손상의 위험이 있는 자 |

| 순  | 보건 효능             | 섭취 대상           |
|----|-------------------|-----------------|
| 14 | 모유 분비 촉진          | 수유기 여성          |
| 15 | 시력 피로 완화          | 눈이 쉽게 피로한 자     |
| 16 | 납 배출 촉진           | 납 오염 환경에 노출된 자  |
| 17 | 목을 시원하게 함         | 목(인후)이 불편한 자    |
| 18 | 혈압 강하 보조          | 혈압이 높은 자        |
| 19 | 골밀도 증가            | 중년층/노인          |
| 20 | 장내 균균 조절          | 장기능이 약한 자       |
| 21 | 소화 촉진             | 소화 불량자          |
| 22 | 캐변 보조             | 변비가 있는 자        |
| 23 | 위점막 보호            | 경미하게 위점막이 손상된 자 |
| 24 | 여드름 제거            | 여드름이 있는 자       |
| 25 | 기미 제거             | 기미가 있는 자        |
| 26 | 피부 수분 개선          | 피부가 건조한 자       |
| 27 | 피부 유분 개선          | 피부 유분이 많거나 적은 자 |
| 기타 | 영양소 보충제(비타민, 미네랄) | 영양소 보충이 필요한 자   |

■ 한국 건강기능식품의 “일반식품”으로 분류시 예시 ■

| 품목 명칭      | 내용                                                                            | 효능광고 |
|------------|-------------------------------------------------------------------------------|------|
| 헛개 숙취해소 음료 | 숙취해소 기능 광고하지 않을 경우 원료 심의 후 일반식품으로 수입 가능(헛개는 일반식품 원료)                          | 불가   |
| 홍삼정 스틱     | “면역력 증대”의 한글 효능 문구 삭제, 5년근 이하 인공재배한 인삼 사용시 일반 음료로 수입 가능                       | 불가   |
| 비타민 캔디     | 식품안전 국가표준 영양강화제 사용 기준에 부합하도록 “캔디”류에 첨가 가능한 비타민 종류 내에서 제한량을 맞출 경우 일반 캔디로 수입 가능 | 불가   |
| 유산균 제품     | 일반식품에 첨가 가능한 유산균 사용시 기타 부원료가 일반식품일 경우 일반 고형 음료로 수입 가능                         | 불가   |
| 다이어트용 선식   | 곡물과 일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선식제품은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제외하고 생산하여 일반 고형음료로 수입 가능   | 불가   |

※ 단, 개별 제품의 원료와 포장, 유형에 따라 일반식품으로 수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개별심의 필요

## 바. 외포장지 심의

한국 내수용 외포장지에 중문라벨을 부착하여 수출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한글 외포장지의 주요 내용은 중국 규정을 따라야 함

### (1) 한글 포장지 심의 범위

| 구분                  | 주요 심의 내용                                    |                    |
|---------------------|---------------------------------------------|--------------------|
| 주 표시면 내용            | 성분원료, 식품첨가제, 유통기한기재위치 대조                    | 한글 내용과 중문라벨의 내용 일치 |
| 전면 표기내용             | 각종 인증서마크(유기농 등) 등 적합성 여부 심의                 | 인증서의 중국 규정 부합여부 심의 |
| 과대광고 문구<br>기능성광고 문구 | 최고급, 세계최고, 혈관에 좋은~, 변비에 좋은~ 등과 같은 문구 적합성 심의 | 기능성 관련 문구 삭제       |

### (2) 중문 포장지 검토 범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모두 중문으로 구성하여 제작할 경우,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라벨통칙 GB7718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지 전부 혹은 일부를 중문으로 변경해야 함

### ▶ Q&A\_3 포장지

1. 심의결과 한글 포장지가 중국 규정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미 한국에서 판매중인 상품이고, 중국용으로 별도로 제작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글 외포장지에 기재된 문구나 성분이 중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성분원재료 중 일부가 중국 기준으로는 첨가 불가능하여 중문라벨에 해당 성분 원료는 기재하지 않고 고의 누락하여 한글 위에 덧붙이는 방법은 중국 검역 당국을 기만하는 행위로 통관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설사 무사히 통관이 되더라도 중국의 식파라치에 소송을 당한다면 식품 안전법에 따라 구매 금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은 한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중국에서도 유기농 제품임을 강조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한국 내수용 제품에 유기농 표기가 된 제품도 중국에서 수입통관/유통이 가능한가요?

2014년 4월부터 실시된 유기농제품 인증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 내 유기농제품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에는 “유기농”, “organic”과 같은 표기나 도안의 삽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중국 유기농 인증 없이 수출하고자 한다면, 포장지에서 해당 문구를 가리거나 삭제해야 하며, 중문으로는 유기농 관련 문구를 중문라벨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사. 중문라벨링

### ■ 법률 근거: 식품안전법 제97조 중문라벨 규정

수입 예포장식품(중문 预包装食品으로 벌크 상태가 아닌 일정 규격으로 정량 포장인 된 중량이나 체적이 일정한 식품을 말함)과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하며,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중문라벨, 설명서가 없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음

### (1) 중문라벨 기재 내용

| 구분           | 필수/선택  | 적용 기준                                                                                           |
|--------------|--------|-------------------------------------------------------------------------------------------------|
| 제품 명칭        | 필수기재사항 | 식품안전 국가표준 통용표준<br>GB7718 예포장식품 라벨통칙<br>GB28050 예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통칙<br>GB2760 식품첨가제<br>GB14880 영양강화제 |
| 원산지          |        |                                                                                                 |
| 순중량/규격       |        |                                                                                                 |
| 성분표          |        |                                                                                                 |
| 생산일자/유통기한    |        |                                                                                                 |
| 보관방법         |        |                                                                                                 |
| 수입자 혹은 판매자정보 |        |                                                                                                 |

| 구분                               | 필수/선택               | 적용 기준                                                    |
|----------------------------------|---------------------|----------------------------------------------------------|
| 제품유형                             | 일부 유형<br>필수기재       | 식품안전 국가표준 제품표준<br>GB25191 조제유<br>GB17400 라면<br>GB7101 음료 |
| 영양성분표                            | 필수기재,<br>일부 유형 생략가능 |                                                          |
| 알레르기 경고문구                        | 선택                  |                                                          |
| 조리법                              | 선택                  |                                                          |
| 신식품원료 사용법, 첨가 제한량<br>기타 규정된 기재내용 | 필수                  |                                                          |

#### ▶ Q&A\_4 중문라벨

##### 1. 중문라벨의 내용과 한글 기재 내용이 다른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주 표시면에 기재되는 내용(성분명, 순증량, 규격 등 필수 기재내용)이 중문라벨의 것과 상이하다면 동일제품이 아니거나 중문라벨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글 성분기재 내용에 “캐러멜색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중국 기준상 해당 제품유형에는 첨가 불가능하여 중문라벨의 성분표에는 고의로 캐러멜색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전문 식파라치들이 이러한 수입식품을 찾아내 대량 구매한 후 10배 배상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2. 한글 기재 성분을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하면 안 되나요?

중문라벨의 내용은 반드시 중국 국가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기재 내용은 규범화된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므로 단순 번역하여 기재하면 중국 식품첨가제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식품첨가제 명칭과 상이할 수 있고, 이 경우 완전히 다른 첨가제로 인식되어 불합격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 3. 중문라벨은 어디에 부착해야 하나요?

통상 한글 주요내용 표시면 위에 부착하며, 바코드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유통기한이나 생산일자가 날인된 표시면을 피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5개들이 1봉지와 같이 세트로 제품을 구성할 경우 낱개 상품에 바코드가 있어 단품으로 상품가치가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낱개와 봉지에 모두 라벨을 부착하되, 순중량 부분은 규격표시를 달리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ex) 낱개 순중량의 표시: 300g / 세트 구성 봉지포장의 표시: 1.5kg(300g×5개)

4. 반드시 한국에서 라벨 부착 후 선적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한가요? 중국 현지에서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중문라벨은 선적 전 한국에서 부착 후 수출을 진행하거나, 중국 도착 후 현지 통관 중 부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부착한다면 반드시 사전 심의를 통해 규범화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임의로 부착 후 수출시 통관 불합격이나 재부착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 한국에서 중문라벨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선적했는데, 검역당국에서 라벨을 수정해서 재부착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통상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실제로 실험실 검역을 진행한 결과 특정 첨가제가 검출되었고 그 첨가제가 해당 제품군에 사용이 가능하나, 기존의 중문라벨에는 빠져있는 경우. 두 번째, 영양성분을 검사했으나 검출량이 기존의 라벨에 기재된 것과 오차가 허용범위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중문라벨을 재부착해야 합니다. 일부 검역국에서는 라벨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간혹 담당 관원의 판단에 따라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중문라벨을 바이어에게 공유하고, 사전에 검역 당국에 라벨의 내용을 승인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 수출(생산)업체 등록

- 법률 근거 : 질검총국 (2012년 55호 공고) 수입식품수출입상비안관리규정 (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중국으로 식품 수출을 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와 생산자, 중국에서 식품 수입을 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해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함

수입된 제품이 중국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고 해당 수출자(혹은 생산자)가 수출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혹은 관련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규정

수출(생산)업체 등록 후 바이어에 등록 번호/조회 번호를 제공하거나, 수입상이 대행하여 등록하여도 무방함

수입업체 등록은 바이어(수입자)가 별도로 시스템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영업허가 범위에 '식품수입', 유통범위에 '식품'이 있는 기업에 한해 수입업체 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시스템 신청 후 원본 등을 관할지 해관에 제출해야 함

|                |                                                     |
|----------------|-----------------------------------------------------|
| 사이트 주소         | <a href="http://ire.eciq.cn">http://ire.eciq.cn</a> |
| 수출(생산)업체 기재 내용 | 기업영문명, 영문주소, 연락처, 담당자명, E-MAIL주소                    |

## ■ 수입식품/화장품 수출입상비안(등록)시스템 ■





## 2

## 통관 관련 서류준비

### 기본 선적서류 목록

| 순 | 선적서류 준비 항목                                                   | 발급처                               | 비고           |
|---|--------------------------------------------------------------|-----------------------------------|--------------|
| 1 | HS CODE 확정                                                   | -                                 | 자문기관 의뢰 가능   |
| 2 | 패킹리스트<br>인보이스<br>계약서<br>B/L발급                                | 수출업체 직접 작성<br><br>화물운송 항공/해운사     | 중국 해관<br>제출용 |
| 3 | 원산지증명서 발급                                                    | 대한상공회의소-일반/특혜<br>관세청-특혜           |              |
| 4 | 영문 위생증명서 발급                                                  | 일반 농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br>수산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5 | 동/식물검역증 발급<br>(일부품목)                                         | 농림축산검역본부                          |              |
| 6 | 성분배합 비율표<br>제조공정도<br>영양성분시험성적서<br>외포장지라벨번역본<br>중문라벨(CCIC인증서) | 중국 식품수출<br>사전 준비 단계               |              |

### 가. HS CODE 확정

#### (1) HS CODE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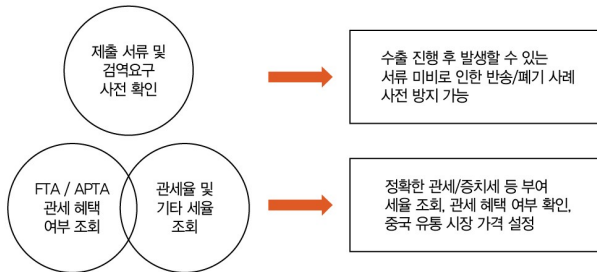
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로, 국가별 HS CODE 분류에 따라 수입국의 적용 관세율 및 적용 검역규정 등 조회 가능

## (2) HS CODE 사전 조회의 필요성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중국 수입관세율과 기타 적용 세율을 파악하여 중국시장 판매가격을 설정할 수 있음

자유무역협정(F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및 당해연도 잠정세율 적용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관세 혜택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HS CODE에 따라 통관시 요구되는 특정 검역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검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가능함



### Ⅱ [참고] 중국 수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Ⅱ

| 구분  | 해설                                  |
|-----|-------------------------------------|
| 관세  | HS CODE 분류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      |
| 소비세 | 담배, 화장품, 주류 등에 부과되는 세금              |
| 증치세 |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념의 세금, 통상 10% 혹은 16%로 분류 |

## (3) HS CODE 조회

중국 수출 예정 품목의 HS CODE는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이 정확한 편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중국 관세율표 참고 조회가 가능함

-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관세율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특혜 원산지 요구 조건에 부합한다면 세율이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함. 제품이 협정/특혜 세율 원산지 요구 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참조 및 문의. 가령, 동일한 김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의 형태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특정 원료가 포함된 제품의 HS CODE별 관세율 적용 예시 ▮

| 구분                                 | 조미김                                                                               | 김스낵, 김부각                                                                          | 김가루가 포함된 비스킷                                                                       |
|------------------------------------|-----------------------------------------------------------------------------------|-----------------------------------------------------------------------------------|------------------------------------------------------------------------------------|
| 제품사진                               |  |  |  |
| HS CODE                            | 2008993100                                                                        | 2106909090                                                                        | 1905900000                                                                         |
| 제품분류 품명                            | 조미김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 기타 비스킷                                                                             |
| 기본 관세율                             | 15%                                                                               | 20%                                                                               | 20%                                                                                |
| 2018년 7월 1일<br>최혜국대우<br>일반관세율(MFN) | -                                                                                 | 12%                                                                               | 10%                                                                                |
| FTA 적용시<br>관세율<br>(2018년도 기준)      | 12%                                                                               | 18.7%                                                                             | 16%                                                                                |
| ATPA 적용시<br>관세율                    | 해당사항 없음                                                                           | 18.4%                                                                             | 17.2%                                                                              |
| 증치세율                               | 16%                                                                               | 16%                                                                               | 16%                                                                                |

※ 2018년 7월 1일부터 조정된 MFN 세율

2018년 5월 31일 중국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에서 최혜국대우일반관세율 조정안(1449 품목)을 발표했으며,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어 일부 품목은 기존 FTA, APTA 협정 세율 및 2018년도 잠정세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됨

상기 관세율 적용 예시를 보면 조미김을 제외한 김스낵, 김비스킷의 경우 FTA와 APTA 협정세율에 비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MFN(최혜국 대우 일반세율)이 각각 12%와 10%로 가장 낮아 특혜 원산지 증명서 구비 불필요, 일반 원산지 증명서로 진행

### ※ 특혜 원산지 요구 조건

특혜 원산지 요구 조건이란 HS CODE별로 FTA(자유무역협정)와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지칭함. 원산지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즉, 제품의 HS CODE가 FTA나 APTA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원산지 요구 조건(예, 최종 생산지, 주원료의 생산지 등 판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나. 수출 서류작성 및 신고

패킹리스트(P/L)와 인보이스(C/I) 작성 후 세관에 수출신고 및 수출면장 발급이 완료되어야 원산지증명서/영문 위생증명서 신청이 가능함

### (1) 패킹리스트(Packing List(P/L), 포장명세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포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로 품목명, 수량,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 수출제품의 정보가 모두 기재된 서류로,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함께 수출/수입 신고시 해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C/I), 상업송장)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지급조건 등이 상세하게 명시된 거래상품 명세서로, 해당 명세서를 기준으로 중국 수입 통관시 신고가격 확정 및 관세 부과

### (3) 계약서(Sales Contract(S/C), 판매 계약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품명, 수량, 단가 등 P/L과 C/I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명판날인 혹은 사인 필수)로 실제 수입계약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

### (4) 비엘(Bill of Lading(B/L), 선하증권(船荷證券))

송화인(送貨人)에 대하여 특정 선박에 특정 화물이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하여 선주 또는 선장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 수입자는 비엘 수취 후 화물 인도 가능

## 다.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일반/FTA/APTA 중 관세 부과 금액이 가장 적은 것 1가지를 선택하여 발급하되,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에 부합해야 함

### (1) 일반 원산지증명서

수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재배, 사육, 제조, 가공 등)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식품은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중국 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FTA/APTA 특혜 원산지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발급처: 대한상공회의소

### (2)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한-중 자유무역 협정이 2015년 12월 20일부로 발효되면서, FTA 협정품목에 해당하고 원산지 결정 조건에도 부합할 경우 FTA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하여, 협정 관세율 적용이 가능함

※ 주의사항: 선적 전/후 7일 근무일 내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발급받지 못했다면,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을 신청하여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관세 차액 환급 가능함. 단, 중국 해관에 신고시 반드시 사후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발급처: 대한상공회의소 / 관세청

### (3)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이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협정 대상 품목에 한해 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함

#### ※ 주의사항

선적일로부터 3 근무일(선적일 포함 근무일 기준) 이내 원산지증명서가 신청, 발급되어야 하며, 3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선적 후 3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APTA 원산지증명서 신청 불가,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발급처: 대한상공회의소

일반 원산지증명서 예시

|                                                                                                                                                                                            |  |                                                                                                                                                                                                                                                                                                                                                                                                                                                        |  |          |
|--------------------------------------------------------------------------------------------------------------------------------------------------------------------------------------------|--|--------------------------------------------------------------------------------------------------------------------------------------------------------------------------------------------------------------------------------------------------------------------------------------------------------------------------------------------------------------------------------------------------------------------------------------------------------|--|----------|
|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  | Reference No.<br>Reference Code..                                                                                                                                                                                                                                                                                                                                                                                                                      |  | ORIGINAL |
| 2. Consignee (Name, address, country)                                                                                                                                                      |  | <b>CERTIFICATE OF ORIGIN</b><br>issued by<br><b>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b><br>Seoul, Republic of Korea                                                                                                                                                                                                                                                                                                                           |  |          |
| 4. Transport details<br>FROM : KOREA<br>TO : CHINA<br>BY : SEA NEW GOLDEN BRIDGE V 2101W<br>ON : 19 JUN. 2018                                                                              |  | 3. Country of Origin<br>THE REPUBLIC OF KOREA                                                                                                                                                                                                                                                                                                                                                                                                          |  |          |
| 6. Marks &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br><br>20CT 800EA 280KG 290KG<br>////////////////////////////////////                                                |  | 5. Remarks                                                                                                                                                                                                                                                                                                                                                                                                                                             |  |          |
|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br>The undersigned, as an authorized signatory,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were produced or manufactured in the country shown in box 3. |  | 7. Quantity                                                                                                                                                                                                                                                                                                                                                                                                                                            |  |          |
| (Signature)<br><br>(Name) <b>PRESIDENT CHOI HYUK JOON</b>                                               |  | 9. Certification<br>The undersigned authority hereby certifies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3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and belief.<br><br><br>Deputy Director<br><b>CHON-SOON PARK</b><br><b>15 JUN 2018</b><br>Authorized Signatory |  |          |
| Identify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e for verification with the website.( <a href="http://cert.korchem.net/search">http://cert.korchem.net/search</a> )                                 |  |                                                                                                                                                                                                                                                                                                                                                                                                                                                        |  |          |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FTA 원산지증명서 예시

ORIGINAL



|                                                                                                                                                                                                                                                                                                                                                                                                                                                               |                                            |                                                                                                                                             |                                                                                                                                                                                                                                                                                                                                                                                                                                                    |                      |                                                                             |                                |  |
|---------------------------------------------------------------------------------------------------------------------------------------------------------------------------------------------------------------------------------------------------------------------------------------------------------------------------------------------------------------------------------------------------------------------------------------------------------------|--------------------------------------------|---------------------------------------------------------------------------------------------------------------------------------------------|----------------------------------------------------------------------------------------------------------------------------------------------------------------------------------------------------------------------------------------------------------------------------------------------------------------------------------------------------------------------------------------------------------------------------------------------------|----------------------|-----------------------------------------------------------------------------|--------------------------------|--|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                                            | Certificate No.:<br>Certificate Code.:                                                                                                      |                                                                                                                                                                                                                                                                                                                                                                                                                                                    |                      |                                                                             |                                |  |
|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br>SAME                                                                                                                                                                                                                                                                                                                                                                                                              |                                            | <b>CERTIFICATE OF ORIGIN</b><br><b>Form for Korea-China FTA</b><br><br>Issued in <u>THE REPUBLIC OF KOREA</u><br>(see Overleaf Instruction) |                                                                                                                                                                                                                                                                                                                                                                                                                                                    |                      |                                                                             |                                |  |
|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                                            |                                                                                                                                             |                                                                                                                                                                                                                                                                                                                                                                                                                                                    |                      |                                                                             |                                |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br>Departure Date: 08 MAY, 2018<br>Vessel/Flight/Train/Vehicle No: NEW GOLDEN BRIDGE V 2083W<br>Port of loading: INCHON, KOREA<br>Port of discharge: QINGDAO, CHINA                                                                                                                                                                                                                                        |                                            | 5. Remarks:                                                                                                                                 |                                                                                                                                                                                                                                                                                                                                                                                                                                                    |                      |                                                                             |                                |  |
| 6. Item number (Max 20)                                                                                                                                                                                                                                                                                                                                                                                                                                       |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 9. HS code (Six-digit code)                                                                                                                                                                                                                                                                                                                                                                                                                        | 10. Origin criterion |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etc.) |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  |
| 1                                                                                                                                                                                                                                                                                                                                                                                                                                                             | FOODCARE PLT NO. 1, NO 2, NO 3<br>//////// |                                                                                                                                             | 210690                                                                                                                                                                                                                                                                                                                                                                                                                                             | PSR                  | 530 KG<br>1,500 PC                                                          |                                |  |
| 2                                                                                                                                                                                                                                                                                                                                                                                                                                                             |                                            |                                                                                                                                             | 210690                                                                                                                                                                                                                                                                                                                                                                                                                                             | PSR                  | 530 KG<br>1,500 PC                                                          |                                |  |
| 3                                                                                                                                                                                                                                                                                                                                                                                                                                                             |                                            |                                                                                                                                             | 210690                                                                                                                                                                                                                                                                                                                                                                                                                                             | PSR                  | 530 KG<br>1,500 PC                                                          |                                |  |
| ////                                                                                                                                                                                                                                                                                                                                                                                                                                                          |                                            | End Of Page --                                                                                                                              | ////////                                                                                                                                                                                                                                                                                                                                                                                                                                           | ////////             | ////////                                                                    | ////////                       |  |
|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br>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br>.....THE REPUBLIC OF KOREA.....<br>(Country)<br>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br>.....PEOPLE'S REPUBLIC OF CHINA.....<br>(Importing Country)<br>BUCHON KOREA 14 MAY 2018<br>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                                                                                                                                             | 14. Certification:<br>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 - China FTA.<br><br>BUCHON<br>14 MAY 2018<br><br>Department Manager<br>SANG-CHUL LEE<br>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                      |                                                                             |                                |  |



\* Identify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e for verification with the website.(http://cert.korcham.net/search)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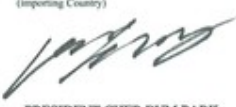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 ATPA 원산지증명서 예시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                                                                                                                                                                                                                                                                                                                                                                                                                                                                                                                                                                                                                                                                                                |                                                        |                                                                                                                                                                                                                                                                                                                                                                                                                                                                                                                                                                                                                                                                       |                                                                                          |                                                                                 |                                                                              |
|------------------------------------------------------------------------------------------------------------------------------------------------------------------------------------------------------------------------------------------------------------------------------------------------------------------------------------------------------------------------------------------------------------------------------------------------------------------------------------------------------------------------------------------------------------------------------------------------------------------------------------------------------------------------------------------------|--------------------------------------------------------|-----------------------------------------------------------------------------------------------------------------------------------------------------------------------------------------------------------------------------------------------------------------------------------------------------------------------------------------------------------------------------------------------------------------------------------------------------------------------------------------------------------------------------------------------------------------------------------------------------------------------------------------------------------------------|------------------------------------------------------------------------------------------|---------------------------------------------------------------------------------|------------------------------------------------------------------------------|
|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 Reference No.:<br>Reference Code.:<br><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CERTIFICATE OF ORIGIN</b><br/>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br/>         (country)       </div>                                                                                                                                                                                                                                                                                                                                                                                                                                         |                                                                                          |                                                                                 |                                                                              |
|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 3. For official use                                                                                                                                                                                                                                                                                                                                                                                                                                                                                                                                                                                                                                                   |                                                                                          |                                                                                 |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                                                        |                                                                                                                                                                                                                                                                                                                                                                                                                                                                                                                                                                                                                                                                       |                                                                                          |                                                                                 |                                                                              |
| 5. Tariff item number:<br><br>2106<br><br>2106<br><br>// // // // //                                                                                                                                                                                                                                                                                                                                                                                                                                                                                                                                                                                                                           |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s:<br><br>// // // // // |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br><br>// // // // //                                                                                                                                                                                                                                                                                                                                                                                                                                                                                                                                                                                           |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head)<br>B 0.32%<br><br>B 0.53%<br><br>// // // // //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br>7(CT)<br><br>123(CT)<br><br>// // // // // |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br>EON<br>APR/ 17/2018<br><br>// // // // // |
| End Of Page ...                                                                                                                                                                                                                                                                                                                                                                                                                                                                                                                                                                                                                                                                                |                                                        |                                                                                                                                                                                                                                                                                                                                                                                                                                                                                                                                                                                                                                                                       |                                                                                          |                                                                                 |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br>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br>produced in <b>THE REPUBLIC OF KOREA</b><br>(Country)<br>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for goods exported to<br><b>PEOPLE'S REPUBLIC OF CHINA</b><br>(Importing Country)<br><br><div style="text-align: right;"> <br/> <b>PRESIDENT CHER BUM PARK</b><br/>         Seoul, Korea 18 APR 2018<br/>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div> |                                                        | 12. Certificate<br>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br><br><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br/> <b>SEOUL</b><br/> <b>18 APR 2018</b><br/>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br/> <b>Deputy Director</b><br/> <b>EUN-SUK HAN</b> </div> </div> |                                                                                          |                                                                                 |                                                                              |

\* Identify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e for verification with the website.(http://cert.korcham.net/search)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Ⅱ [참고] 원산지증명서 구비에 따른 ‘곡물로 만든 과자’ 관세율 비교 Ⅱ

| HS CODE       |         | 19041000 |
|---------------|---------|----------|
| 관세율(2018년 기준) |         | 증차세율     |
| 일반 원산지증명서     | 10%     | 16%      |
| FTA 원산지증명서    | 20%     | 16%      |
| APTA 원산지증명서   | 해당사항 없음 | 16%      |

해당 품목은 한중 FTA 협정 대상 품목으로 20년간 매년 1.25%씩 관세율이 낮아지는 품목이나, 2018년 발표한 최혜국대우 일반관세율(MFN)이 10%로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FTA 시행 13년차인 2027년 관세율이 8.75%로 일반관세율보다 낮아지기 시작하여 2034년 FTA 관세율은 0%가 적용됨

Ⅱ FTA/APTA 관세율 보기표 예시 Ⅱ

|                      |               |                                        |
|----------------------|---------------|----------------------------------------|
| 한중 FTA 협정<br>관세율 보기표 | 품목명           |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br>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br>조제 식료품 |
|                      | HS CODE       | 19041000                               |
|                      | 양허조건          | 20                                     |
|                      | 기준관세율(%)      | 25                                     |
|                      | 균등철폐세율(%)     | 1.25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23.75                                  |
| 2년차                  | 2016년         | 22.50                                  |
| 3년차                  | 2017년         | 21.25                                  |
| 4년차                  | 2018년         | 20.00                                  |
| 5년차                  | 2019년         | 18.75                                  |
| 6년차                  | 2020년         | 17.50                                  |
| 7년차                  | 2021년         | 16.25                                  |

| 한중 FTA 협정<br>관세를 보기표 | 품목명       |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br>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br>조제 식료품 |
|----------------------|-----------|----------------------------------------|
|                      | HS CODE   | 19041000                               |
|                      | 양허조건      | 20                                     |
|                      | 기준관세율(%)  | 25                                     |
|                      | 균등철폐세율(%) | 1.25                                   |
| 8년차                  | 2022년     | 15.00                                  |
| 9년차                  | 2023년     | 13.75                                  |
| 10년차                 | 2024년     | 12.50                                  |
| 11년차                 | 2025년     | 11.25                                  |
| 12년차                 | 2026년     | 10.00                                  |
| 13년차                 | 2027년     | 8.75                                   |
| 14년차                 | 2028년     | 7.50                                   |
| 15년차                 | 2029년     | 6.25                                   |
| 16년차                 | 2030년     | 5.00                                   |
| 17년차                 | 2031년     | 3.75                                   |
| 18년차                 | 2032년     | 2.50                                   |
| 19년차                 | 2033년     | 1.25                                   |
| 20년차                 | 2034년     | 0.00                                   |
| APTA 무역협정            | 해당사항 없음   |                                        |

## 라. 영문 위생증명서(H/C) 발급

### (1) 법률 근거: 수출입식품안전관리법 제12조 제3항

법률과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국가의 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위생) 증명서를  
해관에 제출해야 함

\* 발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문 위생증명서 예시

ISSUE NO:



식품의약품안전처

#176-39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Korea, Tel: +82-62-602-1300,  
Fax: +82-62-602-1400

Certificate No. :

## HEALTH CERTIFICATE

MM/DD/YY : 10/17/18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products have been produced and distributed in a sanitary manner and are suitable for human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Food Sanit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 Country of destination : China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 Remarks :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ignature : Jae Seon Kim

Director of General Services Division  
Gwangju Regional Food & Drug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 주의사항

- 1) 수산물, 수산제품은 반드시 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가 아닌 수산물위생증을 발급해야 함(어묵, 수산캔, 김 등)

\* 발급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2) 가열, 살균 등 심가공되지 않은 동식물원성(源性)을 띠는 품목은 “동식물검역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동물검역증 필요 품목: 우유 등 유제품 등

- 식물검역증 필요 품목: 김치, 살균되지 않은 과일주스, 쌀 등

\* 발급처: 농림축산검역본부

## ▶ Q&amp;A\_5 서류 작성

## 1. 실제 화물과 선적 서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중국 해관에서 매일 발표하는 수입식품 불합격 사례를 보면 실제 화물과 서류 불일치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을 위생증에 2017년 1월 10일로 기재하여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실제 도착한 화물은 해당 날짜의 제품이 아닌 2월 10일 이거나 수량이 100박스로 기재되었지만 실제로 90박스만 도착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수출자는 반드시 유통기한과 제품명 등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실제 화물의 정보를 수출 선적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수출 서류 여러 건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선적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목, 수량 등 기본정보와, 수출자와 수입자의 영문명칭과 주소 등 공통 적용되는 정보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 3

## 농식품 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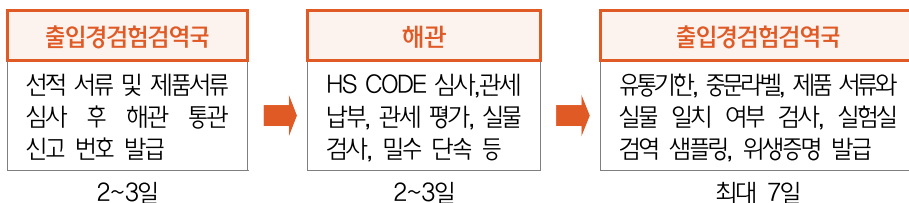
### 가. 2018년 통관제도 변화

#### ■ 출입경검험검역국 해관총서로 통합

2018년 중국 행정기관 통폐합으로 기존 수입 제품의 수출입 검역을 담당하던 출입경검험검역국(중문명: 出入境检验检疫局, 영문명: China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영문 약칭: CIQ, 이하 CIQ)이 2018년 5월 1일부로 중국 해관총서(중문명: 海关总署)로 통합

기존 수/출입 신고 시스템은 CIQ와 해관 2개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어 HS CODE 별 검역 필요 품목은 CIQ에서는 신고 후 해관 통관 신고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해관 신고가 가능했으나 2018년 8월 1일부로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업무 효율 증대, 통관시간 단축 실현

#### ■ 식품 수입시 기존 행정 부처별 통관절차 요약 ■



기존 통관 소요시간 7일 이상 소요



#### ■ 부처 통합 후 ■

| 해관                                                                                                                                                                                                                    |
|-----------------------------------------------------------------------------------------------------------------------------------------------------------------------------------------------------------------------|
| 수출입 통관 신고 2회->1회 축소로 행정 효율 증대<br>화물 도착 전 사전 신고 및 관세 사전 납부 가능<br>화물 최종 도착정보 해관 전송 후 해관 검역 없을 경우 즉시 통관<br>통관 소요 시간 1~3일<br>※ 단, 중문라벨 등 제품의 모든 서류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 지역별 통관 세부절차 및 시간은 품목별 수입 준비<br>상황 및 검역 진행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 행정 부처 및 통관 시스템 통합 시사점

통관 이후 발급되는 위생증명(검역합격증)이 있어도 통관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입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수입 신고 가능, 유통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점검이나 민간 투서가 접수될 경우 행정 처벌 강화 예정

부처 통합 및 시스템 통합 이후 화물 도착 후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되어 통관 속도 향상 효과가 기대되나 사전 준비가 미흡할 경우 서류 심사 단계에서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 식품의 사전 수입 가능 여부 확인, 규정에 맞는 중문라벨 준비 등 사전 준비에 더욱 철저해야 함

### Ⅱ 진행 절차 Ⅱ

| 진행순서   | 비고                                   |
|--------|--------------------------------------|
| 해관 신고  | 해관 수출입 신고 시스템 신고 및 수리                |
| 서류 심사  | 기본 선적서류, 제품 관련 서류 심사                 |
| 관세 부과  | 관세 납입 및 보관단(수입면장) 발급                 |
| 실물 검사  | 해관 검역소에서 실물 검사 진행(검사율 10% 내외)        |
| 상세 검역  | 제품에 대한 실험실 검역 등 상세 검역 진행(검사율 10% 내외) |
| 증명서 발급 | 위생검역합격증 발급, 출고                       |

## 나. 서류 준비 및 해관 신고

화물 도착 후 해관에 신고 진행, 선적서류, 제품관련 기본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통상 전문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함

### Ⅱ 해관 신고시 심의 서류 Ⅱ

| 구분   | 내역                                 | 비고                                                       |
|------|------------------------------------|----------------------------------------------------------|
| 기본서류 | 패킹리스트<br>인보이스<br>계약서<br>B/L        | 선적 전 구비 완료,<br>사본/원본 송부                                  |
|      |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br>(일부 품목 동/식물검역증서) | 발급 후 수입자에<br>사본/원본 송부<br>(선적 전, 혹은 선적 후<br>1~2일 내 바로 송부) |

| 구분          | 내 역                 | 비고     |
|-------------|---------------------|--------|
| 제품 관련 서류    | 외포장지 전개도 번역본        | 제1장 참조 |
|             | 성분배합 비율표            |        |
|             | 제조공정도               |        |
|             | 영양성분시험성적서 혹은 영양성분표  |        |
|             | 중문라벨 샘플(CCIC라벨인증서)  |        |
|             | 로고에 대한 인증서 사본/번역본   |        |
|             | 상표사용시 상표출원증사본(중국출원) |        |
|             | 기타 제품 유형 별 요청되는 서류  |        |
| 수출자(생산자) 등록 | 등록 시스템에서 비안 등록      | 제1장 참조 |

## 다. 관세 납부

### ■ 품목별 정확한 HS CODE 선택

해관 시스템에 신고한 HS CODE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HS CODE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함

HS CODE에 따라 FTA, APTA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Ⅱ 진행 절차 Ⅱ

| 진행 순서       | 비고                    |
|-------------|-----------------------|
| 관세/증치세 부과   | 신고 가격에 따른 관세/증치세 납부   |
| 품목/가격 사후 심사 | HS CODE, 신고 가격 적합성 심사 |

### ■ 품목/가격 사후심사 유의

해관 신고 가격과 HS CODE 적합성 여부 등은 통관시에는 심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통관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나 통관 이후 “사후 심사 제도”에 따라 통관 후 3년 내 해관에서 조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고의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언더벨류 신고 행위 등은 경계해야 함



중국해관 수입화물 보관단(报关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货物报关单

海关作业联

|                                                                                                    |                     |                          |                                     |                  |         |         |       |      |
|----------------------------------------------------------------------------------------------------|---------------------|--------------------------|-------------------------------------|------------------|---------|---------|-------|------|
| 预录入编号:                                                                                             |                     | 海关编号:                    |                                     |                  |         |         |       |      |
| 收发货人                                                                                               |                     | 进口口岸 (4227)<br>青岛大港      | 进口日期<br>20180509                    | 申报日期<br>20180517 |         |         |       |      |
| 消费使用单位                                                                                             |                     | 运输方式(2)<br>水路运输          | 运输工具名称<br>NEW GOLDEN BRIDGE V/2085W | 提运单号             |         |         |       |      |
| 申报单位                                                                                               |                     | 监管方式<br>一般贸易             | 征免性质 (101)<br>一般征税                  | 备案号              |         |         |       |      |
| 贸易国(地区) (133)<br>韩国                                                                                | 启运国(地区) (133)<br>韩国 | 离境港 (1482)<br>仁川         | 境内目的地 (50039)<br>渝中区                |                  |         |         |       |      |
| 许可证号                                                                                               | 成交方式 (1)<br>CIF     | 运费                       | 保费                                  | 杂费               |         |         |       |      |
| 合同协议号                                                                                              | 件数<br>3             | 包装种类 (3)<br>托盘           | 毛重(千克)<br>1590                      | 净重(千克)<br>652.5  |         |         |       |      |
| 集装箱号                                                                                               | 随附单证 入境货物通关单, 原产地证明 |                          |                                     |                  |         |         |       |      |
| 标记唛码及备注<br>备注: : Y(19)X011180361015: 1-1, 2-2, 3-3<br>随附单证号: 370100118107449000, <19>E011180361015 |                     |                          |                                     |                  |         |         |       |      |
| 项号                                                                                                 | 商品编号                | 商品名称、规格型号                | 数量及单位                               | 原产国(地区)          | 单价      | 总价      | 币制    | 征免   |
| 1                                                                                                  | 21069090.90         |                          | 217.5千克                             | 韩国 (133)         |         |         | (502) | 照章征税 |
|                                                                                                    |                     |                          | 1500件                               | 目的国: 中国          | 1.3000  | 1950.00 | 美元    | (1)  |
| 2                                                                                                  | 21069090.90         |                          | 217.5千克                             | 韩国 (133)         |         |         | (502) | 照章征税 |
|                                                                                                    |                     |                          | 1500件                               | 目的国: 中国          | 1.3000  | 1950.00 | 美元    | (1)  |
| 3                                                                                                  | 21069090.90         |                          | 217.5千克                             | 韩国 (133)         |         |         | (502) | 照章征税 |
|                                                                                                    |                     |                          | 1500件                               | 目的国: 中国          | 1.3000  | 1950.00 | 美元    | (1)  |
| 特殊关系确认: 否      价格影响确认: 否      与货物有关的特许权使用费支付确认: 否                                                  |                     |                          |                                     |                  |         |         |       |      |
| 录入员                                                                                                | 录入单位                | 兹申明对以上内容承担如实申报、依法纳税之法律责任 |                                     |                  | 海关批注及签章 |         |       |      |
| 报关人员                                                                                               |                     | 申报单位(签章)                 |                                     |                  |         |         |       |      |

- ※ 출처: 중국해관
- ※ 수입화물 보관단은 한국의 수입면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관세 납입 후 발급

## 라. 실물 검사 및 세부 검역

### ■ 해관 실물 검사

관세 납부 후 해관 시스템에 “실물 검역”이 조회 될 경우 해관 관내 검사소로 화물 이동 후 검사 항목별로 진행되며 검사 항목은 검사소 도착 후 공지, 검사시 경미한 문제의 경우 소명 후 재신고 절차를 통해 통관 진행 가능하나 관세 탈루 등 중대한 문제일 경우 해관 직속 조사 부서로 이관되어 강도 높은 조사 진행

#### Ⅰ 진행 절차 Ⅰ

| 검사 항목      | 검사 내용                                                         |
|------------|---------------------------------------------------------------|
| 중량, 품명, 수량 | 선적 서류 및 신고 내용과 실제 화물상태 일치 여부                                  |
| 규격, 함량     | ex) 중문라벨의 규격란에 1kg*10개, 실제로 500g*20개로 포장된 경우 불합격, 서류 수정 후 재신고 |
| 세 번 심의     | 신고 세 번 적합성 여부                                                 |

### ■ 제품 세부 검역 및 실험실 검역

해관 통관 완료 후 검역 창고에 화물이 입고되면 담당 검역관 방문 후 샘플링, 라벨 검역 및 실험실 검역 진행. 최초 실험실 검역은 국가표준에서 정한 항목 및 부정기 리스크 검사 항목에 따라 진행되며, 실험실 검역률은 통상 5~10% 수준임

실험실 검역이 없을 경우 라벨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위생증 발급, 출고 및 판매 가능함

#### Ⅰ 검역 항목 Ⅰ

| 구분     | 내용                                      | 비고                             |
|--------|-----------------------------------------|--------------------------------|
| 라벨 검역  | 라벨 기재내용 확인                              | 인쇄상태, 글자크기, 부착 위치 등            |
| 실험실 검역 | 대장균군<br>균락총수<br>중금속<br>농약 잔류량, 식품 첨가제 등 |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따라 진행<br>(1장 참조) |

## 마.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위생증) 발급

실험실 검역은 무작위로 진행되며 실험실 검역이나 라벨 검역 후 전 항목 합격일 경우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이하 위생증) 발급이 진행되며, 위생증이 있을 경우 검역창고에서 출고 가능함. 위생증은 판매처에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류임

### 입경화물검험검역 증명서(위생증) 예시

| 收货人                                                                                                                                                                                                                                                                                                                                                                                                                                                                                                                                                                                                                                         |    | 发货人         |       | 品名          | 报检数/重量             | **40.32千克/**48千克/**34.56千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青岛全门商贸有限公司                                                                                                                                                                                                                                                                                                                                                                                                                                                                                                                                                                                                                                  |    |             |       | 包装种类及数量     | **90纸箱/**0其他/**0其他 | 输出国家或地区                    | 韩国 |    |    |    |    |      |     |  |  |           |       |            |    |  |  |           |       |            |    |  |  |           |       |             |    |
| 合同号                                                                                                                                                                                                                                                                                                                                                                                                                                                                                                                                                                                                                                         |    | 提/运单号       |       | 入境口岸<br>青岛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入境日期                                                                                                                                                                                                                                                                                                                                                                                                                                                                                                                                                                                                                                        |    | 2018年11月09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证明</p> <table border="1"> <thead> <tr> <th>品名</th> <th>品牌</th> <th>规格</th> <th>数量</th> <th>生产日期</th> <th>原产国</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84g*16盒/箱</td> <td>**30箱</td> <td>2018年11月1日</td> <td>韩国</td> </tr> <tr> <td></td> <td></td> <td>80g*20盒/箱</td> <td>**30箱</td> <td>2018年10月6日</td> <td>韩国</td> </tr> <tr> <td></td> <td></td> <td>96g*12盒/箱</td> <td>**30箱</td> <td>2018年10月29日</td> <td>韩国</td> </tr> </tbody> </table> <p>上述货物经检验检疫合格评定，予以通关放行。</p> <p>*****</p> <p>签字:  日期: 2018年11月12日</p> <p>备注: *****</p> |    |             |       |             |                    |                            |    | 品名 | 品牌 | 规格 | 数量 | 生产日期 | 原产国 |  |  | 84g*16盒/箱 | **30箱 | 2018年11月1日 | 韩国 |  |  | 80g*20盒/箱 | **30箱 | 2018年10月6日 | 韩国 |  |  | 96g*12盒/箱 | **30箱 | 2018年10月29日 | 韩国 |
| 品名                                                                                                                                                                                                                                                                                                                                                                                                                                                                                                                                                                                                                                          | 品牌 | 规格          | 数量    | 生产日期        | 原产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g*16盒/箱   | **30箱 | 2018年11月1日  | 韩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g*20盒/箱   | **30箱 | 2018年10月6日  | 韩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g*12盒/箱   | **30箱 | 2018年10月29日 | 韩国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2018.4.20)\*2]

① 货主收执



BA0537417

※ 출처: 청다오 해관

## ▶ Q&A\_6 해관

### 1. 제품 통관 소요기간이 매번 늦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해관 시스템 통합 이후 통관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최대 1~2일 안에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증문라벨, 제품 품목분류 오류 등 사전 준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 이후 수정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수정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관세 납부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품에 대한 신고서류 준비 등 사전 준비만 철저히 해도 통관 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시킬 수 있으니 통관시 신고 후 해관에서 이런 저런 수정 요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화물 발송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4

## 품목별 사전 검토사항

제4장의 품목별 코드분류와 세율기준은 개별 상품의 원료배합이나 제조공정에 따라 기재된 것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며, 검역 요구와 이에 따른 국가표준은 내용이 갱신될 수 있고 원료와 분류에 따라 기재된 것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원본과 대조하여 참고하고 수출 전 가이드북으로 활용하기 바람. 제품관련 수출통관/검역/성분검토 등 상세 자문은 aT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음(global.at.or.kr)

### ■ 품목분류

세부 품목분류는 우리 농수산물 중 수산물, 중약재,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을 제외한 중국수출이 가능한 품목중 일부를 선별하여 작성하였음

| 대분류       | 상세 분류                                        |
|-----------|----------------------------------------------|
| 과자류       | 껌, 캔디, 기타설탕과자<br>곡류 조제품<br>빵, 비스킷, 기타 베이커리제품 |
| 면류        | 라면, 인스턴트면, 기타 면류                             |
| 음료        | 물<br>음료 베이스 및 기타 무알코올 음료                     |
| 주류        | 발효주/증류주                                      |
| 식물성유지     | 대두유/올리브유/참기름                                 |
| 기타 조제 농산품 | 아이스크림, 기타빙과류<br>두부<br>유아용 조제식료품              |
| 채소류       | 김치<br>채소주스                                   |
| 버섯류       | 팽이버섯/새송이버섯/아가리쿠스속                            |
| 코코아류      | 초콜릿과 기타 코코아 조제품                              |

| 대분류      | 상세 분류                                                |
|----------|------------------------------------------------------|
| 커피류      | 로스팅 커피원두/분말<br>인스턴트커피                                |
| 차류       | 녹차/홍차                                                |
| 인삼류      | 홍삼정/홍삼(인삼)음료/홍삼조제품<br>(5년근 이하 인공재배된 근/경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
| 과실류      | 견과류<br>신선포도<br>과일주스/유자차                              |
| 곡류       | 쌀                                                    |
| 소스류      | 간장/기타 소스류/조미료                                        |
| 낙농품      | 생유<br>발효유<br>치즈                                      |
| 레토르트 삼계탕 |                                                      |

#### ■ 품목별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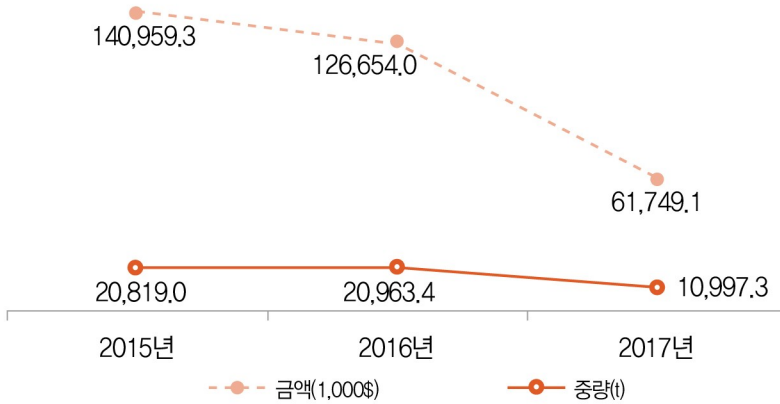
품목별 수출 실적은 2015~2017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레토르트 삼계탕을 제외하고 17가지 대분류의 AG 코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상세 분류별 수출 실적은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에서 조회가 가능함

#### ■ 불합격 사례

중국수입식품 불합격 사례는 개별 불합격 사례 분석을 주로 다루기 위해 2018년 1월~10월 질검총국 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주로 불합격된 사례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참고하여 동일한 사유로 불합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참고하기 바람

## 가. 과자류

## 과자류161 수출실적



※ 자료: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1) 껌, 캔디, 기타설탕과자(17.04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설탕과자)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1704.1000 추잉껌
- 1704.9000 캐러멜, 캔디, 기타 설탕과자류

관세율 보기표 1

|              |                        |           |
|--------------|------------------------|-----------|
| 1. 추잉껌       | HS CODE                | 1704.1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2/12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E(현행유지)   |
|              | 균등철폐세율(%)              | 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2        |
| 2년차          | 2016년                  | 12        |
| 3년차          | 2017년                  | 12        |
| 4년차          | 2018년                  | 12        |
| 5년차          | 2019년                  | 12        |
| 아태무역협정(APTA) |                        | 9.5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2. 기타 코코아를 포함하지 않은 설탕과자(캔디 등) | HS CODE                | 1704.9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0/1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0.5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9.50         |
| 2년차                           | 2016년                  | 9.00         |
| 3년차                           | 2017년                  | 8.50         |
| 4년차                           | 2018년                  | 8.00         |
| 5년차                           | 2019년                  | 7.50         |
| 6년차                           | 2020년                  | 7.00         |
| 7년차                           | 2021년                  | 6.50         |
| 8년차                           | 2022년                  | 6.00         |
| 9년차                           | 2023년                  | 5.50         |
| 10년차                          | 2024년                  | 5.00         |
| 11년차                          | 2025년                  | 4.50         |
| 12년차                          | 2026년                  | 4.00         |



|                                     |                        |              |
|-------------------------------------|------------------------|--------------|
| 2. 기타 코코아를<br>포함하지 않은<br>설탕과자(캔디 등) | HS CODE                | 1704.9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0/1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0.5          |
| 13년차                                | 2027년                  | 3.50         |
| 14년차                                | 2028년                  | 3.00         |
| 15년차                                | 2029년                  | 2.50         |
| 16년차                                | 2030년                  | 2.00         |
| 17년차                                | 2031년                  | 1.50         |
| 18년차                                | 2032년                  | 1.00         |
| 19년차                                | 2033년                  | 0.50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8.2          |

#### ■ 검역 요구

#### ▶ Q식품안전 국가표준 GB17399-2016 糖果(당과)

#####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당과류에 적용함

##### 2. 용어 및 정의

###### 2.1 당과(糖果)

식용당(糖), 시럽 혹은 감미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일정 공정을 거쳐 제조된 단 맛의 식품

###### 2.1.1 껌베이스당과(胶基糖果)

검과 설탕, 시럽 혹은 감미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일정 공정을 거쳐 제조된 씹거나 볼 수 있는 당과

##### 3. 기술 요구

###### 3.1 원료 요구

원료는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3.2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 방법                                                                        |
|-------|--------------------------------------------------------------|------------------------------------------------------------------------------|
| 외관, 색 | 제품 고유의 외관특성,<br>제품 고유의 색                                     | 적당량을 깨끗한 백색 접시 위에 두고, 자연광 아래에서 외관과 색, 상태를 관찰한다. 냄새를 맡아보고, 온수로 입을 헹군 후 맛을 본다. |
| 맛, 냄새 | 제품 고유의 맛과 냄새                                                 |                                                                              |
| 상태    | 제품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곰팡이가 피지 않아야 하고, 정상시력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3.3 오염물질 제한량

GB2762의 규정에 따름

| 검사 항목 | 제한량(mg/kg) |
|-------|------------|
| 납     | 0.5        |

### 3.4 미생물 제한량

〈표 2〉의 규정에 따름

〈표 2〉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검사방법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 균락총수  | 5                        | 2 | 104 | 10 <sup>5</sup> | GB4789.2 |
| 대장균군  | 5                        | 2 | 10  | 10 <sup>2</sup> | GB4789.3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 (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 3.5 식품첨가제와 식품영양강화제

3.5.1 식품첨가제는 GB2760에 부합해야 함

3.5.2 식품영양강화제는 GB14880에 부합해야 함

■ 2018년 1~10월 질검중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1월 | 2       | 0   | 0%    |
| 3월 | 7       | 2   | 28.5% |
| 4월 | 14      | 0   | 0%    |
| 5월 | 2       | 0   | 0%    |
| 7월 | 1       | 1   | 100%  |
| 8월 | 1       | 0   | 0%    |
| 9월 | 3       | 0   | 0%    |
| 합계 | 30      | 3   | 10%   |

■ 제품 불합격 사례(한국산)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3월 | 1704900000 | 땅콩맛 캔디 | 식품첨가제 비타민E 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 1704900000 | 밀크캔디   | 식품첨가제 비타민E 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7월 | 1704900000 | 땅콩맛 캔디 | 식품첨가제 비타민E 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제품 불합격 유형(한국산) ■

| 유형                    | 건수 |
|-----------------------|----|
|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과다/초과 사용 | 3  |

■ 불합격 사례 분석

-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과다/초과 사용

- 비타민E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60식품첨가제, GB14880 영양강화제 규정에 따라 캔디류에는 첨가 불가능(추잉껌 제외)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60식품첨가제 규정 중 “캔디류”의 대분류 및 세부 분류별 식품첨가제 기준 제한에 부합해야 함. 특히 캔디류에 첨가하는 색소는 식품첨가제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캔디류에 사용 가능한 색소만 첨가 가능함. 통상 한국에서 캔디류에 두루 사용하는 색소인 “적양배추색소” 등은 중국에서 허용한 색소가 아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출을 진행할 경우 중문라벨에 첨가가 불가능한 색소를 그대로 중문 번역하여 작성 후 부착을 하고, 성분배합 비율표에도 해당 색소가 기재된 상태로 서류가 제출될 경우 검역 과정 중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되어 반송/폐기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함
- 비타민 캔디의 경우 일반 캔디와 동일한 검역 표준이 적용되므로, 비타민 보강을 위한 종합비타민 캔디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4880 영양강화제 규정에 따라 캔디류에 사용이 허용된 영양강화제만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함. 만약 실험실 검역결과 영양강화제가 초과 검출되거나, 첨가해서는 안되는 영양강화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불합격으로 반송/폐기처리되므로 사전에 제품의 중국 수출 적합성 여부를 정확하게 심의해야 함

- 구비서류 제출 미비

- 2018년 불합격 사례에는 없으나, 2017년 불합격 사례를 보면 홍삼캔디의 경우 캔디에 함유된 인삼의 경작증명서(5년근임을 증명)의 중국대사관인증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지역별로 원산지증명서에 영문기재로 대체되기도 하므로 사전 확인 후 선적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 중 색소, 영양강화제 사전 검토                                                                  |
| 2. 원료      | 특정원료, 영양소(비타민 캔디)의 영양소 첨가 제한량 확인                                                         |
| 3. 중문라벨    | 홍삼캔디는 중문라벨에 식용부적합군 표기 필수                                                                 |
| 4. 통관서류    | 홍삼캔디는 홍삼원료에 대한 5년근 입증 경작증명서의 주한중국대사관 인증서 제출                                              |
| 5. HS CODE | 컵젤리(푸딩)는 과육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HS CODE로 분류(젤리로 분류되는 2007호로 분류될 경우 심사 후 해관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

## (2) 곡류 조제품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1904.100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 ■ 곡물팽화식품(뽕튀기 등) ■



- 1904.2000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건조과실, 견과류, 설탕, 꿀 등을 함유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아침식사용 식품으로 포장함)

## 건과/과실 혼합 곡물 플레이크



- 1904.3000 불거 밀(bulgur wheat)
- 1904.9000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의 곡물(기타)

### 관세율 보기표 1

| 1.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br>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br>조제식료품(뽕튀기 등) | HS CODE                | 1904.1000    |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5/1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25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23.75        |
| 2년차                                             | 2016년                  | 22.50        |
| 3년차                                             | 2017년                  | 21.25        |
| 4년차                                             | 2018년                  | 20.00        |
| 5년차                                             | 2019년                  | 18.75        |
| 6년차                                             | 2020년                  | 17.50        |
| 7년차                                             | 2021년                  | 16.25        |
| 8년차                                             | 2022년                  | 15.00        |
| 9년차                                             | 2023년                  | 13.75        |
| 10년차                                            | 2024년                  | 12.50        |
| 11년차                                            | 2025년                  | 11.25        |

| 1.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br>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br>조제식료품(뽕튀기 등) | HS CODE                | 1904.1000    |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5/1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25         |
| 12년차                                            | 2026년                  | 10.00        |
| 13년차                                            | 2027년                  | 8.75         |
| 14년차                                            | 2028년                  | 7.50         |
| 15년차                                            | 2029년                  | 6.25         |
| 16년차                                            | 2030년                  | 5.00         |
| 17년차                                            | 2031년                  | 3.75         |
| 18년차                                            | 2032년                  | 2.50         |
| 19년차                                            | 2033년                  | 1.25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해당사항 없음      |

관세율 보기표 2

| 2. 곡물 플레이크,<br>불거 밀, 기타 방법으로<br>조제한 곡물 | HS CODE                | 1904.2000<br>1904.3000<br>1904.9000 |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30/1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5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28.50                               |
| 2년차                                    | 2016년                  | 27.00                               |
| 3년차                                    | 2017년                  | 25.50                               |
| 4년차                                    | 2018년                  | 24.00                               |
| 5년차                                    | 2019년                  | 22.50                               |
| 6년차                                    | 2020년                  | 21.00                               |
| 7년차                                    | 2021년                  | 19.50                               |
| 8년차                                    | 2022년                  | 18.00                               |
| 9년차                                    | 2023년                  | 16.50                               |

|                                        |                      |                                     |
|----------------------------------------|----------------------|-------------------------------------|
| 2. 곡물 플레이크,<br>불거 밀, 기타 방법으로<br>조제한 곡물 | HS CODE              | 1904.2000<br>1904.3000<br>1904.9000 |
|                                        | 기준관세율(%)/2018 MFN(%) | 30/10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5                                 |
| 10년차                                   | 2024년                | 15.00                               |
| 11년차                                   | 2025년                | 13.50                               |
| 12년차                                   | 2026년                | 12.00                               |
| 13년차                                   | 2027년                | 10.50                               |
| 14년차                                   | 2028년                | 9.00                                |
| 15년차                                   | 2029년                | 7.50                                |
| 16년차                                   | 2030년                | 6.00                                |
| 17년차                                   | 2031년                | 4.50                                |
| 18년차                                   | 2032년                | 3.00                                |
| 19년차                                   | 2033년                | 1.50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해당사항 없음                             |

#### ■ 검역 요구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7401-2014 膨化食品(팽화식품)

#####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포장된 팽화식품에 적용함

##### 2. 용어 및 정의

###### 2.1 팽화식품(膨化食品)

곡류, 서(薯)류, 두(豆)류, 과채류, 견과/씨앗 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팽화공정을 거쳐 조직을 느슨하게 하거나 부풀려 바삭하게 만든 식품



## 2.2 팽화(膨化)

원료에 열을 가하거나 압력에 변화를 주어 체적을 팽창시키거나 조직을 느슨하게 하는 과정

## 2.3 함유(油)형 팽화식품

식용유지를 사용하여 지지고 튀기거나 제품에 식용유지를 첨가하거나 뿌린 팽화식품

## 2.4 비함유(油)형 팽화식품

제품에 식용유지를 첨가하거나 뿌리지 않은 팽화식품

# 3. 기술 요구

## 3.1 원료 요구

원료는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3.2 감관지표

감관지표는 <표 1>에 부합해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 방법                                                                        |
|-------|---------------------------------------|------------------------------------------------------------------------------|
| 색, 광택 | 제품 고유의 색과 광택                          | 적당량을 깨끗한 백색 접시 위에 두고, 자연광 아래에서 외관과 색, 상태를 관찰한다. 냄새를 맡아보고, 온수로 입을 헹군 후 맛을 본다. |
| 맛, 냄새 | 제품 고유의 맛과 냄새                          |                                                                              |
| 상태    | 곰팡이가 피지 않아야 하고, 정상시력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3.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검사 항목                   |   | 지표     |         | 검사방법         |
|-------------------------|---|--------|---------|--------------|
|                         |   | 함유(油)형 | 비함유(油)형 |              |
| 수분/(g/100g)             | ≤ | 7      |         | GB5009.3     |
| 산가(지방으로 산)(KOH)/(mg/g)  | ≤ | 5      | -       | GB/T 5009.56 |
| 과산화물값(지방으로 계산)/(g/100g) | ≤ | 0.25   | -       | GB/T 5009.56 |

### 3.4 오염물질 제한량과 진균독소 제한량

#### 3.4.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제한량(mg/kg) |
|-------|------------|
| 납     | 0.5        |

#### 3.4.2.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팽화식품의 원료에 따라 제한량 규정이 다르므로, 주원료 기준으로 적용

### 3.5 미생물 제한량

#### 3.5.1 병원균 제한량은 GB29921중 익힌 곡식(양식(糧食)) 제품류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CFU/g) |   |     |      | 검사방법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 살모넬라균   | 5                       | 0 | 0   | -    | GB4789.4  |
| 항색포도상구균 | 5                       | 1 | 100 | 1000 | GB4789.10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 3.5.2 미생물 제한량은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3>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검사방법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 균락총수  | 5                        | 2 | 10 <sup>4</sup> | 10 <sup>5</sup> | GB4789.2 |
| 대장균군  | 5                        | 2 | 10              | 10 <sup>2</sup> | GB4789.3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 3.6 식품첨가제와 식품영양강화제

3.6.1 식품첨가제는 GB2760에 부합해야 함

3.6.2 식품영양강화제는 GB14880에 부합해야 함

## 4. 기타

포장지 내부에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비식용물품(반드시 독립된 포장에 있어야 하며 해당 포장재료는 국가식품포장재료의 관련 표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비식용물품에는 반드시 “비식용(非食用)”의 글자를 표기해야 함)을 함께 넣어서는 안 됨. 단, 식용방법과 관련된 유관 요구에 부합하는 식용 도구 등의 물품은 제외함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9640-2016 타먹는 곡물제품(冲调谷物制品)

###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곡물 혹은 기타 전분류를 주원료로 한 포장된 형태의 타먹는 곡물제품에 적용함

### 2. 용어 및 정의

#### 2.1 타먹는 곡물제품(冲调谷物制品)

곡물 혹은 기타 전분류를 주원료로 하여, 부원료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익힌 후 (혹은)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 직접 액체에 타 먹거나 액체에 담근 후 가열하여 먹는 식품 오트밀, 깨죽분말, 연근가루, 콩가루, 죽(분말형) 등

### 3. 기술 요구

#### 3.1 원료 요구

원료는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3.2 감관지표

〈표 1〉에 부합해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 방법                                                          |
|-------|------------------------------------------------------------------------|----------------------------------------------------------------|
| 색, 광택 | 제품 고유의 색과 광택                                                           | 적당량을 깨끗한 백색 접시 위에                                              |
| 맛, 냄새 | 제품 고유의 맛과 냄새                                                           | 두고, 자연광 아래에서 이물질이                                              |
| 상태    | 곰팡이가 피지 않아야 하고, 정상시력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물에 킁을 때 끈적한 형태 혹은 고체와 액체가 혼합된 형태 | 없는지 관찰한다. 냄새를 맡아보고, 온수로 입을 헹군 후, 액체에 타거나 액체에 킁 후 가열하여 그 맛을 본다. |

### 3.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검사 항목 |   | 지표 (g/100g) |       |      | 검사방법     |
|-------|---|-------------|-------|------|----------|
|       |   | 순오트밀        | 순연근분말 | 기타   |          |
| 수분    | ≤ | 12.0        | 13.0  | 10.0 | GB5009.3 |

### 3.4 오염물질 제한량과 진균독소 제한량

3.4.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그중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타먹는 곡물제품은 반드시 오트밀(麦片)의 규정을 따라야 함. 곡물을 주원료로 하고, 채소, 과일, 견과, 기금육, 수산물 등을 첨가한 타먹는 곡물제품은 소가 있는 면(쌀)제품의 규정을 따라야 함. 기타 전분류를 주원료로 하는 타먹는 곡물제품은 전분제품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타먹는 곡물제품 / 전분류 곡물제품

| 검사 항목 | 제한량 (mg/kg) |
|-------|-------------|
| 납     | 0.5         |

- 채소, 과일, 견과, 기금육, 수산물 등을 첨가한 타먹는 곡물제품

| 검사 항목 | 제한량 (mg/kg) |
|-------|-------------|
| 납     | 0.2         |

### 3.4.2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타먹는 곡물제품의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 중 곡물 및 기타 곡물제품의 규정을 따라야 함

#### 1) 아플라톡신B1

|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mu\text{g/kg}$ ) |
|----------------------------|--------------------------------|
| 옥수수, 옥수수면(칩, 부스러기) 및 옥수수제품 | 20                             |
| 벼, 현미, 쌀                   | 10                             |
| 소맥, 보리, 기타 곡물              | 5.0                            |
| 소맥분,オート밀, 기타 탈각한 곡물        | 5.0                            |

#### 2) 디옥시니발레논

|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mu\text{g/kg}$ ) |
|---------------------|--------------------------------|
| 옥수수, 옥수수면(칩, 부스러기)  | 1,000                          |
| 소맥분,オート밀, 기타 탈각한 곡물 | 1,000                          |

#### 3) 오크라톡신A

|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mu\text{g/kg}$ ) |
|--------------|--------------------------------|
| 곡물, 곡물가루 가공품 | 5.0                            |

#### 4) 제아랄레논

|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mu\text{g/kg}$ ) |
|--------------------|--------------------------------|
| 옥수수, 옥수수면(칩, 부스러기) | 60                             |
| 소맥, 소맥분            | 60                             |

### 3.5 미생물 제한량

#### 3.5.1 병원균 제한량은 GB29921 중 곡식 제품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CFU/g) |   |     |      | 검사방법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 살모넬라균   | 5                       | 0 | 0   | -    | GB4789.4  |
| 황색포도상구균 | 5                       | 1 | 100 | 1000 | GB4789.10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 3.5.2 미생물 제한량은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3>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CFU/g) |   |                 |                 | 검사방법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 균락총수  | 5                       | 2 | 10 <sup>4</sup> | 10 <sup>5</sup> | GB4789.2  |
| 대장균군  | 5                       | 2 | 10              | 10 <sup>2</sup> | GB4789.3  |
| 곰팡이균  | 5                       | 2 | 50              | 10 <sup>2</sup> | GB4789.15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 3.6 식품첨가제와 식품영양강화제

#### 3.6.1 식품첨가제는 GB2760에 부합해야 함

#### 3.6.2 식품영양강화제는 GB14880에 부합해야 함

### ■ 2018년 1~10월 질검총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1월  | 3       | 0   | 0% |
| 2월  | 7       | 0   | 0% |
| 3월  | 2       | 0   | 0% |
| 4월  | 1       | 0   | 0% |
| 5월  | 3       | 0   | 0% |
| 6월  | 3       | 0   | 0% |
| 7월  | 4       | 0   | 0% |
| 8월  | 2       | 0   | 0% |
| 10월 | 34      | 0   | 0% |
| 합계  | 59      | 0   | 0%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국가 일부 발체)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1월 | 1904100000 | **일본산 버터간장맛 팽창식품          | 구비서류 제출 비미             | 상해  |
|    | 1904100000 | **일본산 소금맛 팽창식품            | 구비서류 제출 비미             | 상해  |
|    | 1904100000 | **일본산 플레인 팽창식품            | 구비서류 제출 비미             | 상해  |
| 2월 | 1904100000 | **스웨덴산オート밀 6종             | 곰팡이균 초과검출              | 영파  |
|    | 1904200000 | **호주산オート밀                 | 수분 제한량 초과              | 강소성 |
| 3월 | 1904100000 | **대만산 옥수수 스틱<br>(치즈맛)     | 식품첨가제 수크랄로스<br>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 1904100000 | **대만산 감자칩<br>(매운치즈맛)      | 식품첨가제 수크랄로스<br>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5월 | 1904100000 | **호주산オート밀                 | 라벨 불합격                 | 천진  |
|    | 1904100000 | **호주산オート밀(복숭아, 호두)        | 라벨 불합격                 | 천진  |
|    | 1904100000 | **호주산オート밀(아몬드)            | 라벨 불합격                 | 천진  |
| 7월 | 1904100000 | **호주산 플레인 대두칩 팽창식품        | 과산화물값 초과검출             | 상해  |
|    | 1904100000 | **호주산 와사비 허니맛 대두칩<br>팽창식품 | 과산화물값 초과검출             | 상해  |
|    | 1904100000 | **호주산 와사비 허니맛 대두칩<br>팽창식품 | 과산화물값 초과검출             | 상해  |

■ 제품 불합격 유형(기타국가) ■

| 유형                    | 건수 |
|-----------------------|----|
| 구비서류 제출 미비            | 4  |
| 라벨 불합격                | 28 |
| 검역지표 불합격              | 14 |
|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과다/초과 사용 | 13 |

## ■ 불합격 사례 분석

- 2017년 1월~12월 불합격 사례는 총 226건으로 그중 한국산 제품의 불합격 사례는 총 14건으로 조회되며, 2018년 1월~10월 한국산 제품의 불합격 사례는 0건으로 조회됨
- 라벨 불합격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7718 예포장식품 라벨통칙에 의거 관련 표기사항을 표기해야 함
  - 상해지역은 라벨 검역 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성분 등 근본적인 문제점 제외) 수정 후 재부착의 기회가 1번 더 주어지나, 재검역 후 시정되지 않거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 처리되어 반송/폐기처리 되므로 유의해야 함
-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과다/초과 사용
  - 3월 불합격된 대만산 스낵(팽화식품)제품은 식품첨가제 수크랄로스 초과 사용으로 불합격되었으며,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GB2760-2014의 수크랄로스 사용 가능 품목에 “팽화식품”은 없으므로 불합격 처리됨
- 검역지표 불합격
  - 팽화식품, 과자류는 국가표준의 이화지표(검역항목)에 수분함량과 과산화물값 등의 검역 지표를 규정하고 있어 유의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비타민류의 첨가 관련 불합격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 심의   |
| 2. 원료      | 시리얼류의 경우 곡물 중 첨가 불가능 원료 포함 여부 심의 |
| 3. 중문라벨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쌀과자의 경우 섭취시 주의문구 기재 |
| 4. 통관서류    | -                                |
| 5. HS CODE | 팽화식품 1904/ 베이커리(쿠키)1905 구분       |



### (3) 빵, 비스킷, 기타 베이커리 제품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1905.1000 귀리빵
- 1905.2000 생강과자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905.3100 스위트 비스킷
- 1905.3200 와플과 웨이퍼
- 1905.4000 러스크, 토스트 빵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 1905.9000 기타

관세율 보기표 1

|                 |                        |                                     |
|-----------------|------------------------|-------------------------------------|
| 1. 귀리빵/생강과자/토스트 | HS CODE                | 1905.1000<br>1905.2000<br>1905.4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1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5(15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33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8.67                               |
| 2년차             | 2016년                  | 17.33                               |
| 3년차             | 2017년                  | 16.00                               |
| 4년차             | 2018년                  | 14.67                               |
| 5년차             | 2019년                  | 13.33                               |
| 6년차             | 2020년                  | 12.00                               |
| 7년차             | 2021년                  | 10.67                               |
| 8년차             | 2022년                  | 9.33                                |
| 9년차             | 2023년                  | 8.00                                |
| 10년차            | 2024년                  | 6.67                                |
| 11년차            | 2025년                  | 5.33                                |
| 12년차            | 2026년                  | 4.00                                |
| 13년차            | 2027년                  | 2.67                                |
| 14년차            | 2028년                  | 1.33                                |
| 15년차            | 2029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해당사항 없음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2. 스위트비스킷<br>/와플과 웨이퍼 | HS CODE                | 1905.3100<br>1905.32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5/10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5(15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4.00                  |
| 2년차                   | 2016년                  | 13.00                  |
| 3년차                   | 2017년                  | 12.00                  |
| 4년차                   | 2018년                  | 11.00                  |
| 5년차                   | 2019년                  | 10.00                  |
| 6년차                   | 2020년                  | 9.00                   |
| 7년차                   | 2021년                  | 8.00                   |
| 8년차                   | 2022년                  | 7.00                   |
| 9년차                   | 2023년                  | 6.00                   |
| 10년차                  | 2024년                  | 5.00                   |
| 11년차                  | 2025년                  | 4.00                   |
| 12년차                  | 2026년                  | 3.00                   |
| 13년차                  | 2027년                  | 2.00                   |
| 14년차                  | 2028년                  | 1.00                   |
| 15년차                  | 2029년                  | 0.00                   |
| 16년차                  | 2030년                  | 6.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12.3                   |

■ 관세율 보기표 3 ■

|                        |                      |              |
|------------------------|----------------------|--------------|
| 3. 기타<br>(베이커리, 과자류 등) | HS CODE              | 1905.9000    |
|                        | 기준관세율(%)/2018 MFN(%) | 20/1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9.00        |
| 2년차                    | 2016년                | 18.00        |
| 3년차                    | 2017년                | 17.00        |
| 4년차                    | 2018년                | 16.00        |
| 5년차                    | 2019년                | 15.00        |
| 6년차                    | 2020년                | 14.00        |
| 7년차                    | 2021년                | 13.00        |
| 8년차                    | 2022년                | 12.00        |
| 9년차                    | 2023년                | 11.00        |
| 10년차                   | 2024년                | 10.00        |
| 11년차                   | 2025년                | 9.00         |
| 12년차                   | 2026년                | 8.00         |
| 13년차                   | 2027년                | 7.00         |
| 14년차                   | 2028년                | 6.00         |
| 15년차                   | 2029년                | 5.00         |
| 16년차                   | 2030년                | 4.00         |
| 17년차                   | 2031년                | 3.00         |
| 18년차                   | 2032년                | 2.00         |
| 19년차                   | 2033년                | 1.00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17.2         |

■ 검역 요구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7099-2015 케이크(떡), 빵(糕点, 面包)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케이크(떡)와 빵에 적용함

2. 용어 및 정의

2.1 케이크(떡)(糕点)

곡물, 콩류, 서(薯)류, 유지, 당, 달걀 등 1종 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기타 원료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조제하여 성형 후 익혀 제조된 식품 및 익히기 전이나 익힌 후 제품의 표면 혹은 내부에 크림, 달걀흰자, 코코아, 과일잼 등을 첨가한 식품

2.2 빵(面包)

소맥분, 효모, 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기타 원료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반죽, 발효, 성형, 휴지, 익힘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식품 및 익히기 전이나 익힌 후 제품의 표면 혹은 내부에 크림, 달걀흰자, 코코아, 과일잼 등을 첨가한 식품

3. 기술 요구

3.1 원료 요구

원료는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3.2 감관지표

〈표 1〉에 부합해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 방법                                                                    |
|-------|--------------------------------------------|--------------------------------------------------------------------------|
| 색, 광택 | 제품 고유의 색과 광택                               | 적당량을 깨끗한 백색 접시 위에 두고, 색과 상태, 이물질이 없는지 관찰한다. 냄새를 맡아보고, 온수로 입을 헹군 후 맛을 본다. |
| 맛, 냄새 | 제품 고유의 맛과 냄새                               |                                                                          |
| 상태    | 곰팡이가 피지 않아야 하고, 유충이나 정상시력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3.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방법       |
|-------------------------|--------|------------|
| 산가(지방으로 산)(KOH)/(mg/g)  | ≤ 5    | GB5009.229 |
| 과산화물값(지방으로 계산)/(g/100g) | ≤ 0.25 | GB5009.227 |

비고: 산가와 과산화물값 지표는 원료 중 유지(油脂)를 첨가한 제품에만 적용

### 3.4 오염물질 제한량과 잔류농약 제한량

| 검사 항목 | 제한량 (mg/kg) |
|-------|-------------|
| 납     | 0.5         |

### 3.5 미생물 제한량

3.5.1 병원균 제한량은 GB29921 중 익힌 곡식 제품(베이커리류)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검사방법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 살모넬라균   | 5                        | 0 | 0   | -    | GB4789.4  |
| 황색포도상구균 | 5                        | 1 | 100 | 1000 | GB4789.10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3.5.2 미생물 제한량은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3>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검사방법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 균락총수 <sup>b</sup>   | 5                        | 2 | 10 <sup>4</sup> | 10 <sup>5</sup> | GB4789.2  |
| 대장균군 <sup>b</sup>   | 5                        | 2 | 10              | 10 <sup>2</sup> | GB4789.3  |
| 곰팡이균 <sup>c</sup> ≤ | 150                      |   |                 |                 | GB4789.15 |

<sup>b</sup> 균락총수와 대장균군의 요구는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익히지 않은 발효된 원료 혹은 신선과일과 채소를 함유한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sup>c</sup> 곰팡이균을 사용한 숙성치즈를 첨가한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 3.6 식품첨가제와 식품영양강화제

3.6.1 식품첨가제는 GB2760에 부합해야 함

3.6.2 식품영양강화제는 GB14880에 부합해야 함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7100-2015 과자(饼干)

##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과자(饼干)에 적용함

## 2. 용어 및 정의

## 2.1 과자(饼干)

곡류분말(과/혹은 콩류, 서(薯)류 분말) 등을 주원료로 하며, 당, 유지 및 기타 원료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배합(반죽), 성형, 베이킹 등의 과정을 거친 식품 및 익히기 전이나 익힌 후 제품의 표면 혹은 내부에 크림, 달걀흰자, 코코아, 초콜릿 등을 첨가한 식품

## 3. 기술 요구

## 3.1 원료 요구

원료는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3.2 감관지표

〈표 1〉에 부합해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 방법                                                                    |
|-------|--------------------------------------------|--------------------------------------------------------------------------|
| 색, 광택 | 제품 고유의 색과 광택                               | 적당량을 깨끗한 백색 접시 위에 두고, 색과 상태, 이물질이 없는지 관찰한다. 냄새를 맡아보고, 온수로 입을 헹군 후 맛을 본다. |
| 맛, 냄새 | 제품 고유의 맛과 냄새                               |                                                                          |
| 상태    | 곰팡이가 피지 않아야 하고, 유충이나 정상시력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3.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방법       |
|-------------------------|--------|------------|
| 산가(지방으로 산)(KOH)/(mg/g)  | ≤ 5    | GB5009.229 |
| 과산화물값(지방으로 계산)/(g/100g) | ≤ 0.25 | GB5009.227 |

비고: 산가와 과산화물값 지표는 원료 중 유지(油脂)를 첨가한 제품에만 적용

#### 3.4 오염물질 제한량과 진균독소 제한량

| 검사 항목 | 제한량 (mg/kg) |
|-------|-------------|
| 납     | 0.5         |

#### 3.5 미생물 제한량

3.5.1 병원균 제한량은 GB29921 중 익힌 곡식 제품(베이커리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검사방법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 살모넬라균   | 5                        | 0 | 0   | -    | GB4789.4  |
| 황색포도상구균 | 5                        | 1 | 100 | 1000 | GB4789.10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경우 전체 불합격)

3.5.2 미생물 제한량은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3>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검사방법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 균락총수   | 5                        | 2 | 10 <sup>4</sup> | 10 <sup>5</sup> | GB4789.2  |
| 대장균군   | 5                        | 2 | 10              | 10 <sup>2</sup> | GB4789.3  |
| 곰팡이균 ≤ | 50                       |   |                 |                 | GB4789.15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전체 불합격)



## 3.6 식품첨가제와 식품영양강화제

3.6.1 식품첨가제는 GB2760에 부합해야 함

3.6.2 식품영양강화제는 GB14880에 부합해야 함

## ■ 2018년 1~10월 질검중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1월  | 4       | 2   | 50%  |
| 2월  | 1       | 0   | 0%   |
| 3월  | 33      | 0   | 0%   |
| 4월  | 2       | 0   | 0%   |
| 5월  | 21      | 0   | 0%   |
| 6월  | 17      | 0   | 0%   |
| 7월  | 27      | 0   | 0%   |
| 8월  | 9       | 0   | 0%   |
| 9월  | 10      | 1   | 10%  |
| 10월 | 7       | 0   | 0%   |
| 합계  | 131     | 3   | 2.2% |

## | 제품 불합격 사례(한국산)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1월 | 1905310000 | **초콜릿맛 과자 | 식품첨가제 비타민E 초과범위 사용  | 산둥성 |
|    | 1905310000 | **밀크맛 과자  | 식품첨가제 비타민E 초과범위 사용  | 산둥성 |
| 9월 | 1905900000 | **쌀 떡볶이   | 미생물(대장균군/균락총수) 초과검출 | 상해  |

### 제품 불합격 유형(한국산)

| 유형                    | 건수 |
|-----------------------|----|
| 미생물 초과검출              | 1  |
|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과다/초과 사용 | 2  |

#### ■ 불합격 사례 분석

##### - 검역허가 기준미달

- 9월 불합격된 쌀떡볶이 제품은 대장균군, 균락총수 초과로 불합격 되었으며 쌀떡볶이 제품의 특성상 곡물 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원료 투입 전 세척 등 위생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생산 후 살균처리를 철저히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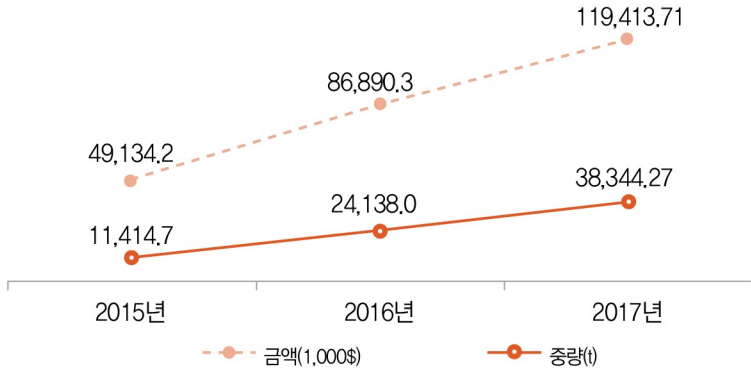
##### -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과다/초과 사용

- 1월 불합격된 과자류의 경우 비타민E 초과사용으로 불합격 되었으며,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60식품첨가물 규정에 의하면, 과자류(饼干)에는 첨가 불가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 중 색소류, 비타민류 첨가가능 여부 사전 심의              |
| 2. 원료      | 특정 원료 첨가시 일반식품으로 사용가능 여부 사전 심의               |
| 3. 중문라벨    | 성분 중 경화유지가 사용되었을 경우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산” 함량 표기 필수 |
| 4. 통관서류    | -                                            |
| 5. HS CODE | 평화식품1904/ 베이커리(쿠키)1905 구분                    |

## 나. 면류

### 면류 162 수출실적



※ 자료: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1) 라면, 인스턴트면, 기타면류(19.02 파스타와 쿠스쿠스)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1902.3030 인스턴트 면(라면, 컵라면 등)
- 1902.3090 기타(컵떡볶이 등)
- 1902.1900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국수, 당면 등)
- 1902.2000 속을 채운 파스타(냉동 만두 등)

관세율 보기표 1

|                  |                        |              |
|------------------|------------------------|--------------|
| 1. 인스턴트면(라면/컵라면) | HS CODE                | 1902.303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5/1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0.75         |
| FTA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4.25        |
| 2년차              | 2016년                  | 13.50        |
| 3년차              | 2017년                  | 12.75        |
| 4년차              | 2018년                  | 12.00        |
| 5년차              | 2019년                  | 11.25        |
| 6년차              | 2020년                  | 10.50        |
| 7년차              | 2021년                  | 9.75         |
| 8년차              | 2022년                  | 9.00         |
| 9년차              | 2023년                  | 8.25         |
| 10년차             | 2024년                  | 7.50         |
| 11년차             | 2025년                  | 6.75         |
| 12년차             | 2026년                  | 6.00         |
| 13년차             | 2027년                  | 5.25         |
| 14년차             | 2028년                  | 4.50         |
| 15년차             | 2029년                  | 3.75         |
| 16년차             | 2030년                  | 3.00         |
| 17년차             | 2031년                  | 2.25         |
| 18년차             | 2032년                  | 1.50         |
| 19년차             | 2033년                  | 0.75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13.1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2. 기타(컵떡볶이 등)<br>3.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br>4. 속을 채운 파스타 | HS CODE                | 1902.3090<br>1902.1900<br>1902.2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5 / 1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5(15년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4.00                               |
| 2년차                                             | 2016년                  | 13.00                               |
| 3년차                                             | 2017년                  | 12.00                               |
| 4년차                                             | 2018년                  | 11.00                               |
| 5년차                                             | 2019년                  | 10.00                               |
| 6년차                                             | 2020년                  | 9.00                                |
| 7년차                                             | 2021년                  | 8.00                                |
| 8년차                                             | 2022년                  | 7.00                                |
| 9년차                                             | 2023년                  | 6.00                                |
| 10년차                                            | 2024년                  | 5.00                                |
| 11년차                                            | 2025년                  | 4.00                                |
| 12년차                                            | 2026년                  | 3.00                                |
| 13년차                                            | 2027년                  | 2.00                                |
| 14년차                                            | 2028년                  | 1.00                                |
| 15년차                                            | 2029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1902.3090 / 13.1                    |

■ 검역 요구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7400-2015 方便面(인스턴트면)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인스턴트 라면, 쫄면, 콩면에 적용함

2. 용어 및 정의

2.1 인스턴트면(方便面)

소맥분과/혹은 기타 곡물가루,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부원료를 추가/추가하지 않은 가공된 면(납작한 형태)으로, 스프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포장된 식품, 유탕처리된 것과 비유탕처리된 것을 포함함

2.1.1 유탕처리면(油炸方便面)

유탕처리 후 건조한 인스턴트면으로 컵라면, 생라면, 끓이는 면(봉지라면 등)을 포함함

2.1.2 비유탕처리면(非油炸方便面)

유탕처리를 제외한 기타(마이크로웨이브, 진공과 열풍 등) 건조방법으로 제조된 인스턴트면으로 컵라면, 생라면, 끓이는 면(봉지라면 등)을 포함함

2.2 인스턴트쌀국수(方便米线)

쌀을 주원료로 하여, 부원료를 첨가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 제조된 다양한 형태의 쌀면(쌀국수)제품으로 인스턴트 스프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포장된 식품

2.3 기타인스턴트면(方便粉丝)

서(薯)类, 콩류, 곡류전분류를 주원료로 하여, 기타 부원료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가공하여 제조된 면(둥글게 생긴 형태) 제품으로 인스턴트 스프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포장된 식품

2.4 면 사리(面饼)

소맥분, 쌀과(또는) 기타곡물가루, 전분가루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하여 제조된 다양한 형식의 면

## 2.5 인스턴트 스프

면사리, 쌀면, 기타면류 외 맛과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식용 가능한 조미료, 채소, 콩류, 가금육, 수산물 등으로 가공된 제품으로 면사리에 직접 첨가되거나 단독으로 포장된 것

## 3. 기술 요구

### 3.1 원료 요구

원료는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3.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 방법                                                                              |
|-------|--------------------------------------|------------------------------------------------------------------------------------|
| 외관, 색 | 제품 고유의 외관특성, 제품 고유의 색                | 식용방법대로 샘플을 취해 500mL의 투명한 비커에 담고, 자연광 아래에서 색, 형태를 관찰하고 냄새를 맡아본다. 온수로 입을 행군 후 맛을 본다. |
| 맛, 냄새 | 제품 고유의 맛과 냄새                         |                                                                                    |
| 상태    | 외형이 가지런해야 하고, 정상 시력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3.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방법       |
|-------------------------|--------|------------|
| 수분/(g/100g)             |        |            |
| 유탕처리된 면사리               | ≤ 10.0 | GB5009.3   |
| 비유탕처리된 면사리              | ≤ 14.0 |            |
| 산가(지방으로 산)(KOH)/(mg/g)  |        |            |
| 유탕처리된 면사리               | ≤ 1.8  | GB5009.229 |
| 과산화물값(지방으로 계산)/(g/100g) |        |            |
| 유탕처리된 면사리               | ≤ 0.25 | GB5009.227 |

비고: 산가와 과산화물값 지표는 원료 중 유지(油脂)를 첨가한 제품에만 적용

### 3.4 오염물질 제한량

GB2762의 규정 중 소를 포함한 면(쌀)제품의 규정에 따름

| 검사 항목 | 제한량 (mg/kg) |
|-------|-------------|
| 납     | 0.5         |

### 3.5 미생물 제한량

3.5.1 병원균 제한량은 GB29921 중 인스턴트 쌀국수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검사방법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 살모넬라균   | 5                        | 0 | 0   | -    | GB4789.4  |
| 황색포도상구균 | 5                        | 1 | 100 | 1000 | GB4789.10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3.5.2 미생물 제한량은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3>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CFU/g) |   |                 |                 | 검사방법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 균락총수 <sup>b</sup> | 5                       | 2 | 10 <sup>4</sup> | 10 <sup>5</sup> | GB4789.2 |
| 대장균군 <sup>b</sup> | 5                       | 2 | 10              | 10 <sup>2</sup> | GB4789.3 |

<sup>b</sup> 사리면과 조미료를 혼합하여 검역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3.6 식품첨가제와 식품영양강화제

3.6.1 식품첨가제는 GB2760에 부합해야 함

3.6.2 식품영양강화제는 GB14880에 부합해야 함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9295-2011 速冻面米制品(급속냉동 밀가루 및 쌀 가공제품)

##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급속냉동 밀가루 및 쌀 가공제품에 적용함

## 2. 용어 및 정의

## 2.1 급속냉동 밀가루 및 쌀 가공제품(速冻面米制品)

소맥분, 쌀, 잡곡 등 곡물을 주원료로 하여, 육류, 가금류, 달걀, 수산물, 채소, 과일, 당, 기름, 조미료 등 단일 혹은 여러 종류의 원료를 소(馅)로 배합하여 성형(혹은 가열하여 익힘)을 통해 생산된 급속 냉동 처리된 식품

## 2.2 급속냉동(速冻)

최대 얼음결정생성대를 신속히 통과시켜 평균 온도가  $-18^{\circ}\text{C}$ 에 도달했을 때 동결을 완료하는 동결 방법

## 2.3 생제품(生制品)

제품을 동결시키기 전에 가열하여 익히지 않은 제품

## 2.4 익힌 제품(熟制品)

제품을 동결시키기 전에 가열하여 익힌 비(非)즉석섭취 제품

## 3. 기술 요구

## 3.1 원료 요구

원료는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3.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 방법                                                                         |
|-------|-----------------------------------------------|-------------------------------------------------------------------------------|
| 조직형태  | 제품 고유의 외관특성, 변형과 파손이 없어야 하고, 표면에 얼음 결정이 없어야 함 | GB/T5009.56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포장지에 표기된 식용방법으로 가열하거나 익힌 후, 맛을 보고 냄새를 맡아 본다. |
| 색, 광택 | 제품 고유의 색과 광택                                  |                                                                               |
| 맛, 냄새 | 제품 고유의 맛과 냄새                                  |                                                                               |
| 이물질   | 정상시력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3.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 방법        |
|------------------------------------------|--------|--------------|
| 과산화물값 <sup>a</sup><br>(지방산으로 계산, g/100g) | ≤ 0.25 | GB/T 5009.56 |

<sup>a</sup>해당 지표는 동물성 식품 혹은 견과류를 주원료로 한 소가 있는 제품에 한함

### 3.4 오염물질 제한량

소가 없는 제품의 납 제한량은 [곡물 및 곡물제품] 제한량에 따름

소가 있는 제품의 납 제한량은 [소가 있는 면(쌀)제품] 제한량에 따름

| 검사 항목         | 제한량 (mg/kg) |
|---------------|-------------|
| 납<br>소가 있을 경우 | 0.5         |
| 납<br>소가 없을 경우 | 0.2         |

### 3.5 미생물 제한량

생제품의 미생물 함량은 <표 3>의 규정, 익힌 제품의 미생물 규정은 <표 4>의 규정에 따름

<표 3> 생제품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살모넬라균   | 5                        | 0 | 0/25g | -     |
| 항색포도상구균 | 5                        | 1 | 1000  | 10000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lt;표 4&gt; 익힌 제품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균락총수    | 5                        | 1 | 10000 | 100000 |
| 대장균     | 5                        | 1 | 10    | 100    |
| 살모넬라균   | 5                        | 0 | 0/25g | -      |
| 황색포도상구균 | 5                        | 1 | 100   | 1000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 3.6 식품첨가제

식품첨가제는 GB2760에 부합해야 함

## 4. 기타

### 4.1 표기

제품에 반드시 급속냉동, 생제품, 익힌 제품, 조리가공 방식 등을 표기해야 함

### 4.2 냉동보관/운수 온도 제어

제품 보존 온도는 반드시  $-18^{\circ}\text{C}$  이하로 표기해야 하며, 온도 변동폭은  $2^{\circ}\text{C}$  이내로 유지하고, 운송과정 중 온도는  $-12^{\circ}\text{C}$  보다 높지 않아야 함

■ 2018년 1~10월 질검총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3월  | 6       | 0   | 0%   |
| 4월  | 2       | 0   | 0%   |
| 5월  | 4       | 2   | 50%  |
| 6월  | 3       | 0   | 0%   |
| 8월  | 4       | 0   | 0%   |
| 10월 | 1       | 1   | 100% |
| 합계  | 20      | 3   | 15%  |

┃ 제품 불합격 사례(한국산)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5월  | 1902303000 | **멸치맛 쌀국수 | 관련 서류 미제출         | 천진  |
|     | 1902303000 | **해물맛 쌀국수 | 관련 서류 미제출         | 천진  |
| 10월 | 1902303000 | **치즈맛 라면  | 식품첨가제 비타민B2 초과 사용 | 산둥성 |

┃ 제품 불합격 유형(한국산) ┃

| 유형             | 건수 |
|----------------|----|
| 구비서류 미제출       | 2  |
| 식품첨가제 과다/초과 사용 | 1  |

■ 불합격 사례 분석

-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과다/초과 사용

- 10월 불합격된 라면은 식품첨가제 비타민B2(리보플라빈) 초과 사용으로 불합격 되었으며,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GB2760-2014에 따르면 라면에 첨가 가능 제한량은 0.05g/kg이므로 과량 첨가로 추정

- 돼지고기/쇠고기 성분

- 라면 스프에 국물의 맛을 내기 위한 쇠고기/돼지고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은 축산물 관련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 등 전염병 상시 발생국가로 돼지고기/쇠고기/가금육(삼계탕 제외)이 일반식품에 소량이라도 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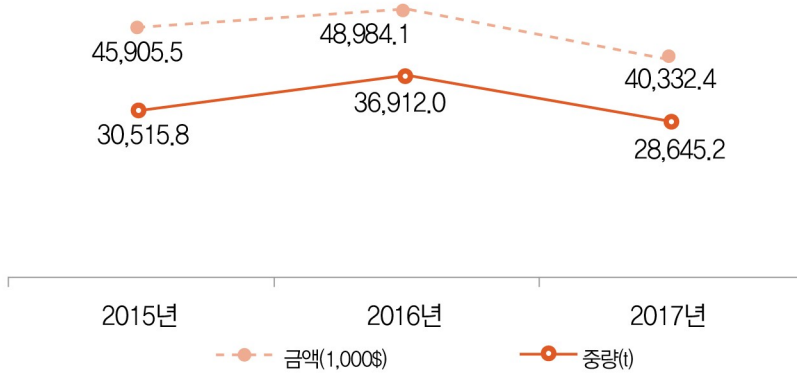
- 미생물 초과검출

- 라면 스프는 고춧가루나 마늘과 같은 향신료가 다수 첨가되어 있어 본연의 미생물 수치가 높을 수 있고, 유관 국가표준에 따라 미생물 검역 표준에 면과 스프를 혼합하여 검역하는 경우 균락총수와 대장균군 검출량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생산시 위생 관리에 주의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사용가능 여부 사전 심의                          |
| 2. 원료        | 스프에 “돼지고기/쇠고기” 성분이 있을 경우 수입 불가                      |
| 3. 중문라벨      | 라면과 스프의 중량별도 기재, 경화유지가 사용되었을 경우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산 표기 필수 |
| 4. 통관서류/검역항목 | 스프의 대장균군, 균락총수 초과검출 유의                              |
| 5. HS CODE   | -                                                   |

## 다. 음료

### 음료 159 수출실적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2201.1010 광천수
- 2201.1020 탄산수
- 2201.9010 천연수
- 2201.9090 기타

관세율 보기표 1

|              |                        |                        |
|--------------|------------------------|------------------------|
| 1. 천연수, 기타   | HS CODE                | 2201.9010<br>2201.909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0/5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0(1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9.00                   |
| 2년차          | 2016년                  | 8.00                   |
| 3년차          | 2017년                  | 7.00                   |
| 4년차          | 2018년                  | 6.00                   |
| 5년차          | 2019년                  | 5.00                   |
| 6년차          | 2020년                  | 4.00                   |
| 7년차          | 2021년                  | 3.00                   |
| 8년차          | 2022년                  | 2.00                   |
| 9년차          | 2023년                  | 1.00                   |
| 10년차         | 2024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2. 광천수       | HS CODE                | 2201.101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5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9,00        |
| 2년차          | 2016년                  | 18,00        |
| 3년차          | 2017년                  | 17,00        |
| 4년차          | 2018년                  | 16,00        |
| 5년차          | 2019년                  | 15,00        |
| 6년차          | 2020년                  | 14,00        |
| 7년차          | 2021년                  | 13,00        |
| 8년차          | 2022년                  | 12,00        |
| 9년차          | 2023년                  | 11,00        |
| 10년차         | 2024년                  | 10,00        |
| 11년차         | 2025년                  | 9,00         |
| 12년차         | 2026년                  | 8,00         |
| 13년차         | 2027년                  | 7,00         |
| 14년차         | 2028년                  | 6,00         |
| 15년차         | 2029년                  | 5,00         |
| 16년차         | 2030년                  | 4,00         |
| 17년차         | 2031년                  | 3,00         |
| 18년차         | 2032년                  | 2,00         |
| 19년차         | 2033년                  | 1,00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관세율 보기표 3 ■

|                            |                        |              |
|----------------------------|------------------------|--------------|
| 3. 탄산수<br>(향/감미료 첨가된 것 제외) | HS CODE                | 2201.102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5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5(15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33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8.67        |
| 2년차                        | 2016년                  | 17.33        |
| 3년차                        | 2017년                  | 16.00        |
| 4년차                        | 2018년                  | 14.67        |
| 5년차                        | 2019년                  | 13.33        |
| 6년차                        | 2020년                  | 12.00        |
| 7년차                        | 2021년                  | 10.67        |
| 8년차                        | 2022년                  | 9.33         |
| 9년차                        | 2023년                  | 8.00         |
| 10년차                       | 2024년                  | 6.67         |
| 11년차                       | 2025년                  | 5.33         |
| 12년차                       | 2026년                  | 4.00         |
| 13년차                       | 2027년                  | 2.67         |
| 14년차                       | 2028년                  | 1.33         |
| 15년차                       | 2029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검역 요구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9298-2014 포장된 음용수(包装饮用水)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직접 음용하는 포장된 음용수에 적용함

본 표준은 음용하는 천연광천수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용어 및 정의

2.1 포장음용수(包装饮用水)

식품안전표준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밀봉된 포장용기에 담긴 직접 음용이 가능한 음용수

2.1.1 음용순정수(饮用纯净水)

3.1의 원료 기준에 맞는 물을 생산용 원수(源水)로 하여 증류, 전기투석법, 이온교환법, 반삼투법 혹은 기타 적합한 정화 공법을 사용하여 가공된 포장 음용수

2.1.2 기타음용수(其他饮用水)

2.1.2.1. 3.1.2, 3.1.3의 원료 기준에 맞는 물을 생산용 원수로 하여, 탈기, 에어레이션, 상층액 분리, 여과, 오존처리 혹은 자외선 소독살균의 과정 등 제한된 수처리 방법을 거친 물의 기본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은 자연에서 유래한 음용수

2.1.2.2 3.1의 원료 기준에 맞는 물을 생산용 원수로 하여, 가공처리 후 식품첨가제를 첨가(당, 감미제, 향료, 기타 식품품의 배합원료는 첨가 불가)하여 제조된 포장음용수

3. 기술 요구

3.1 원료 요구

3.1.1 공공 공수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물을 생산용 원수로 사용할 경우 수질은 GB574의 규정을 따라야 함

3.1.2 비공공 공수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물 혹은 지하수를 생산용 원수로 사용할

경우 수질은 GB5749의 생활음용수 수원 위생 요구에 부합해야 함. 원수는 처리과정을 거친 후 식품가공용수의 수질은 GB5749의 규정을 따라야 함

3.1.3 수원위생보호: 수원의 화학, 미생물과 물리적인 품질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오염과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쉽게 오염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 3.2 감관지표

〈표 1〉에 부합해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 검사방법     |
|-----------|--------------------------|----------------------------------------------|----------|
|           | 음용순정수                    | 기타음용수                                        |          |
| 색도/도 ≤    | 5                        | 10                                           | GB/T5750 |
| 혼탁도/NTU ≤ | 1                        | 1                                            |          |
| 상태        | 정상시력으로 보이는 유입 이물질이 없어야 함 | 극소량의 광물질 침전물은 허용, 단 정상시력으로 보이는 유입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맛, 냄새     | 특이한 맛, 냄새가 없어야 함         |                                              |          |

### 3.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 | 지표 (mg/L) | 검사방법     |
|----------------------------------------|---|-----------|----------|
| free chlorine                          |   | 0.05      | GB/T5750 |
| carbon tetrachloride                   |   | 0.002     |          |
| chloroform                             |   | 0.02      |          |
| oxygen demand                          |   | 2.0       |          |
| bromate                                |   | 0.01      |          |
| volatile phenol <sup>a</sup>           |   | 0.002     |          |
| cyanide <sup>b</sup>                   |   | 0.05      |          |
| LAS <sup>c</sup>                       |   | 0.3       |          |
| Total alpha radioactivity <sup>c</sup> |   | 0.5       |          |
| Total beta radioactivity <sup>c</sup>  |   | 1         |          |

<sup>a</sup> 증류법으로 가공된 음용정제수, 기타 음용수에 적용

<sup>b</sup> 증류법으로 가공된 음용정제수에 적용

<sup>c</sup> 지표수 혹은 지하수를 원수로 하여 가공한 포장 음용수에 적용

### 3.4 오염물질 제한량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제한량 (mg/L)                           |
|----------|--------------------------------------|
| 납        | 0.01                                 |
| 카드뮴(Cd)  | 0.005<br>(광천수 0.003)                 |
| 수은       | 0.001                                |
| 비소       | 0.01                                 |
| 아질산염/질산염 | 아질산염 0.005<br>(광천수: 아질산염 0.1/질산염 45) |

### 3.5 미생물 제한량

미생물 제한량은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3> 미생물 제한량

| 검사 항목           | n | c | m |
|-----------------|---|---|---|
| 대장균군/(CFU/mL)   | 5 | 0 | 0 |
| 녹농균/(CFU/250mL) | 5 | 0 | 0 |

### 3.6 식품첨가제

식품첨가제는 GB2760에 부합해야 함

## 4. 기타

- 4.1 포장음용수에 식품첨가제를 첨가할 경우, 제품 명칭의 가까이에 “첨가된 식품첨가제는 맛을 조절하기 위해 첨가하였음”과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함
- 4.2 포장음용수의 명칭은 허위를 기재하거나 과장되어서는 안되며, 과학적이어야 하고, 물 외의 성분으로 포장음용수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음

▶ 국가표준 GB8537-2008 음용천연광천수(饮用天然矿泉水)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음용천연광천수의 제품분류, 요구, 검역방법, 검역규칙 및 표시, 포장, 운수과정 및 보관 방법을 규정함

본 표준은 음용천연광천수의 생산, 검역 및 판매에 적용함

2. 인용 규정집

GB7718 예포장식품 라벨통칙

GB/T8538 음용천연광천수 검사방법

GB/T13727 천연광천수 수지질 탐사규범

GB16330 음용천연광천수 생산공장 위생규범

3. 용어 및 정의

3.1 음용천연광천수

지하 심층부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거나 우물을 파 채수한 것으로, 일정 광물질, 미량원소 혹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일정 구역에서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이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된 물, 통상적으로 기타 화학성분, 유량, 수온 등의 지표는 천연주기에 의한 파동의 범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4. 제품분류

제품의 이산화탄소의 함량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류됨

- a) 탄산을 함유한 광천수: 포장 후 정상 온도와 압력 하에 이산화탄소가 자연적으로 희석되어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천연광천수
- b) 탄산이 충전(充进)된 천연광천수: 5.3.2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이산화탄소를 충전하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천연광천수
- c) 무탄산 천연광천수: 5.3.2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포장 후 유리(遊離)된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물의 탄산수소염에 용해되는 것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함량을 초과하지 않는 천연광천수

d) 탄산을 제거한 천연광천수: 5.3.2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포장 후 정상 온도와 압력 하에 이산화탄소가 자연적으로 희석되어 기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없는 천연광천수

## 5. 요구

### 5.1 수원 요구

수원지의 탐사평가, 수원보호, 수원지의 감측은 GB/T 13727에 따라 집행함

### 5.2 수질 요구

#### 5.2.1 감관지표

〈표 1〉에 부합해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
| 색도/도 ≤    | 15(기타 이색현상이 없어야 함)                     |
| 혼탁도/NTU ≤ | 5                                      |
| 냄새와 맛     | 광천수의 특성을 보유한 맛이여야 하며, 특이한 맛, 냄새가 없어야 함 |
| 이물질       | 극소량의 천연광물염의 침전물은 허용되나, 기타 이물질 함유 불가    |

#### 5.2.2 이화 요구

##### 5.2.2.1 경계지표

1항 이상의 지표가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경계지표

| 항목        | 요구(mg/L)                                                |
|-----------|---------------------------------------------------------|
| 리튬 ≥      | 0.20                                                    |
| 스트론튬 ≥    | 0.20(함량이 0.20mg/L~0.40mg/L일 경우, 수원의 물은 반드시 25℃ 이상이어야 함) |
| 아연 ≥      | 0.20                                                    |
| 요오드화물 ≥   | 0.20                                                    |
| 메타규산 ≥    | 25.0(함량이 25mg/L~30mg/L일 경우, 수원의 물은 반드시 25℃ 이상이어야 함)     |
| 셀레늄 ≥     | 0.01                                                    |
| 유리아산화탄소 ≥ | 250                                                     |
| 용해성총고체 ≥  | 1000                                                    |

## 5.2.2.2 제한량 지표

&lt;표 3&gt; 제한량 지표

| 항목              |   | 요구(mg/L) |
|-----------------|---|----------|
| 셀레늄             | < | 0.05     |
| 안티몬             | < | 0.005    |
| 비소              | < | 0.01     |
| 구리              | < | 1.0      |
| 바륨              | < | 0.7      |
| 카드뮴             | < | 0.003    |
| 크롬              | < | 0.05     |
| 납               | < | 0.01     |
| 수은              | < | 0.001    |
| 망간              | < | 0.4      |
| 니켈              | < | 0.02     |
| 은               | < | 0.05     |
| 브롬산염            | < | 0.01     |
| 붕산염             | < | 5        |
| 질산염             | < | 45       |
| 불소화합물           | < | 1.5      |
| 산소소모량           | < | 3.0      |
| 226라듐방사성/(Bq/L) | < | 1.1      |

## 5.2.2.3 오염물질 지표

&lt;표 4&gt; 오염물질 제한량

| 항목    |   | 요구(mg/L) |
|-------|---|----------|
| 휘발성페놀 | < | 0.002    |
| 시아나화물 | < | 0.010    |
| LAS   | < | 0.3      |
| 광물유   | < | 0.05     |
| 아질산염  | < | 0.1      |
| 총방사성  | < | 1.50     |

### 5.2.3 미생물 요구

〈표 5〉와 〈표 6〉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5〉 미생물지표

| 항목                  | 요구 |
|---------------------|----|
| 대장균군/(MPN/100mL)    | 0  |
| 스트렙토코커스/(CFU/250mL) | 0  |
| 녹농균/(CFU/250mL)     | 0  |
| 가스괴저균/(CFU/50mL)    | 0  |

비고1. 샘플을 1×250mL(가스괴저균 50mL) 취하여 1차 실험 후 〈표 5〉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합격

비고2. 검사결과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경우 〈표 6〉의 n개의 샘플을 채취하여 2차 실험 진행

비고3. 검사 결과가 2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불합격

〈표 6〉 2차 실험

| 항목                      | 샘플 수 |   | 제한량 |   |
|-------------------------|------|---|-----|---|
|                         | n    | c | m   | M |
| 대장균군/(MPN/100mL)        | 4    | 1 | 0   | 2 |
| 스트렙토코커스/<br>(CFU/250mL) | 4    | 1 | 0   | 2 |
| 녹농균/(CFU/250mL)         | 4    | 1 | 0   | 2 |
| 가스괴저균/(CFU/50mL)        | 4    | 1 | 0   | 2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 5.3 가공공정 요구

5.3.1 천연광천수의 수원 위생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GB16330의 규정에 따라 채수, 가공, 충전이 되어야 함

5.3.2 천연광천수 수원의 물에 대한 기본 특징과 주요 성분함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에어레이션, 상층액 분리, 여과 등의 방법으로 불안정 성분을 제거할 수 있음.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을 회수, 충전할 수



있으며, 식품첨가제 이산화탄소를 첨가할 수 있고, 혹은 물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음

5.3.3 용기를 사용하여 원수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여 포장(충진)할 수 없음

## 6. 검역방법

수질 요구는 GB/T8538의 규정에 따라 실험을 진행  
천연광천수의 수질검역보고는 부록A에 의거 기입 가능

## 7. 검역방법

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본 가이드북 기재 생략

## 8. 표기, 포장, 운송 및 보관

### 8.1 표기

- 8.1.1 예포장식품라벨은 GB7718관련 규정 외, 아래 내용에 부합해야 함
- 천연광천수의 수원과 명칭 기재
  - 제품의 경계지표, 용해성 총고제 함량 및 주요양이온(K<sup>+</sup>, Na<sup>+</sup>, Ca<sup>2+</sup>, Mg<sup>2+</sup>)의 함량 범위 기재
  - 불소의 함량이 1.0mg/L 이상일 경우, “불소 함유” 문구 기재
  - 제품 유형은 제품 명칭 앞에 직접 유형에 대한 정의 형식으로 예를 들어, “탄산함유천연광천수”와 같이 기재가 가능하며, 혹은 제품 명칭을 “천연광천수”로 기재하고, 하단의 제품유형을 별도 기재 가능(탄산함유형/탄산충진형). 무탄산/탄산제거형 천연광천수는 제품유형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8.1.2 국가 관련 기관의 심의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라벨에 의료효과와 관련된 문구기재 불가

### 8.2 포장

8.2.1 포장 재질은 국가유관위생표준 요구에 부합해야 함

8.2.2 포장용기(병, 통) 외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밀봉상태에 이상이 없어 누출되는 현상이 없어야 하고, 라벨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 8.3 운송

8.3.1 운송 수단은 청결과 위생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제품은 독성이 있거나 유해하거나, 부식이나 휘발성이 높거나, 냄새가 나는 물품과 혼적 및 혼적 운송을 할 수 없음

8.3.2 제품을 옮길 때에는 던지거나 충격, 찌그러짐에 주의해야 함

8.3.3 운송 과정 중 강한 햇볕에 쏘이거나 비에 젖거나 동결에 주의해야 함

### 8.4 보관

8.4.1 제품은 독성이 있거나 유해하거나, 또는 부식이나 휘발성이 높거나 냄새가 나는 물품과 동일한 창고에 보관할 수 없음

8.4.2 제품보관은 햇볕이 들지 않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실외에 야적하거나 햇볕에 쏘이거나 비에 젖거나 열이 발생하는 지점에 두어서는 안 됨

8.4.3 0℃ 이하에서 운송해야 할 경우 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 2018년 1~10월 질검중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2월  | 5       | 0   | 0% |
| 3월  | 4       | 0   | 0% |
| 4월  | 1       | 0   | 0% |
| 8월  | 6       | 0   | 0% |
| 9월  | 1       | 0   | 0% |
| 10월 | 1       | 0   | 0% |
| 합계  | 18      | 0   | 0% |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 국가 일부 발체)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2월  | 2201101000 | **뉴질랜드산 천연광천수 5종 | 브롬산염 함량 불합격    | 광둥성 |
| 3월  | 2201101000 | **프랑스산 천연광천수     | 라벨 불합격         | 상해  |
|     | 2201901100 | **이탈리아산 천연음용수 3종 | 라벨 불합격/유통기한 초과 | 절강성 |
| 4월  | 2201901100 | **프랑스산 음용 천연광천수  | 유통기한 초과        | 절강성 |
| 8월  | 2201101000 | **프랑스산 음용수 2종    | 유통기한 초과        | 상해  |
|     | 2201101000 | **체코산 음용수 4종     | 불화물 함량 불합격     | 사천성 |
| 9월  | 2201909000 | **싱가포르산 음용수      | 아질산염 함량 불합격    | 상해  |
| 10월 | 2201101000 | **뉴질랜드산 광천수      | 비소 초과검출        | 상해  |

## ■ 불합격 사례 분석

### - 검역지표 불합격

- 2월 수입된 뉴질랜드산 광천수, 8월 수입된 체코산 음용수, 9월 수입된 싱가포르산 음용수는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검역지표 불합격으로 중국의 음용수와 광천수 국가표준 검역지표에 맞춰 수출 전 사전 실험실 검사를 통해 자가점검 필요

- 2017년 6월 미국에서 수입된 음용수의 경우, 최근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펄빅산 함유 음용수”로 인공적인 색소를 첨가하지 않았음에도 펄빅산의 작용으로 인해 물의 색이 검정색을 띠고 있어 음용수의 감관 요구 중 투명도와 같은 항목에서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판단됨

#### 미국 펄빅산 함유 음용수



- 새로 개발된 제품, 특히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제품일 경우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제품의 정의, 검역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 전 제품에 대한 상세한 심의를 진행하여, 수입시 검역 불합격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항목      | 핵심 유의사항                                            |
|---------|----------------------------------------------------|
| 1. 성분   | 당, 감미제, 향, 기타 식품원료 첨가 불가(일부 첨가제는 기준에 의거 사전 심의해야 함) |
| 2. 중문라벨 | 광천수에 함유된 특정 원소 중문라벨에 표기                            |
| 3. 통관서류 | 지역 CIQ별 별도 수원지의 수질검사보고서 등 요청 가능성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 4. 검역항목 | 검역항목이 많고, 기준이 엄격하므로 수출 전 자가 실험 및 기준 부합 여부 판단 필요    |

## (2) 음료 베이스 및 기타 무알코올 음료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2106.9010 탄산음료 베이스
- 2106.9090 기타(기타, 고형음료)

### ■ 중국산 음료 베이스 제품 예시 ■



- 2202.100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 2202.9000 기타 무알코올 음료

관세율 보기표 1

|              |                        |              |
|--------------|------------------------|--------------|
| 1. 탄산음료 베이스  | HS CODE                | 2106.901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35/35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75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33.25        |
| 2년차          | 2016년                  | 31.50        |
| 3년차          | 2017년                  | 29.75        |
| 4년차          | 2018년                  | 28.00        |
| 5년차          | 2019년                  | 26.25        |
| 6년차          | 2020년                  | 24.50        |
| 7년차          | 2021년                  | 22.75        |
| 8년차          | 2022년                  | 21.00        |
| 9년차          | 2023년                  | 19.25        |
| 10년차         | 2024년                  | 17.50        |
| 11년차         | 2025년                  | 15.75        |
| 12년차         | 2026년                  | 14.00        |
| 13년차         | 2027년                  | 12.25        |
| 14년차         | 2028년                  | 10.50        |
| 15년차         | 2029년                  | 8.75         |
| 16년차         | 2030년                  | 7.00         |
| 17년차         | 2031년                  | 5.25         |
| 18년차         | 2032년                  | 3.50         |
| 19년차         | 2033년                  | 1.75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2. 기타 음료 베이스,<br>고형음료 | HS CODE                | 2106.909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12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PR-8      |
|                       | 균등철폐세율(%)              | 0.32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9.68     |
| 2년차                   | 2016년                  | 19.36     |
| 3년차                   | 2017년                  | 19.04     |
| 4년차                   | 2018년                  | 18.72     |
| 5년차                   | 2019년                  | 18.40     |
| 아태무역협정(APTA)          |                        | 18.4      |

■ 관세율 보기표 3 ■

|                            |                        |              |
|----------------------------|------------------------|--------------|
| 3. 설탕이나 그 밖의<br>감미료를 첨가한 물 | HS CODE                | 2202.1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5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0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9.00        |
| 2년차                        | 2016년                  | 18.00        |
| 3년차                        | 2017년                  | 17.00        |
| 4년차                        | 2018년                  | 16.00        |
| 5년차                        | 2019년                  | 15.00        |
| 6년차                        | 2020년                  | 14.00        |
| 7년차                        | 2021년                  | 13.00        |
| 8년차                        | 2022년                  | 12.00        |
| 9년차                        | 2023년                  | 11.00        |
| 10년차                       | 2024년                  | 10.00        |
| 11년차                       | 2025년                  | 9.00         |
| 12년차                       | 2026년                  | 8.00         |
| 13년차                       | 2027년                  | 7.00         |
| 14년차                       | 2028년                  | 6.00         |
| 15년차                       | 2029년                  | 5.00         |
| 16년차                       | 2030년                  | 4.00         |
| 17년차                       | 2031년                  | 3.00         |
| 18년차                       | 2032년                  | 2.00         |
| 19년차                       | 2033년                  | 1.00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관세율 보기표 4

|               |                        |              |
|---------------|------------------------|--------------|
| 4. 기타 무알코올 음료 | HS CODE                | 2202.99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35/5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75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33.25        |
| 2년차           | 2016년                  | 31.50        |
| 3년차           | 2017년                  | 29.75        |
| 4년차           | 2018년                  | 28.00        |
| 5년차           | 2019년                  | 26.25        |
| 6년차           | 2020년                  | 24.50        |
| 7년차           | 2021년                  | 22.75        |
| 8년차           | 2022년                  | 21.00        |
| 9년차           | 2023년                  | 19.25        |
| 10년차          | 2024년                  | 17.50        |
| 11년차          | 2025년                  | 15.75        |
| 12년차          | 2026년                  | 14.00        |
| 13년차          | 2027년                  | 12.25        |
| 14년차          | 2028년                  | 10.50        |
| 15년차          | 2029년                  | 8.75         |
| 16년차          | 2030년                  | 7.00         |
| 17년차          | 2031년                  | 5.25         |
| 18년차          | 2032년                  | 3.50         |
| 19년차          | 2033년                  | 1.75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29.5         |

■ 검역 요구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7101-2015 饮料(음료)

※ 해당 국가표준은 음료 베이스, 과채주스, 고형음료, 일반 음료에 통합 적용됨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음료에 적용함

본 표준은 포장음용수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용어 및 정의

2.1 음료

직접 음용할 수 있거나 물에 타서 마시는 알코올 함량이 질량분수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정량 포장한 제품

3. 기술 요구

3.1 원료 요구

원료는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3.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 방법                                                                                                                                                                                                                                                          |
|-------|-------------------------------------|----------------------------------------------------------------------------------------------------------------------------------------------------------------------------------------------------------------------------------------------------------------|
| 색     | 제품 고유의 색과 광택                        | 액체음료: 일정량을 고르게 혼합하여 50mL의 투명한 비커에 담아 자연광 아래에서 색을 관찰하고 냄새를 감별한다. 온수로 입을 헹군 후 맛을 보고 이물질이 없는지 살펴본다. 농축음료는 라벨에 표기된 방법으로 물에 풀어 희석 후 검사를 진행한다.<br>고체음료: 샘플5g을 깨끗한 흰색 접시에 담아 자연광 아래에서 색과 외관형태를 관찰한다. 라벨에 기재된 방법으로 투명 컵에서 희석하여 바로 냄새를 맡아 보고 맛을 본다. 2분 후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
| 맛, 이취 | 이취가 없어야 함                           |                                                                                                                                                                                                                                                                |
| 상태    |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액체 상태가 균일해야 함 |                                                                                                                                                                                                                                                                |

### 3.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 지표(mg/L) |
|---------------------------|---|----------|
| 아연, 구리, 철 총합 <sup>a</sup> | ≤ | 20       |
| 사이안화물 <sup>b</sup>        | ≤ | 0.05     |
| 우레아제 실험 <sup>c</sup>      | ≤ | 음성       |

비고: 고체음료, 농축음료는 라벨에 기재된 희석 비율대로 희석하여 진행

<sup>a</sup> 금속캔 형태로 포장된 과채즙음료에 적용

<sup>b</sup> 살구씨(행인(杏仁))을 원료로 한 음료에 적용

<sup>c</sup> 대두를 원료로 한 음료에 적용

### 3.4 오염물질 제한량/진균독소 제한량

3.4.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
| 납                     |           |
| 과채즙류 및 과채즙음료, 함유음료(乳) | 0.05 mg/L |
| 농축과채즙(베이스)            | 0.5 mg/L  |
| 고체음료                  | 1.0       |
| 기타 음료류(포장음용수 제외)      | 0.3 mg/L  |
| 찾잎                    | 5.0ml/L   |
| 주석 <sup>a</sup> (Sn)  | 150mg/kg  |

<sup>a</sup>주석이 내포장지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 한함

3.4.2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μg/kg) |
|--------------|------------------|
| 페니실린         |                  |
| 과채즙류 및 과채즙음료 | 50               |
| 오크라톡신A       |                  |
| 로스팅커피        | 5.0              |
| 인스턴트커피       | 10.0             |

<sup>a</sup>주석이 내포장지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 한함

### 3.5 농약 잔류량

농약 잔류량은 GB 2763의 규정에 따름

### 3.6 미생물 제한량

3.6.1 병원균 제한량은 GB29921의 규정에 따름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mL)) |   |     |      |
|---------|------------------------------|---|-----|------|
| 항목      | n                            | c | m   | M    |
| 살모넬라균   | 5                            | 0 | 0   | -    |
| 황색포도상구균 | 5                            | 1 | 100 | 1000 |

포장음용수, 탄산음료에는 적용하지 않음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3.6.2 상업무균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상업무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3.6.3 비상업무균으로 생산된 제품은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 ※ [참고] 상업무균/비(非)상업무균

1. 상업적 무균상태: 적정 온도에서 살균처리 후 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상태이면서, 보통의 온도(비냉장저장 및 유통 조건)에서 발육이나 번식할 수 있는 비병원성 미생물(공중위생상 무해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킨 상태로 일반적으로 상업적 무균상태를 유지하는 제품으로는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 병조림, 멸균우유 등이며, 특징으로는 상업적 무균상태에서는 부패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게 설정되는 것이 특징임
2. 비상업적무균: 상업적 무균상태와 반대되는 용어로, 살균처리를 했음에도 어떠한 균이라도 발육이나 번식이 가능한 상태

&lt;표 3&gt; 미생물 제한량 기준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CFU/g(mL)) |   |          |            |
|-------------------|-----------------------------|---|----------|------------|
| 항목                | n                           | c | m        | M          |
| 균락총수 <sup>b</sup> | 5                           | 2 | 102(103) | 104(5X104) |
| 대장균군              | 5                           | 2 | 1(10)    | 10(102)    |
| 곰팡이균 ≤            | 20(50)                      |   |          |            |
| 효모 <sup>c</sup>   | 20                          |   |          |            |

\*\*갈호 안의 수치는 고체음료에 적용함 밀크티, 두유분말, 코코아고체음료의 균락총수의 m=104로 적용함

<sup>b</sup> 활성유산균을 함유한 유산균음료에는 적용하지 않음

<sup>c</sup> 고체음료에는 적용하지 않음

### 3.7 식품첨가제와 식품영양강화제

#### 3.7.1 식품첨가제는 GB2760에 부합해야 함

#### 3.7.2 식품영양강화제는 GB14880에 부합해야 함

## 4. 기타

4.1 유산균 음료 제품의 라벨에는 반드시 활성균(비살균)형 혹은 비활성균(살균)형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며, 활성균(비살균)형 제품의 유산균 수는 반드시 106 CFU/g(mL)이어야 함

4.2 활성(비살균)형 유산균을 함유한 제품과 냉장보관 및 운송을 해야 하는 음료는 라벨에 보관과 운송에 관한 조건을 기재해야 함

■ 2018년 1~10월 질검총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1월  | 17      | 2   | 11.7% |
| 2월  | 3       | 1   | 33.3% |
| 3월  | 14      | 0   | 0%    |
| 4월  | 24      | 0   | 0%    |
| 5월  | 8       | 0   | 0%    |
| 6월  | 12      | 0   | 0%    |
| 7월  | 34      | 0   | 0%    |
| 8월  | 9       | 0   | 0%    |
| 9월  | 23      | 0   | 0%    |
| 10월 | 4       | 0   | 0%    |
| 합계  | 148     | 3   | 2%    |

┃ 제품 불합격 사례(한국산)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1월 | 2202100090 | **아로니아음료 | 관련 증서 미제출           | 상해  |
|    | 2202990099 | 과일음료     | 관련 증서 미제출           | 상해  |
| 2월 | 2202100090 | **탄산음료   | 영양강화제 비타민B2 초과범위 사용 | 요녕성 |

┃ 제품 불합격 유형(한국산) ┃

| 유형         | 건수 |
|------------|----|
| 관련 증서 미제출  | 2  |
| 영양강화제 초과사용 | 1  |

## ■ 불합격 사례 분석

### - 관련 증서 미제출

- 1월 수입된 아로니아 음료의 경우 “아로니아”는 중국에서 2018년 9월 신식품원료로 승인되어 수입 당시에는 첨가 불가능한 원료로 아로니아를 일반식품에 첨가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추정

### - 식품첨가제 초과사용

- 2월 불합격된 탄산음료는 영양강화제 비타민B2를 초과 사용해 불합격되었으며 비타민B2는 국가표준 영양강화제 GB 14880-2012에 따라 탄산음료에 첨가 불가함. 수출 전 수출적합성 사전 심의 단계에서 식품첨가제의 첨가량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생산시 실제 기준량을 준수하여 생산해야 함

### - 라벨 불합격

- 음료는 성분의 함량비에 따라 제품명이나 제품유형 기재 방식이 다름(과즙함량, 설탕함량, 물의 함량에 따른 분류)
- 또한 과즙함량이나 고형물의 함량 등 제품 유형별로 요구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수출 전 라벨이 정확하게 작성된 것인지 확인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사용 가능여부 사전 심의        |
| 2. 중문라벨      | 음료의 유형을 성분과 제조공법에 따라 확정하여 정확하게 기재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유기농 표기시 관련 증서 제출 필수(중국 유기농인증)     |
| 4. HS CODE   | -                                 |

■ 2018년 1~10월 질검총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1월  | 2       | 0   | 0%    |
| 2월  | 1       | 0   | 0%    |
| 3월  | 3       | 0   | 0%    |
| 4월  | 2       | 0   | 0%    |
| 5월  | 1       | 0   | 0%    |
| 6월  | 6       | 1   | 16.7% |
| 7월  | 4       | 0   | 0%    |
| 8월  | 2       | 0   | 0%    |
| 9월  | 4       | 0   | 0%    |
| 10월 | 1       | 0   | 0%    |
| 합계  | 26      | 1   | 3.8%  |

■ 제품 불합격 사례(한국산, 외국산)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1월 | 2106909090 | **미국산 시럽 10종       | 라벨 불합격                             | 상해  |
|    | 2106909090 | **대만산 유산균고형음료      | 균락총수 초과                            | 상해  |
| 2월 | 2106909090 | **대만산 식물성크림 (고형음료) | 폴리옥시에틸렌 사용 위반                      | 하문  |
| 3월 | 2106909090 | **일본산 콜라겐고형음료 2종   | 관련 증서 미제출                          | 광둥성 |
|    | 2106909090 | **대만산 마법 콩(음료) 3종  | 식품첨가제 젖산칼슘 초과범위 사용                 | 하문  |
|    | 2106909090 | 캐나다산 아미노산고형음료      | 식품첨가제 강화색소, 아세틸팔미탈람, 수크랄로스 초과범위 사용 | 강소성 |
| 4월 | 2016909090 | **대만산 유산균고형음료      | 라벨 불합격                             | 하문  |
|    | 2106909090 | **호주산 고형음료         | 균락총수/곰팡이균 초과검출                     | 하문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5월  | 2106909090 | **미국산 복합단백질분말<br>(고형음료)        | 균락총수 초과                 | 영파  |
| 6월  | 2106909090 | **대만산 유산균고형음료                  | 곰팡이균 초과                 | 하문  |
|     | 2106909090 | **독일산 과라나 파우더<br>(고형음료)        | 산식품원료 관련 서류 미제출         | 천진  |
|     | 2106909090 | **독일산 카무과 파우더<br>(고형음료)        | 산식품원료 관련 서류 미제출         | 천진  |
|     | 2106909090 | **독일산 로즈힙 파우더<br>(고형음료)        | 산식품원료 관련 서류 미제출         | 천진  |
|     | 2106909090 | **대만산 흑당생강차<br>(고형음료)          | 보건식품 증서 미제출             | 하문  |
|     | 2106909090 | **한국산 고려인삼차<br>(고형음료)          | 균락총수 초과검출               | 산둥성 |
|     | 2106909090 | **독일산 발포정(오렌지맛)                | 식품첨가제 사카린나트륨<br>초과범위 사용 | 광둥성 |
| 7월  | 2106909090 | **대만산 복합프로틴<br>고형음료            | 영양강화제 비타민D 초과범위 사용      | 하문  |
|     | 2106909090 | **미국산 프로틴 셰이크<br>고형음료 14종      | 균락총수 초과검출               | 천진  |
|     | 2106909090 | **대만산 견과음료(고형음료)<br>8종         | 라벨 불합격                  | 하문  |
|     | 2106909090 | 일본산 벚꽃 파우더(고형음료)               | 관련 서류 미제출               | 북경  |
| 8월  | 2106909090 | **대만산 우방근고형음료                  | 보건식품 증서 미제출             | 하문  |
| 9월  | 2106909090 | **말레이시아산 유산균<br>식이섬유 파우더(고형음료) | 라벨 불합격                  | 심천  |
|     | 2106909090 | **영국산 커피콩미음료                   | 식품첨가제 카페인 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 2106909090 | **말레이시아산 유산균<br>식이섬유 파우더(고형음료) | 곰팡이균/대장균군 초과검출          | 하문  |
|     | 2106909090 | **대만산 동과(고형음료)                 | 곰팡이균 초과검출               | 하문  |
| 10월 | 2106909090 | **대만산 귀리복합파우더<br>(고체음료)        | 곰팡이균 초과검출               | 상해  |

### 기타 음료 베이스/고형음료 불합격 유형

| 유형             | 건수 |
|----------------|----|
| 라벨 불합격         | 4  |
| 관련 증서 미제출      | 7  |
| 식품첨가제 과다/초과 사용 | 6  |
| 미생물 초과검출       | 9  |

#### ■ 불합격 사례 분석

##### - 관련 증서 미제출

- 6월, 8월 불합격된 대만산 제품의 경우 보건식품 증서 미제출로 불합격되었으며 제품의 포장지에 “보건식품”의 기능을 홍보하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외국어 포함) 일반식품으로 수입을 불허하고 있어 유의해야 함
- 6월 불합격된 독일산 고형음료 3종은 신식품원료로 승인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여 불합격되었으며 최근 한국에서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로즈힙, 레몬밤 등 특정 식물종은 중국에서 일반식품 원료로 승인 전이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함

##### - 식품첨가제 초과사용

- 색소의 초과 사용에 유의해야 하며, 비타민A, B1, B2, B6, C, D, 엽산, 칼슘, 철, 아연, 비타민E 등 영양강화제가 사용되었을 경우 제한량 기준에 맞게 첨가해야 하며, 중문라벨의 영양성분표 상에도 해당 영양소의 최종제품 검출량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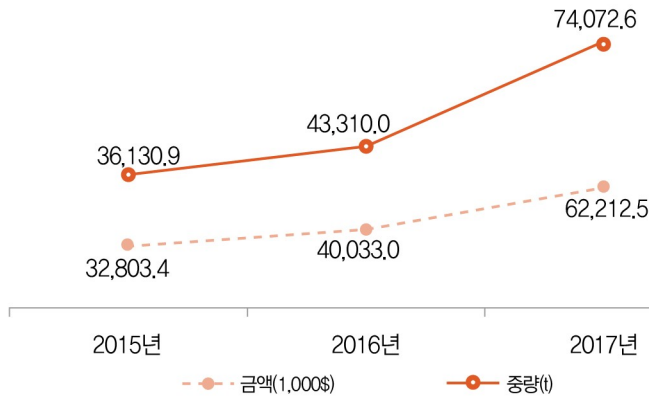
##### - 미생물 초과검출

- 음료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과일, 야채 등)의 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료화할 경우(액상, 분말) 최종제품 검역시 균락총수가 초과 검출되어 불합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사용 가능여부 사전 심의                                                                                                                                   |
| 2. 중문라벨      | 영양강화제 첨가에 따른 영양성분표 작성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보건의식품의 경우 보건의식품 등록허가 증서 제출 필수<br>고형음료 생산시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균락총수) 함                                                                                                |
| 4. HS CODE   | 고형음료, 음료 베이스의 경우 기타 미분류 코드인 2106로 분류되나, 음료 베이스의 특성보다 일반음료의 특성이 강한 액상제품은 2202 일반음료로 분류되므로 유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음료 베이스로 신고하여 통관될 경우 해관 사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 라. 주류

### 주류 157 수출실적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HS CODE 및 관세율

- 2203.0000 맥주
- 2208.9090 소주
- 2206.0090 막걸리/기타 과일 발효주

■ 관세율 보기표 1 ■

|              |                                                    |                           |
|--------------|----------------------------------------------------|---------------------------|
| 1. 맥주        | HS CODE                                            | 2203.0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0/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0                         |
|              | 균등철폐세율(%)                                          | 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현재       | 2017년도                                             | 0                         |
| 아태무역협정(APTA) |                                                    | 해당사항 없음                   |
| 소비세          | 1. 관세가산 후 0.3745불/리터 이상<br>2. 관세가산 후 0.3745불/리터 미만 | 0.253위안/리터<br>0.2227위안/리터 |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 2. 소주 | HS CODE                | 2208.909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1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0.5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9.50         |
| 2년차   | 2016년                  | 9.00         |

|              |                        |              |
|--------------|------------------------|--------------|
| 2. 소주        | HS CODE                | 2208.909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1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0.5          |
| 3년차          | 2017년                  | 8.50         |
| 4년차          | 2018년                  | 8.00         |
| 5년차          | 2019년                  | 7.50         |
| 6년차          | 2020년                  | 7.00         |
| 7년차          | 2021년                  | 6.50         |
| 8년차          | 2022년                  | 6.00         |
| 9년차          | 2023년                  | 5.50         |
| 10년차         | 2024년                  | 5.00         |
| 11년차         | 2025년                  | 4.50         |
| 12년차         | 2026년                  | 4.00         |
| 13년차         | 2027년                  | 3.50         |
| 14년차         | 2028년                  | 3.00         |
| 15년차         | 2029년                  | 2.50         |
| 16년차         | 2030년                  | 2.00         |
| 17년차         | 2031년                  | 1.50         |
| 18년차         | 2032년                  | 1.00         |
| 19년차         | 2033년                  | 0.50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8.8          |
| 소비세          |                        | 20%          |

■ 관세율 보기표 3 ■

|              |                        |              |
|--------------|------------------------|--------------|
| 3. 막걸리/기타발효주 | HS CODE                | 2206.009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40/4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2.0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38.00        |
| 2년차          | 2016년                  | 36.00        |
| 3년차          | 2017년                  | 34.00        |
| 4년차          | 2018년                  | 32.00        |
| 5년차          | 2019년                  | 30.00        |
| 6년차          | 2020년                  | 28.00        |
| 7년차          | 2021년                  | 26.00        |
| 8년차          | 2022년                  | 24.00        |
| 9년차          | 2023년                  | 22.00        |
| 10년차         | 2024년                  | 20.00        |
| 11년차         | 2025년                  | 18.00        |
| 12년차         | 2026년                  | 16.00        |
| 13년차         | 2027년                  | 14.00        |
| 14년차         | 2028년                  | 12.00        |
| 15년차         | 2029년                  | 10.00        |
| 16년차         | 2030년                  | 8.00         |
| 17년차         | 2031년                  | 6.00         |
| 18년차         | 2032년                  | 4.00         |
| 19년차         | 2033년                  | 2.00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소비세          |                        | 10%          |

■ 검역 요구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58-2012 发酵酒及配制酒(발효주 및 발효주의 조제주)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발효주 및 발효주의 조제주에 적용함

2. 용어 및 정의

2.1 발효주

양곡, 과일, 우유 등을 술의 기본 베이스 원료로 하여, 발효 혹은 부분 발효를 거쳐 제조된 음료주

2.2 발효주의 조제주

발효주를 주원료로 하여, 식용 가능한 부원료 혹은 식품첨가제를 첨가하여 조제, 혼합 혹은 가공을 거쳐 제조된 기존 주원료의 주류적 특성이 변화된 음료주

3. 기술 요구

3.1 원료 요구

원료는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3.2 감관지표

제품 표준에 상응하는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3.3 이화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이화지표

| 항목     |   | 지표(mg/L) | 검사방법        |
|--------|---|----------|-------------|
|        |   | 맥주       |             |
| 포름알데히드 | ≤ | 2.0      | GB/T5009.49 |

3.4 오염물질 제한량/진균독소 제한량

3.4.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mg/L) |
|----------------------|-----------------|
| 납                    |                 |
| 증류주, 향주 외(맥주, 막걸리 등) | 0.2             |
| 증류주, 향주(소주 등)        | 0.5             |

3.4.2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μg/kg) |
|--------|------------------|
| 파툴린    |                  |
| 주류     | 50               |
| 오크라톡신A |                  |
| 포도주    | 2.0              |

3.5 미생물 제한량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mL)) |   |         |
|---------|------------------------------|---|---------|
| 항목      | n                            | c | m       |
| 살모넬라균   | 5                            | 0 | 0/25 mL |
| 황색포도상구균 | 5                            | 0 | 0/25 mL |

3.6 식품첨가제와 식품영양강화제

식품첨가제는 GB2760에 부합해야 함

## 4. 라벨

4.1 발효주 및 발효주의 조제주 라벨은 알코올 농도, 원맥즙 농도, 원과즙함량, 과음경고문구, 보존기한의 표기 외 GB7718의 규정을 따라야 함

4.2 반드시 %vol를 단위로 알코올 농도를 표기해야 함

4.3 맥주는 원맥즙의 농도를 “原麦汁浓度”로 기재하고, “°P”를 단위로 기재해야 함. 과일주(포도주 제외)는 반드시 원과즙의 함량을 표기해야 하며, 성분표에 “\*\*%”로 표기해야 함



- 4.4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해야 하며, 기타 경고 문구를 함께 기재해도 무방함. 유리병에 포장된 맥주일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니 세게 내려치지 마시오”의 경고 문구를 기재해야 함
- 4.5 포도주와 기타 알코올의 농도가 10%vol 이상인 발효주 및 발효주의 조제주는 보존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됨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57-2012 蒸馏及配制酒(증류주 및 증류주의 조제주)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증류주 및 증류주의 조제주에 적용함

2. 용어 및 정의

2.1 증류주

양곡, 과일, 우유 등을 술의 기본 베이스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 블렌딩의 과정을 거쳐 제조된 음료주

2.2 증류주의 조제주

증류주와(혹은) 식용주정을 주원료로 하여, 식용 가능한 부원료 혹은 식품첨가제를 첨가하여 조제, 혼합 혹은 재가공하여 제조된 기존 주원료의 주류적 특성이 변화된 음료주

3. 기술 요구

3.1 원료 요구

원료는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3.2 감관지표

제품 표준에 상응하는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3.3 이화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이화지표

| 항목                          |   | 지표  |     | 검사방법        |
|-----------------------------|---|-----|-----|-------------|
|                             |   | 양곡류 | 기타  |             |
| 메틸알코올 <sup>a</sup> / (g/L)  | ≤ | 0.6 | 2.0 | GB/T5009.48 |
| 시아나화물 <sup>a</sup> / (mg/L) | ≤ | 8.0 |     | GB/T5009.48 |

메틸알코올, 시아나화물의 지표는 100% 알코올 농도로 환산한 것으로 적용한다.

### 3.4 오염물질 제한량 /진균독소 제한량

3.4.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GB2758-2012 발효주와 발효주의 조제주와 동일

3.4.2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GB2758-2012 발효주와 발효주의 조제주와 동일

### 3.5 식품첨가제와 식품영양강화제

식품첨가제는 GB2760에 부합해야 함

## 4. 라벨

4.1 증류주 및 증류주의 조제주 라벨은 알코올 농도, 과음경고문구, 보존기한의 표기 외 GB7718의 규정을 따라야 함

4.2 반드시 %vol를 단위로 알코올 농도를 표기해야 함

4.3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의 문구를 기재해야 하며, 기타 경고 문구를 함께 기재해도 무방함

4.4 포도주와 기타 알코올의 농도가 10%vol 이상일 경우 보존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함

■ 2018년 1~10월 질검중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1월  | 1       | 0   | 0% |
| 3월  | 15      | 0   | 0% |
| 4월  | 1       | 0   | 0% |
| 5월  | 19      | 0   | 0% |
| 7월  | 1       | 0   | 0% |
| 10월 | 1       | 0   | 0% |
| 합계  | 38      | 0   | 0%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국가 일부 발체)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1월  | 2206009000 | **일본산 리큐어      | 라벨 불합격    | 상해  |
|     | 2203000000 | **조선산 맥주       | 라벨 불합격    | 요녕성 |
| 3월  | 2203000000 | **체코산 맥주 2종    | 유통기한 초과   | 절강성 |
|     | 2203000000 | **폴란드산 맥주 12종  | 유통기한 초과   | 하문  |
| 4월  | 2203000000 | **스위스산 맥주      | 유통기한 초과   | 절강성 |
| 5월  | 2203000000 | **독일산 맥주       | 포장 불합격    | 상해  |
|     | 2208909099 | **일본산 과일맛술 18종 | 관련 증서 미제출 | 요녕성 |
| 7월  | 2203000000 | **뉴질랜드산 맥주     | 유통기한 초과   | 사천성 |
| 10월 | 2203000000 | **독일산 맥주       | 포장 불합격    | 북경  |

■ 불합격 사례 분석

- 라벨 불합격

- 주류는 제조공정 및 사용 원료 및 배합 비율에 따라 증류주, 혼합주 등으로 분류되며, 증문라벨에 정확한 품목 명칭을 기재해야 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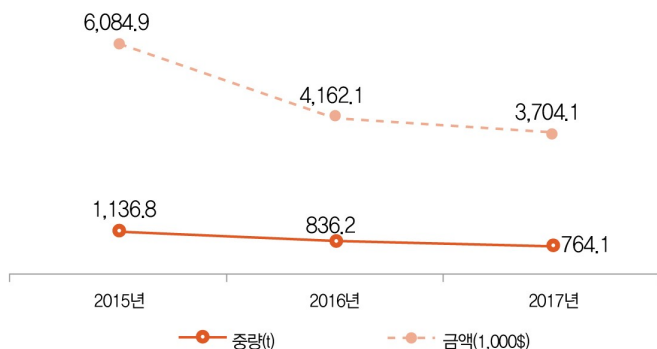
- 식품첨가제 초과사용

- 이산화황은 포도주, 과일주, 맥주에 제한량 범위 내에서 첨가 가능하나 3월 불합격된 독일산 발효주의 경우 상기 3개 분류에 속하지 않으므로 불합격 처리됨
- 아스파탐과 아세틸살피칼륨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는 식품첨가제임
- 프랑스산 증류조제주의 경우 국가표준 강제검역 항목인 메틸알코올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됨. 수출 전 수출적합성 사전 심의 단계에서 식품첨가제의 첨가량을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고, 생산시 실제 기준량을 준수하여 생산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 사용가능 여부 및 제한량 부합여부 사전 심의                                                                                   |
| 2. 중문라벨      | 중문라벨에 알코올 농도, 주의문구 등 필수 기재사항 기재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인삼주, 기타 식물을 원료로 하는 주류일 경우, 원료의 규정을 별도로 파악하여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중문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추가 기재해야 함 |
| 4. HS CODE   | 코드별 관세 및 소비세율이 다르므로 원료와 유형별로 HS코드 사전 확정                                                                          |

## 마. 식물성유지

### ■ 식물성유지 131 수출실적 ■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식물검역증(농림축산검역본부)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1) 대두유

- 1507.9000 대두유
- ※ 수입자 자동수입허가증필요

(2) 올리브유 1509

- 1509.1000 버진 올리브유
- 1509.9000 기타
- ※ 수입자 자동수입허가증필요

(3) 참기름

- 1515.5000 참기름

■ HS CODE 및 관세율

■ 관세율 보기표 1 ■

|              |                        |           |
|--------------|------------------------|-----------|
| 1. 대두유       | HS CODE                | 1507.9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9/9       |
|              | 중치세율(%)                | 10        |
|              | FTA 양허조건               | E(현행유지)   |
|              | 균등철폐세율(%)              | 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부터        | 9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 2. 올리브유      | HS CODE                | 1509.1000<br>1509.9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0                               |
|              | 중치세율(%)                | 1509.1000: 10%<br>1509.9000: 16% |
|              | FTA 양허조건               | 10(1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0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9.00                             |
| 2년차          | 2016년                  | 8.00                             |
| 3년차          | 2017년                  | 7.00                             |
| 4년차          | 2018년                  | 6.00                             |
| 5년차          | 2019년                  | 5.00                             |
| 6년차          | 2020년                  | 4.00                             |
| 7년차          | 2021년                  | 3.00                             |
| 8년차          | 2022년                  | 2.00                             |
| 9년차          | 2023년                  | 1.00                             |
| 10년차         | 2024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관세율 보기표 3 ■

|              |                        |              |
|--------------|------------------------|--------------|
| 3. 참기름       | HS CODE                | 1515.5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0/10        |
|              | 증치세율(%)                | 10           |
|              | FTA 양허조건               | 10(1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2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0.80        |
| 2년차          | 2016년                  | 9.60         |
| 3년차          | 2017년                  | 8.40         |
| 4년차          | 2018년                  | 7.20         |
| 5년차          | 2019년                  | 6.00         |
| 6년차          | 2020년                  | 4.80         |
| 7년차          | 2021년                  | 3.60         |
| 8년차          | 2022년                  | 2.40         |
| 9년차          | 2023년                  | 1.20         |
| 10년차         | 2024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 검역 요구

- 첫 수입되는 예포장된 식용유일 경우 식품안전 국가표준 중 규정된 검사 항목(식용유 38개 품목)에 관한 보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2차 수입부터는 첫 수입시 제출한 검사 레포트의 사본 및 1차 수입 검역합격증을 제출해야 함. 만약 1차 수입시 불합격된 경우 2차 수입시에는 1차 수입시 제출한 모든 서류의 원본을 다시 제출해야 함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16-2005 食用植物油 (식물성 식용유)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식물성 원유, 식물성 식용유의 위생지표와 검사방법 및 식품첨가제, 포장, 표시, 보관, 운송에 관한 위생 요구를 규정함

본 표준은 식물성 원유, 식물성 식용유에만 적용하며, 경화유와 인조버터(마가린)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참고 문헌

본 가이드북에서는 세부 내용 생략

3. 용어 및 정의

3.1 식물성 원유

식물성 유료를 원료로 하여 만든 원료유

3.2 식물성 식용유

식물성 유료 혹은 식물성 원유를 원료로 하여 만든 식용 가능한 식물성 유지

4. 지표 요구

4.1 원료, 부원료 요구

4.1.1 원료는 반드시 GB19641의 규정을 따라야 함

4.1.2 침출용 추출 용제는 GB16629의 요구 조건과 기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감관지표

제품고유의 정상 색과 광택, 투명도, 냄새와 맛이 있어야 하며, 탄 냄새나 산패된 것과 같은 냄새가 없어야 함

4.3 이화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lt;표 1&gt; 이화지표

| 항목               |   | 지표             |         |
|------------------|---|----------------|---------|
|                  |   | 식물성 원유         | 식물성 식용유 |
| 산가(KOH)*/(mg/g)  | ≤ | 4              | 3       |
| 과산화물값*/(g/100g)  | ≤ | 0.25           | 0.25    |
| 침출유 잔류용제/(mg/kg) | ≤ | 100            | 50      |
| 유리상태의 고시폴/(%)면실유 | ≤ | -              | 0.02    |
| 총비소/(mg/kg)      | ≤ | 0.1            | 0.1     |
| 납/(mg/kg)        | ≤ | 0.1            | 0.1     |
| 아플라톡신B1/(μg/kg)  |   |                |         |
| 땅콩기름, 옥수수 배아유    | ≤ | 20             | 20      |
| 기타기름             | ≤ | 10             | 10      |
| 벤조피렌/(μg/kg)     | ≤ | 10             | 10      |
| 농약 잔류량           |   | GB2763의 규정에 따름 |         |

\*항목은 제품의 강제성 국가표준에서 규정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

## 5. 식품첨가제

5.1 식품첨가제의 품질은 상관 표준과 규정을 따라야 함

5.2 식품첨가제의 종류와 사용제한량은 GB276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6. 생산가공과정

본 가이드북에서는 세부 내용 생략

## 7. 포장

본 가이드북에서는 세부 내용 생략

## 8. 표시

유전자 변형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은 국가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2018년 1~10월 질검총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4월 | 1       | 0   | 0% |
| 5월 | 1       | 0   | 0% |
| 8월 | 1       | 0   | 0% |
| 9월 | 2       | 0   | 0% |
| 합계 | 5       | 0   | 0%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국가 일부 발체)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4월 | 1507100000 | **카자흐스탄산 대두원유 | 이물질 함유                         | 신장  |
| 5월 | 1515500000 | **일본산 참기름     | 식품첨가제 올레오레진캡시킴/파프리카 레드 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8월 | 1509100000 | **스페인산 올리브유   | 식품첨가제 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9월 | 1515500000 | **중국산 참기름     | 관련 서류 미제출                      | 심천  |
|    | 1515909090 | **영국산 기름      | 관련 서류 미제출                      | 광둥성 |

■ 불합격 사례 분석

- 식품첨가제 초과 사용

- 5월 불합격된 일본산 참기름은 식품첨가제 초과사용으로 불합격 되었으며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GB2760-2014에 따르면 올레오레진캡시킴과 파프리카 레드는 식용유에 사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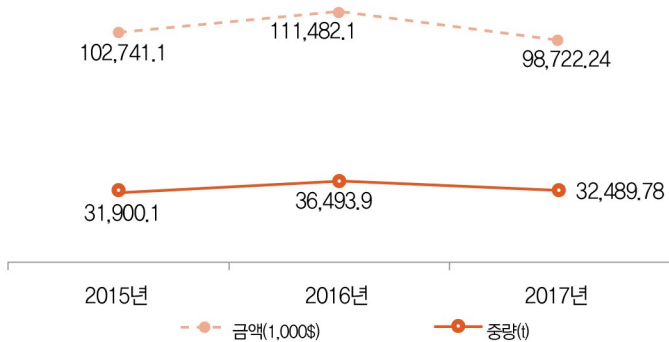
- 지표 불합격

- 산가, 중금속 등의 함량은 국가표준에서 규정된 제한량 지표에 부합해야 하며, 초과검출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함. 또한 식용유의 수입 전 제출하는 품목별 요구되는 검사레포트는 반드시 수출 물품과 동일한 로트의 것으로 진행하여 불합격된 항목이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 사용 가능여부 및 제한량 부합여부 사전 심의   |
| 2. 중문라벨      | 중문라벨에 올리브유의 수확 연도와 포장 연도 구분하여 기입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품목별 요구되는 검사항목 레포트 원본 제출(첫 수입)    |
| 4. HS CODE   | -                                |

## 바. 기타 조제 농산품

### 기타조제농산품169 수출실적



※ 자료: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1) 아이스크림, 기타빙과류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2105.00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

(아이스크림 조제용 원료베이스는 통상 19019000.00로 분류, 검역 요구는 동일)

■ 관세율 보기표 1 ■

|                     |                        |           |
|---------------------|------------------------|-----------|
| 1. 아이스크림,<br>기타 빙과류 | HS CODE                | 2105.0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9/12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E (현행유지)  |
|                     | 균등철폐세율(%)              | 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부터       | 19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검역 요구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59-2015 冷冻饮品和制作料(냉동음료와 제조원료)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냉동음료와 제조원료에 적용함

본 표준은 현장에서 즉석 판매하는 냉동음료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용어 및 정의

2.1 냉동음료

음용수, 설탕, 우유, 유제품, 과채가공품, 콩류, 식용유지 등의 몇 가지를 주원료로 하여, 기타 보조원재료, 식품첨가제, 식품영양강화제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재료 배합, 저온살균 혹은 멸균, 응고 혹은 냉동 등의 제조공정을 거친 고체 혹은 반고체 형태의 식품으로 아이스크림, 슬러시, 단맛을 내는 얼음, 식용 얼음 등이 있음

2.2 제조원료

최종제품의 성분함량비에 따라 배합하여 액체, 고체, 분말의 형태로

생산한 아이스크림, 슬러시 등의 제조 식료품. 아이스크림 라이트믹스/슬러시 라이트믹스/ 아이스크림믹스 등이 있음

### 3. 기술 요구

#### 3.1 원료 요구

원료는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3.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이화지표

| 항목    | 요 구                                                  | 검사 방법                                                                              |
|-------|------------------------------------------------------|------------------------------------------------------------------------------------|
| 색     | 제품이 정상적으로 갖춰야 할 색과 광택                                | 동결 상태의 제품을 샘플링하여 깨끗한 백색 쟁반위에 두고 포장 상태를 점검한 후 포장지를 개봉하여 광택과 색을 살펴보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아본다. |
| 맛, 냄새 | 이취가 없어야 함                                            |                                                                                    |
| 상태    | 제품이 정상적으로 갖춰야 할 외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3.3 오염물질 제한량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제한량 (mg/kg) |
|-------|-------------|
| 납     | 0.3         |

#### 3.4 미생물 제한량

3.4.1 병원균 제한량은 GB29921 중 냉동음료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살모넬라균   | 5                        | 0 | 0   | -    |
| 황색포도상구균 | 5                        | 1 | 100 | 1000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 3.4.2 기타 미생물 제한량은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CFU/g)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균락총수 <sup>a</sup> | 5                       | 2(0) | $2.5 \times 10^4$<br>( $10^2$ ) | $10^5$ (-) |
| 대장균군              | 5                       | 2(0) | 10(10)                          | $10^2$ (-) |

주석: 괄호 안의 수치는 식용얼음에 적용함

a 최종제품이 활성균종을 포함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3.4.3 멸균, 무균통조림 공정으로 제조된 제조원료제품은 상업무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GB4789.26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진행

## 3.5 식품첨가제와 식품영양강화제

### 3.5.1 식품첨가제는 GB2760 중 냉동음료의 규정을 따라야 함

### 3.5.2 영양강화제는 GB15889 중 냉동음료의 규정을 따라야 함

## 4. 기타

### 4.1 운송차량은 식품위생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적합한 보온설비를 갖추어 제품의 상태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함

### 4.2 냉동음료 제품은 보관온도 $-18^{\circ}\text{C}$ 이하의 전용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제조원료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조건하에 보관해야 함

### 4.3 냉동음료는 냉동 상태로 판매해야 하며 저온 진열대의 온도는 $-15^{\circ}\text{C}$ 이하여야 함

■ 2018년 1~10월 질검중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6월 | 3       | 0   | 0% |
| 8월 | 2       | 0   | 0% |
| 9월 | 1       | 0   | 0% |
| 합계 | 6       | 0   | 0%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 국가)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6월 | 2105000000 | 이탈리아산 블랙체리맛 아이스크림  | 식품첨가제 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 2105000000 | 이탈리아산 파스타치오맛 아이스크림 | 식품첨가제 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 2105000000 | **이탈리아산 아이스케이크     | 식품첨가제 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8월 | 2105000000 | **이탈리아산 초콜릿 아이스크림  | 부패 변질              | 상해 |
|    | 2105000000 | **태국산 망고 아이스크림     | 식품첨가제 타트라진 초과범위 사용 | 하문 |
| 9월 | 2105000000 | 뉴질랜드산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 라벨 불합격             | 상해 |

■ 불합격 사례 분석

- 식품첨가제 초과사용

- 8월 불합격된 태국산 아이스크림은 식품첨가제 타트라진을 과량 첨가하여 불합격되었으며, 해당 첨가제는 냉동음료(빙과류)에 0.05g/kg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나, 실검역시 제출한 성분배합비에 기재된 사용량에 비해 실제 검출량이 이를 초과하여 불합격 혹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판단됨

- 아이스크림은 원료 배합 구조상 식품첨가제가 다량 첨가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색소가 과량 첨가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친 후 수출을 진행해야 함
- 미생물 초과검출
  - 아이스크림의 특성상 해외 수출 진행시 운송이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온도 조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녹았다가 다시 어는 과정에서 대장균 등이 번식할 수 있고, 특히 과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과일의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미생물이 초과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 감관검역 불합격
  - 아이스크림의 보관 온도에 문제가 있어 외관이 녹았다가 다시 열린 흔적이 있어 모양이 흐트러진 경우 육안으로 검사하여 불합격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 사용 가능여부 및 제한량 부합여부 사전 심의<br>특히 색소 과량첨가에 유의                                   |
| 2. 중문라벨      | 중문라벨에 보관온도와 보관법 기재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보관온도에 따라 대장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수출시<br>보관온도와 수입통관시 현지 바이어에 운송과 보관 온도에 관해 사전<br>통지 |
| 4. HS CODE   | -                                                                                  |

## (2) 두부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Invoice



■ HS CODE 및 관세율

- 2106.9090 비발효 콩제품

■ 관세율 보기표 1 ■

| 1. 두부        | HS CODE                | 2106.9090 |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12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PR-8      |
|              | 균등철폐세율(%)              | 0.32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9.68     |
| 2년차          | 2016년                  | 19.36     |
| 3년차          | 2017년                  | 19.04     |
| 4년차          | 2018년                  | 18.72     |
| 5년차          | 2019년                  | 18.40     |
| 아태무역협정(APTA) |                        | 18.4      |

■ 검역 요구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12-2014 豆制品(콩류제품)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예포장된 콩류제품에 적용함

본 표준은 대두단백분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용어 및 정의

2.1 콩류제품

대두 혹은 잡콩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을 거쳐 제조된 식품으로, 발효콩류제품, 비발효콩류제품과 대두단백제품을 포함함

### 3. 기술 요구

#### 3.1 원료 요구

원료는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3.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 방법                                                                                        |
|-------|---------------------------------------------------------|----------------------------------------------------------------------------------------------|
| 색, 광택 | 제품 고유의 색과 광택                                            | 액체샘플을 취한 후 50ml의 비커에 담고 고체샘플은 깨끗한 백색 쟁반 위에 두고 자연광 아래에서 색과 상태를 점검하고, 냄새를 맡아본다. 입을 행군 후 맛을 본다. |
| 맛, 냄새 | 이취가 없어야 함                                               |                                                                                              |
| 상태    | 제품 고유의 정상적으로 갖춰야 할 외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3.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검사 항목                | 지표 |
|----------------------|----|
| 우레아제 실험 <sup>a</sup> | 음성 |

<sup>a</sup>해당 지표는 두유(豆漿)에만 적용함

#### 3.4 오염물질 제한량

3.4.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제한량 (mg/kg) |
|-------|-------------|
| 납     | 0.5         |
| 콩류제품  |             |
| 두유    | 0.05        |

3.4.2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제한량 (μg/kg) |
|---------|-------------|
| 아플라톡신B1 | 5.0         |

### 3.5 미생물 제한량

#### 3.5.1 병원균 제한량은 GB29921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살모넬라균   | 5                        | 0 | 0   | -    |
| 황색포도상구균 | 5                        | 1 | 100 | 1000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 3.5.2 기타 즉석공류제품의 미생물 함량은 <표 3>의 규정에도 부합해야 함

<표 3>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mL))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대장균군  | 5                            | 2 | 10 <sup>2</sup> | 10 <sup>3</sup> |

### 3.6 식품첨가제와 식품영양강화제

식품첨가제는 GB276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두부>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 사용가능 여부 및 제한량 부합여부 사전 심의                                                                         |
| 2. 중문라벨      | 중문라벨에 보관온도와 보관법 기재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두부는 운송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 포장이 부풀거나 쉽게 변질되는 제품으로, 수출시 보관온도에 유의하여 미생물 검역에 유의, 수입통관시 현지 바이어에 운송과 보관 온도에 관해 사전 통지 |
| 4. HS CODE   | -                                                                                                      |

### (3) 유아용 조제식품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Invoice

※ 조제분유는 수입자(바이어)가 분유 자동수입허가를 사전에 획득해야 함

#### ■ HS CODE 및 관세율

- 1901.1010 조제분유
- 1901.1090 곡류 보조식품

■ 관세율 보기표 1 ■

|                            |                        |                        |
|----------------------------|------------------------|------------------------|
| 1. 조제분유<br>2. 영유아용 곡류 보조식품 | HS CODE                | 1901.1010<br>1901.109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5/15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E(현행 유지)               |
|                            | 균등철폐세율(%)              | 0.0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부터        | 15.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 검역 요구

-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공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공장으로 등록이 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함
-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 라벨 규범 기술지도 원칙

-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标签规范技术指导原则(试行)》的公告)을 발표함(17.5.24).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제조법 등록관리지침(《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에 따라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제조법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라벨과 설명서 샘플, 라벨과 설명서에 밝힌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2018년 1월 1일부터 생산 공장별로 브랜드 3개, 제조법 9개로 제한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0765-2010 婴幼儿配方食品(영아 조제식품)**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영아조제식품에 적용함

2. 참고 문헌

본 가이드북에서는 세부 내용 생략

3. 용어 및 정의

3.1 영아 infant

생후 0~12개월의 사람

3.2 영아조제식품 infant formula

3.2.1 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 우유류 및 유단백 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적당량의 비타민, 미네랄과(또는)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생산 가공하여 제조된 액체 혹은 분말 상태의 제품으로 정상 영아가 식용하는 데 적합하고, 열량과 영양성분은 0~6개월 영아의 정상적인 영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3.2.2 대두 기반 영아 조제식품: 대두 및 대두 단백 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적당량의 비타민, 미네랄과(또는)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생산 가공하여 제조된 액상 또는 분말 형태의 제품으로 정상 영아가 섭취하는 데 적합하며, 열량과 영양성분은 0~6개월 영아의 정상적인 영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4. 기술 요구

##### 4.1 원료 요구

제품 중 사용된 모든 원료는 관련 안전표준이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영아의 안전, 영양수요 충족을 보장해야 하며 영아의 영양과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해선 안됨

사용된 원료 및 식품첨가제는 글루테린 함유 불가

경화유지 사용 불가

방사선 조사처리 원료사용 불가

##### 4.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
| 색, 광택 | 제품 고유의 특성                              |
| 맛, 냄새 | 제품 고유의 특성                              |
| 조직 상태 | 제품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정상 시력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용해성   | 제품 고유의 특성                              |

##### 4.3 필수 성분

4.3.1 제품 중 모든 필수 성분은 영아의 성장 및 발육에 필수적임

4.3.2 제품은 즉석 섭취 상태에서 100mL당 함유된 열량이 250kJ(60kcal)~295kJ(70kcal) 범위 내여야 함. 열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제품 100mL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에 따라 각각 열량 계수 17kJ/g, 37kJ/g, 17kJ/g(식이섬유의 열량 계수는 탄수화물 열량 계수의 50%로 계산)을 각각 곱하여 얻어진 합이 kJ/100mL 값이며, 이를 다시 4.184로 나누면 kcal/100mL 값이 됨

4.3.3 영아 조제식품의 경우 100kJ(100kcal)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은 〈표 2〉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4.3.4 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 대하여 우선 선택한 탄수화물은 유당, 유당 및 포도당 중합체여야 함. 전호화 처리한 전분만 영아 조제식품에 첨가 가능하며, 과당은 사용 불가

<표 2>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 지표

| 영양소                      | 지표     |                   |          |                   | 검사방법      |
|--------------------------|--------|-------------------|----------|-------------------|-----------|
|                          | 100kJ당 |                   | 100kcal당 |                   |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단백질 <sup>a</sup>         |        |                   |          |                   |           |
| 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g)        | 0.45   | 0.70              | 1.88     | 2.93              | GB5009.5  |
| 대두 기반 영아 조제식품/(g)        | 0.50   | 0.70              | 2.09     | 2.93              |           |
| 지방 <sup>b</sup>          | 1.05   | 1.40              | 4.39     | 5.86              | GB5413.33 |
| 그중: 리놀레산/(g)             | 0.07   | 0.33              | 0.29     | 1.38              | GB5413.27 |
| a-리놀렌산/(mg)              | 12     | N.S. <sup>c</sup> | 50       | N.S. <sup>c</sup> |           |
| 리놀레산 및 a-리놀렌산 비율         | 5:1    | 15:1              | 5:1      | 15:1              | -         |
| 탄수화물 <sup>d,e</sup> /(g) | 2.2    | 3.3               | 9.2      | 13.8              | -         |

<sup>a</sup> 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 중 유청 단백질 함량은 60% 이상이어야 함. 영아 조제식품 중 단백질 함량은 질소(N)×6.25로 계산해야 함

<sup>b</sup> 최종제품 지방 중 라우르산 및 미리스트산(테트라데칸산) 총량 <총 지방산의 20%, 트랜스지방산 최고 함량 <총 지방산의 3%, 에루산 함량 <총 지방산의 1%, 총 지방산은 C4~C24 지방산의 총합임

<sup>c</sup> N.S.는 특별한 설명이 없음을 의미

<sup>d</sup> 유당이 탄수화물에서 차지하는 총량이 ≥90%이어야 함. 우유 기반 제품에 대하여 유당이 탄수화물에서 차지하는 총량을 계산할 경우 첨가한 올리고당 및 다당류 물질은 포함되지 않으며, 유당 백분율 함량의 요구사항은 대두 기반 조제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sup>e</sup> 탄수화물의 함량 A1은 공식(1)에 따라 계산함

$$A^1 = 100 - (A2 + A3 + A4 + A5 + A6) \dots\dots\dots(1)$$

공식 중:

A1<sup>1</sup> 탄수화물의 함량, g/100g

A2<sup>2</sup> 단백질의 함량, g/100g

A3<sup>3</sup> 지방의 함량, g/100g

A4<sup>4</sup> 수분의 함량, g/100g

A5<sup>5</sup> 회분의 함량, g/100g

A6<sup>6</sup> 식이섬유의 함량, g/100g

#### 4.3.5 비타민: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3> 미네랄 지표

| 영양소                            | 지표     |       |          |       | 검사방법      |
|--------------------------------|--------|-------|----------|-------|-----------|
|                                | 100kJ당 |       | 100kcal당 |       |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비타민A/(μg RE) <sup>a</sup>      | 14     | 43    | 59       | 180   | GB5413.9  |
| 비타민D/(μg) <sup>b</sup>         | 0.25   | 0.60  | 1.05     | 2.51  |           |
| 비타민E/(μg α-TE) <sup>c</sup>    | 0.12   | 1.20  | 0.50     | 5.02  |           |
| 비타민K1/(μg)                     | 1.0    | 6.5   | 4.2      | 27.2  | GB5413.10 |
| 비타민B1/(μg)                     | 14     | 72    | 59       | 301   | GB5413.11 |
| 비타민B2/(μg)                     | 19     | 119   | 80       | 498   | GB5413.12 |
| 비타민B6/(μg)                     | 8.5    | 45.0  | 35.6     | 188.3 | GB5413.13 |
| 비타민B12/(μg)                    | 0.025  | 0.360 | 0.105    | 1.506 | GB5413.14 |
| 니코틴산(니코틴아미드)/(μg) <sup>d</sup> | 70     | 360   | 293      | 1506  | GB5413.15 |
| 엽산/(μg)                        | 2.5    | 12.0  | 10.5     | 50.2  | GB5413.16 |
| 판토텐산/(μg)                      | 96     | 478   | 402      | 2000  | GB5413.17 |
| 비타민C/(mg)                      | 2.5    | 17.0  | 10.5     | 71.1  | GB5413.18 |
| 비오틴/(μg)                       | 0.4    | 2.4   | 1.5      | 10.0  | GB5413.19 |

<sup>a</sup> RE는 레티놀 당량임.  $1\mu\text{gRE}=1\mu\text{g}$  올 트랜스 레티놀(비타민A)=3.33IU 비타민A임  
비타민A는 사전 형성된 레티놀만 포함하며 비타민A 활성의 계산 및 정보 명시시 어떠한 유형의 카로틴 성분도 포함하지 않음

<sup>b</sup> 칼시페롤,  $1\mu\text{g}$ 비타민D=40 IU 비타민D임

<sup>c</sup> 1 mg  $\alpha$ -TE ( $\alpha$ -토코페롤 당량)=1 mg d- $\alpha$ -토코페롤이며, 다불포화지방산 1g당 최소 0.5mg  $\alpha$ -TE를 함유해야 하고 비타민E 함량의 최소치는 조제식품 중 다불포화지방산의 이중결합 수량에 따라 조정: 0.5mg  $\alpha$ -TE/g 리놀레산(18:2 n-6) ; 0.75mg  $\alpha$ -TE/g  $\alpha$ -리놀렌산(18:3 n-3) ; 1.0mg  $\alpha$ -TE/g 아라키돈산(20:4 n-6) ; 1.25mg $\alpha$ -TE/g EPA(20:5 n-3) ; 1.5mg  $\alpha$ -TE/g DHA(22:6 n-3).

<sup>d</sup> 니코틴산은 전구체를 포함하지 않음



## 4.3.6 미네랄: &lt;표 4&gt;의 규정을 따라야 함

&lt;표 4&gt; 비타민 지표

| 영양소       | 지표     |                  |          |                   | 검사방법      |
|-----------|--------|------------------|----------|-------------------|-----------|
|           | 100kJ당 |                  | 100kcal당 |                   |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나트륨/(mg)  | 5      | 14               | 21       | 59                | GB5413.21 |
| 칼륨/(mg)   | 14     | 43               | 59       | 180               |           |
| 구리/(μg)   | 8.5    | 29.0             | 35.6     | 121.3             |           |
| 마그네슘/(mg) | 1.2    | 3.6 <sup>a</sup> | 5.0      | 15.1 <sup>a</sup> |           |
| 철/(mg)    | 0.10   | 0.36             | 0.42     | 1.51              |           |
| 아연/(mg)   | 0.12   | 0.36             | 0.50     | 1.51              |           |
| 망간/(μg)   | 1.2    | 24.0             | 5.0      | 100.4             |           |
| 칼슘/(mg)   | 12     | 35               | 50       | 146               |           |
| 인/(mg)    | 6      | 24 <sup>a</sup>  | 25       | 100 <sup>a</sup>  | GB5413.22 |
| 칼슘 인 비율   | 1:1    | 2:1              | 1:1      | 2:1               | -         |
| 요오드/(μg)  | 2.5    | 14.0             | 10.5     | 58.6              | GB5413.23 |
| 염소/(mg)   | 12     | 38               | 50       | 159               | GB5413.24 |
| 셀레늄/(μg)  | 0.48   | 1.90             | 2.01     | 7.95              | GB5009.93 |

<sup>a</sup>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만 적용

## 4.4 선택 성분

4.4.1 4.3의 필수 성분 이외에 제품 중 선택 첨가하거나 라벨 중 <표 5> 중 1가지 또는 1가지 이상의 성분 함유를 표시할 경우 해당 함량은 <표 5>의 규정을 따라야 함

4.4.2 영아 조제식품의 단백질 품질을 개선하거나 해당 영양소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록 A의 영아 조제식품 중 아미노산 권장 함량 값을 참조하여 단일 L형 아미노산을 첨가할 수 있음. 사용된 단일 L형 아미노산 공급원은 GB14880 혹은 부록 B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4.4.3 제품 중 <표 5>와 부록 B에서 제외된 기타 물질을 첨가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표 5> 선택 성분 지표

| 선택성분                         | 지표                |                   |                   |                   | 검사 방법        |
|------------------------------|-------------------|-------------------|-------------------|-------------------|--------------|
|                              | 100kJ당            |                   | 100kcal당          |                   |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콜린/(mg)                      | 1.7               | 12.0              | 7.1               | 50.2              | GB/T 5413.20 |
| 이노시톨/(mg)                    | 1.0               | 9.5               | 4.2               | 39.7              | GB5413.25    |
| 타우린/(mg)                     | N.S. <sup>a</sup> | 3                 | N.S. <sup>a</sup> | 13                | GB5413.26    |
| L-카르니틴/(mg)                  | 0.3               | N.S. <sup>a</sup> | 1.3               | N.S. <sup>a</sup> | -            |
| DHA/(%총 지방산 <sup>b,c</sup> ) | N.S. <sup>a</sup> | 0.5               | N.S. <sup>a</sup> | 0.5               | GB5413.27    |
| ARA/(%총 지방산 <sup>b,c</sup> ) | N.S. <sup>a</sup> | 1                 | N.S. <sup>a</sup> | 1                 | GB5413.27    |

<sup>a</sup> N.S.는 특별한 설명이 없음을 의미

<sup>a</sup> b영아 조제식품 중 DHA(22:6 n-3)를 첨가하였을 경우 최소한 동일한 양의 ARA(20:4 n-6)를 첨가해야 함. 긴 사슬 불포화지방산 중 EPA(20:5 n-3)의 함량이 DHA의 양 초과 불가

<sup>c</sup> 총 지방산은 C4~C24 지방산의 총합

#### 4.5 기타지표

<표 6>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6> 기타 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 방법     |
|--------------------------------|-------|-----------|
| 수분/(%) <sup>a</sup>            | ≤ 5.0 | GB5009.3  |
| 회분                             |       | GB5009.4  |
| 우유 기반 분말 형태 제품/(%)             | ≤ 4.0 |           |
| 우유 기반 액상 제품(총 건조물질에 따라 계산)/(%) | ≤ 4.2 |           |
| 대두 기반 분말 형태 제품/(%)             | ≤ 5.0 |           |
| 대두 기반 액상 제품(총 건조물질에 따라 계산)/(%) | ≤ 5.3 |           |
| 불순도(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 한함)         |       | GB5413.30 |
| 분말 형태 제품/(mg/kg)               | ≤ 12  |           |
| 액상 제품/(mg/kg)                  | ≤ 2   |           |

<sup>a</sup>분말 형태 영아 조제식품에 한한다.

#### 4.6 오염물질 제한량

<표 7>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 7> 오염물질 제한량(분말 상태의 제품으로 계산)

|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검사 방법     |
|------------------------------------------------------|-----------|-----------|
| 납/(mg/kg) ≤                                          | 0,15      | GB5009,12 |
| 질산염(NaNO <sub>3</sub> 로 계산) /(mg/kg) ≤               | 100       | GB5009,33 |
| 아질산염(NaNO <sub>2</sub> 로 계산) <sup>a</sup> /(mg/kg) ≤ | 2         |           |

<sup>a</sup>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만 적용한다.

#### 4.7 진균독소 제한량

<표 8>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 8> 진균독소 제한량(분말 상태의 제품으로 계산)

|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검사 방법     |
|--------------------------------------------|-----------|-----------|
| 아플라톡신M1 또는 아플라톡신B1 <sup>a</sup> /(μg/kg) ≤ | 0,5       | GB5009,24 |

<sup>a</sup> 아플라톡신M1 제한량은 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 적용

아플라톡신B1 제한량은 대두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 적용

#### 4.8 미생물 제한량

분말 형태 영아 조제식품의 미생물 지표는 <표 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액상 영아 조제식품의 미생물 지표는 상업적 무균성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GB/T 4789.26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함

<표 9>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mL)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균락총수 <sup>b</sup>       | 5                          | 2 | 1000   | 10000 |
| 대장균군                    | 5                          | 2 | 10     | 100   |
| 황색포도상구균                 | 5                          | 2 | 10     | 100   |
|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sup>c</sup> | 3                          | 0 | 0/100g | -     |
| 살모넬라균                   | 5                          | 0 | 0/25g  | -     |

<sup>b</sup> 활성균종(호기성균 및 혐기균)을 첨가한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제품 중 활성 프로바이오틱스의 활성균수는 ≥10<sup>6</sup>CFU/g (mL)이어야 함)

<sup>c</sup> 0~6개월 영아가 섭취하는 조제식품에만 적용함

#### 4.9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4.9.1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품질은 관련 안전표준과 규정을 따라야 함

4.9.2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사용은 GB2760과 GB1488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4.10 우레아제 활성

대두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우레아제 활성은 <표 10>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0> 우레아제 활성 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방법                      |
|---------------|----|---------------------------|
| 우레아제 활성 정성 측정 | 음성 | GB/T 5413.31 <sup>a</sup> |

<sup>a</sup>액상 영아 조제식품의 샘플 추출량은 건조물질 함량에 따라 환산

### 5. 기타

#### 5.1 라벨

5.1.1 제품 라벨은 GB1343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영양소와 선택 성분 함량 표시에는 '100킬로줄(100kJ)' 함량을 추가해야 함

5.1.2 라벨에 제품의 유형, 영아 조제식품 속성(예: 우유 기반 또는 대두 기반 제품인지 여부, 제품 상태) 및 적용 연령을 명시해야 함. 6개월 이상 영아의 섭취에 제공되는 조제식품에는 '6개월 이상 영아에게 이 제품을 먹일 경우 보조식품을 첨가 조제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함

5.1.3 영아 조제식품에는 '0~6개월의 영아에게 최적의 식품은 모유이며, 모유가 부족하거나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제품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함

5.1.4 라벨에 영아 및 여성의 이미지를 첨부할 수 없으며, '인유(人乳)화', '모유화'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사용 불가

#### 5.2 사용 설명

5.2.1 제품 사용, 조제법 설명과 그림, 저장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라벨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함. 포장 최대 면적이 100cm<sup>2</sup>보다 작거나 제품 중량이 100g보다 적을 경우 그림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5.2.2 설명란에 부적절한 조제 및 사용으로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경고 문구로 명시해야 함

### 5.3 포장

식품용 또는 순도≥99.9%의 이산화탄소 및(또는) 질소 가스를 포장 매개물로 사용 가능함

## ▶ GB10767-2010 较大婴儿和幼儿配方食品(생후 6~12개월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

###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생후 6~12개월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에 적용함

### 2. 참고 문헌

본 가이드북에서는 세부 내용 생략

### 3. 용어 및 정의

3.1 생후 6~12개월 영아 older infants

생후 6~12개월의 사람

3.2 유아 young children

생후 12~36개월의 사람

3.3 생후 6~12개월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 older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rmula

우유류 및 유단백 제품 및 또는 대두 및 대두 단백 제품을 주원료로 적당량의 비타민, 미네랄 및 또는 기타 부재료를 첨가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생산 가공하여 제조한 액상 또는 분말 형태의 제품임. 생후 6~12개월 영아 및 유아의 섭취에 적합하며 해당 영양성분은 생후 6~12개월 영아 및 유아의 일부

영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4. 기술 요구

##### 4.1 원료 요구

제품 중 사용된 모든 원료는 상응하는 안전표준과(또는)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생후 6~12개월 영아 및 유아의 안전, 영양수요 충족을 보장해야 하며 영양과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해선 안 됨

사용된 원료 및 식품첨가제는 글루텔린 함유 불가

경화유지 사용 불가

방사선 조사처리 원료 사용 불가

##### 4.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
| 색, 광택 | 제품 고유의 특성                              |
| 맛, 냄새 | 제품 고유의 특성                              |
| 조직 상태 | 제품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정상 시력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용해성   | 제품 고유의 특성                              |

##### 4.3 필수 성분

4.3.1 제품 중 모든 필수 성분은 생후 6~12개월 영아 및 유아의 성장 및 발육에 필수적임

4.3.2 제품은 즉석 섭취 상태에서 100mL당 함유된 열량이 250kJ(60kcal)~355kJ(85kcal) 범위 내여야 함. 열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제품 100mL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에 따라 각각 열량 계수 17kJ/g, 37kJ/g, 17kJ/g(식이섬유의 열량 계수는 탄수화물 열량 계수의 50%로 계산)을 각각 곱하여 얻어진 합이 kJ/100mL 값이며, 이를 다시 4.184로 나누면 kcal/100mL 값이 됨

4.3.3 제품의 즉석섭취 상태에서 100kJ(100kal)당 단백질, 지방 함량이 <표 2>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트랜스 지방 함량은 총 지방산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표 2> 단백질, 지방 지표

| 영양소              | 지표     |                   |          |                   | 검사방법      |
|------------------|--------|-------------------|----------|-------------------|-----------|
|                  | 100kJ당 |                   | 100kcal당 |                   |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단백질 <sup>a</sup> | 0.7    | 1.2               | 2.9      | 5.0               | GB5009.5  |
| 지방               | 0.7    | 1.4               | 2.9      | 5.9               | GB5413.33 |
| 그중: 리놀레산/(g)     | 0.07   | N.S. <sup>b</sup> | 0.29     | N.S. <sup>b</sup> |           |
| 탄수화물d,e /(g)     | 2.2    | 3.3               | 9.2      | 13.8              | GB5413.27 |

<sup>a</sup> 단백질 함량은 질소(N)X6.25로 계산

<sup>b</sup> N.S.는 특별한 설명이 없음을 의미

#### 4.3.4 비타민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3> 비타민 지표

| 영양소                            | 지표     |                   |          |                   | 검사방법      |
|--------------------------------|--------|-------------------|----------|-------------------|-----------|
|                                | 100kJ당 |                   | 100kcal당 |                   |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비타민A/(μg RE) <sup>a</sup>      | 18     | 54                | 75       | 225               | GB5413.9  |
| 비타민D/(μg) <sup>b</sup>         | 0.25   | 0.75              | 1.05     | 3.14              |           |
| 비타민E/(μg α-TE) <sup>c</sup>    | 0.15   | N.S. <sup>e</sup> | 0.63     | N.S. <sup>e</sup> |           |
| 비타민K1/(μg)                     | 1      | N.S. <sup>e</sup> | 4        | N.S. <sup>e</sup> | GB5413.10 |
| 비타민B1/(μg)                     | 11     | N.S. <sup>e</sup> | 46       | N.S. <sup>e</sup> | GB5413.11 |
| 비타민B2/(μg)                     | 11     | N.S. <sup>e</sup> | 46       | N.S. <sup>e</sup> | GB5413.12 |
| 비타민B6/(μg)                     | 11     | N.S. <sup>e</sup> | 46       | N.S. <sup>e</sup> | GB5413.13 |
| 비타민B12/(μg)                    | 0.04   | N.S. <sup>e</sup> | 0.17     | N.S. <sup>e</sup> | GB5413.14 |
| 니코틴산(니코틴아미드)/(μg) <sup>d</sup> | 110    | N.S. <sup>e</sup> | 460      | N.S. <sup>e</sup> | GB5413.15 |
| 엽산/(μg)                        | 1      | N.S. <sup>e</sup> | 4        | N.S. <sup>e</sup> | GB5413.16 |
| 판토텐산/(μg)                      | 70     | N.S. <sup>e</sup> | 293      | N.S. <sup>e</sup> | GB5413.17 |
| 비타민C/(mg)                      | 1.8    | N.S. <sup>e</sup> | 7.5      | N.S. <sup>e</sup> | GB5413.18 |
| 비오틴/(μg)                       | 0.4    | N.S. <sup>e</sup> | 1.7      | N.S. <sup>e</sup> | GB5413.19 |

- <sup>a</sup> RE는 레티놀 당량임. 1 $\mu$ gRE=1 $\mu$ g 올 트랜스 레티놀(비타민A)=3.33IU 비타민A임  
비타민A는 사전 형성된 레티놀만 포함하며, 비타민A 활성의 계산 및 정보 명시시 어떠한 유형의 카로틴 성분도 포함하지 않음
- <sup>b</sup> 칼시페롤, 1 $\mu$ g비타민D=40 IU 비타민D임
- <sup>c</sup> 1 mg  $\alpha$ -TE ( $\alpha$ -토코페롤 당량)=1 mg d- $\alpha$ -토코페롤이며, 다불포화지방산 1g당 최소 0.5mg  $\alpha$ -TE를 함유해야 하고 비타민E 함량의 최소치는 조제식품 중 다불포화지방산의 이중 결합 수량에 따라 조정:  $\alpha$ -TE/g 리놀렌산(18: 2 n-6) 0.5mg,  $\alpha$ -TE/g  $\alpha$ -리놀렌산(18: 3n-3) 0.75mg,  $\alpha$ -TE/g 아라키돈산(20: 4 n-6) 1.0mg,  $\alpha$ -TE/g EPA(20: 5 n-3) 1.25mg,  $\alpha$ -TE/g DHA(22: 6 n-3) 1.5mg
- <sup>d</sup> 니코틴산은 전구체를 포함하지 않음
- <sup>e</sup> N.S.는 특별한 설명이 없음을 의미

#### 4.3.5 미네랄

〈표 4〉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4〉 미네랄 지표

| 영양소       | 지표                |                   |                   |                   | 검사방법      |
|-----------|-------------------|-------------------|-------------------|-------------------|-----------|
|           | 100kJ당            |                   | 100kcal당          |                   |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나트륨/(mg)  | N.S. <sup>a</sup> | 20                | N.S. <sup>a</sup> | 84                | GB5413,21 |
| 칼륨/(mg)   | 18                | 69                | 75                | 289               |           |
| 구리/(μg)   | 7                 | 35                | 29                | 146               |           |
| 마그네슘/(mg) | 1.4               | N.S. <sup>a</sup> | 5.9               | N.S. <sup>a</sup> |           |
| 철/(mg)    | 0.25              | 0.50              | 1.05              | 2.09              |           |
| 아연/(mg)   | 0.1               | 0.3               | 0.4               | 1.3               |           |
| 칼슘/(mg)   | 17                | N.S. <sup>a</sup> | 71                | N.S. <sup>a</sup> |           |
| 인/(mg)    | 8.3               | N.S. <sup>a</sup> | 34.7              | N.S. <sup>a</sup> | GB5413,22 |
| 칼슘 인 비율   | 1.2:1             | 2:1               | 1.2:1             | 2:1               | -         |
| 요오드/(μg)  | 1.4               | N.S. <sup>a</sup> | 5.9               | N.S. <sup>a</sup> | GB5413,23 |
| 염소/(mg)   | N.S. <sup>a</sup> | 52                | N.S. <sup>a</sup> | 218               | GB5413,24 |

<sup>a</sup> N.S.는 특별한 설명이 없음을 의미

#### 4.4 선택 성분

4.4.1 4.3의 필수 성분 이외에 제품 중 선택 첨가하거나 라벨 중 〈표 5〉 중 1가지 또는 1가지 이상의 성분 함유를 표시할 경우 해당 함량은 〈표 5〉의 규정을 따라야 함



4.4.2 제품 중 <표 5>와 부록B에서 제외된 기타 물질을 첨가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표 5> 선택 성분 지표

| 선택성분                         | 지표                |                   |                   |                   | 검사방법         |
|------------------------------|-------------------|-------------------|-------------------|-------------------|--------------|
|                              | 100kJ당            |                   | 100kcal당          |                   |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셀레늄/(μg)                     | 0.48              | 1.90              | 2.01              | 7.95              | GB5009.93    |
| 콜린/(mg)                      | 1.7               | 12.0              | 7.1               | 50.2              | GB/T 5413.20 |
| 망간/ (μg)                     | 0.25              | 24.0              | 1.05              | 100.4             | GB5413.21    |
| 이노시톨/(mg)                    | 1.0               | 9.5               | 4.2               | 39.7              | GB5413.25    |
| 타우린/(mg)                     | N.S. <sup>a</sup> | 3                 | N.S. <sup>a</sup> | 13                | GB5413.26    |
| L-카르니틴/(mg)                  | 0.3               | N.S. <sup>a</sup> | 1.3               | N.S. <sup>a</sup> | -            |
| DHA/(%총 지방산 <sup>b,c</sup> ) | N.S. <sup>a</sup> | 0.5               | N.S. <sup>a</sup> | 0.5               | GB5413.27    |
| ARA/(%총 지방산 <sup>b,c</sup> ) | N.S. <sup>a</sup> | 1                 | N.S. <sup>a</sup> | 1                 |              |

<sup>a</sup> N.S.는 특별한 설명이 없음을 의미

<sup>b</sup> 총 지방산은 C4~C24 지방산의 총합

#### 4.5 기타지표

<표 6>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6> 기타 지표

| 항목                       |   | 지표  | 검사방법      |
|--------------------------|---|-----|-----------|
| 수분/(%) <sup>a</sup>      | ≤ | 5.0 | GB5009.3  |
| 외분                       |   |     |           |
| 분말 형태 제품/(%)             | ≤ | 5.0 | GB5009.4  |
| 액상 제품(총 건조물질에 따라 계산)/(%) | ≤ | 5.3 |           |
| 불순도 <sup>b</sup>         |   |     |           |
| 분말 형태 제품/(mg/kg)         | ≤ | 12  | GB5413.30 |
| 액상 제품/(mg/kg)            | ≤ | 2   |           |

<sup>a</sup> 분말 형태 영아 조제식품에 한한다.

<sup>b</sup> 채소 및 과일 첨가 제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 4.6 오염물질 제한량

〈표 7〉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표 7〉 오염물질 제한량(분말 상태의 제품으로 계산)

|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검사방법      |
|-----------------------------------------------------|-----------|-----------|
| 납/(mg/kg) ≤                                         | 0.15      | GB5009.12 |
| 질산염( $\text{NaNO}_3$ 로 계산) <sup>a</sup> /(mg/kg) ≤  | 100       | GB5009.33 |
| 아질산염( $\text{NaNO}_2$ 로 계산) <sup>b</sup> /(mg/kg) ≤ | 2         |           |

<sup>a</sup> 채소 및 과일 첨가 제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sup>b</sup> 우유 기반 제품에만 적용한다.

#### 4.7 진균독소 제한량

〈표 8〉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표 8〉 진균독소 제한량(분말 상태의 제품으로 계산)

|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검사방법      |
|--------------------------------------------|-----------|-----------|
| 아플라톡신M1 또는 아플라톡신B1 <sup>a</sup> /(μg/kg) ≤ | 0.5       | GB5009.24 |

<sup>a</sup> 아플라톡신M1 제한량은 우유류 및 유단백 제품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에 적용  
아플라톡신B1 제한량은 콩류 및 대두 단백 제품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에 적용

#### 4.8 미생물 제한량

분말 형태 영아 조제식품의 미생물 지표는 〈표 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액상 영아 조제식품의 미생물 지표는 상업적 무균성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GB/T 4789.26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함

〈표 9〉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mL)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균락총수 <sup>b</sup> | 5                          | 2 | 1000  | 10000 |
| 대장균군              | 5                          | 2 | 10    | 100   |
| 살모넬라균             | 5                          | 0 | 0/25g | -     |

<sup>b</sup> 활성균종(호기성균 및 혐기균)을 첨가한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제품 중 활성 프로바이옥스의 활성균수는  $\geq 106\text{CFU/g (mL)}$ 이어야 함)

#### 4.9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4.9.1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품질은 관련 안전표준과 규정을 따라야 함

4.9.2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사용은 GB2760과 GB1488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4.10 우레아제 활성

대두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우레아제 활성은 <표 10>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0> 우레아제 활성 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방법                      |
|---------------|----|---------------------------|
| 우레아제 활성 정성 측정 | 음성 | GB/T 5413.31 <sup>a</sup> |

<sup>a</sup> 액상 영아 조제식품의 샘플 추출량은 건조물질 함량에 따라 환산

### 5. 기타

#### 5.1 라벨

5.1.1 제품 라벨은 GB1343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영양소와 선택 성분 함량 표시에는 ‘100킬로줄(100kJ)’ 함량을 추가해야 함

5.1.2 라벨에 제품의 유형, 생후 6~12개월 영아 조제식품 또는 생후 6~12개월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의 속성(예: 우유 기반 또는 대두 기반 제품 및 제품 성상) 및 적용 연령을 명시해야 함. 생후 6~12개월 영아 조제식품에는 반드시 “보조식품을 첨가하여 배합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함

#### 5.2 사용 설명

5.2.1 제품 사용, 조제 지도 설명 및 그림, 저장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라벨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함. 포장 최대면적이 100cm<sup>2</sup>보다 작거나 제품 질량이 100g보다 적을 경우 그림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5.2.2 설명란에 부적절한 조제 및 사용으로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경고 문구로 명시해야 함

#### 5.3 포장

식품용 또는 순도≥99.9%의 이산화탄소 및(또는) 질소 가스를 포장 매개물로 사용 가능함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0769-2010 婴幼儿谷物辅助食品(영유아 곡류 보조식품)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아와 유아가 섭취하는 영유아 곡류 보조식품에 적용함

2. 참고 문헌

본 가이드북에서는 세부 내용 생략

3. 용어 및 정의

3.1 영아 infant

생후 0~12개월의 사람

3.2 유아 young children

생후 12~36개월의 사람

3.3 영유아 곡류 보조식품 cereal-based complementar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1종 혹은 여러 종의 곡물(예: 소맥, 쌀, 보리, 귀리, 호밀, 옥수수 등)을 주원료로 하고 곡물이 건조물질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정 영양강화제(혹은)와 기타 부원료를 첨가하여, 6개월 이상의 영아와 유아의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된 보조 식품

4. 제품분류

4.1 영유아 곡물 보조식품

우유 혹은 기타 단백질을 함유한 액체에 타(풀어) 섭취하기에 적합한 영유아 곡류보조 식품

4.2 영유아 고단백 곡물보조식품

고단백질원료를 첨가한 후 물 혹은 기타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액체에 타(풀어) 섭취하기에 적합한 영유아 곡류보조 식품

## 4.3 영유아 생(生)곡물보조식품

끓이거나 삶은 후 바로 섭취가 가능한 영유아 곡류보조식품

## 4.4 영유아과자 혹은 기타 영유아 곡류보조식품

바로 섭취가 가능하거나 혹은 분쇄후 물, 우유 혹은 기타 액체에 타(풀어) 섭취하기에 적합한 영유아 곡류보조 식품

## 5. 기술 요구

## 5.1 원료 요구

제품 중 사용된 모든 원료는 상응하는 안전표준과(또는)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영아의 안전, 영양수요 충족을 보장해야 하며 영아의 영양과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해선 안 됨

경화유지 사용 불가

방사선 조사처리 원료 사용 불가

## 5.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
| 색, 광택 | 제품 고유의 특성                              |
| 맛, 냄새 | 제품 고유의 특성                              |
| 조직 상태 | 제품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정상 시력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용해성   | 제품 고유의 특성                              |

5.3 기본적인 영양성분 지표: 제품 중 기본 영양성분 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기본적인 영양성분 지표

| 항목                                                 |             | 지표                    |                           |                           |                                                |           |
|----------------------------------------------------|-------------|-----------------------|---------------------------|---------------------------|------------------------------------------------|-----------|
|                                                    |             | 영유아<br>곡물<br>보조식품     | 영유아<br>고단백<br>곡물<br>보조식품  | 영유아<br>생(生)<br>곡물<br>보조식품 | 영유아과<br>자 혹은<br>영유아<br>곡물<br>보조식품 <sup>a</sup> | 검사방법      |
| 열량 <sup>b</sup> /(kJ/100g(kcal/100g))              | ≥           | 1250(299)             | 1506(360)                 | 1250(299)                 | 1250(299)                                      | -         |
| 단백질/(g/100kJ(g/100kcal))                           |             | ≥0.33<br>(1.4)        | 0.66~1.30<br>(2.8~5.4)    | ≥0.33<br>(1.4)            | 0.33~1.30<br>(1.4~5.4)                         | GB5009.5  |
| 지방/(g/100kJ(g/100kcal))                            | ≤           | 0.8(3.3)              | 1.1(4.6)                  | 0.8(3.3)                  | 0.8(3.3)                                       | GB5413.3  |
| 그중 C: 리놀레산(g/100kJ)<br>라우르산/(%총지방)<br>미리스탄산/(%총지방) | ≤<br>≤<br>≤ | -<br>-<br>-           | 0.07~0.29<br>15.0<br>15.0 | -<br>-<br>-               | -<br>-<br>-                                    | GB5413.27 |
| 비타민A/<br>(μgRE/100kJ(μgRE/100kcal))                |             | 14~43(59~180)         |                           |                           | -                                              | GB5413.9  |
| 비타민D/(μg/100kJ(μg/100kcal))                        |             | 0.25~0.75(1.05~3.14)  |                           |                           | -                                              |           |
| 비타민B1/(μg/100kJ(μg/100kcal))                       | ≥           | 12.5(52.3)            |                           |                           |                                                | GB5413.11 |
| 칼슘/(mg/100kJ(mg/100kcal))                          | ≥           | 12.0(50.2)            | 20.0(83.7)                | 12.0(50.2)                | 12.0(50.2)                                     | GB5413.21 |
| 철분/(mg/100kJ(mg/100kcal))                          |             | 0.25~0.50 (1.05~2.09) |                           |                           | -                                              |           |
| 아연/(mg/100kJ(mg/100kcal))                          |             | 0.17~0.46 (0.71~1.92) |                           |                           | -                                              |           |
| 나트륨/(mg/100kJ(mg/100kcal))                         | ≤           | 24.0 (100.4)          |                           |                           |                                                |           |

<sup>a</sup> 영유아 과자 혹은 기타 영유아 곡물 보조식품에 비타민 A, 비타민 D, 철분, 아연 성분을 첨가하고자 할 경우 그 함량은 해당 표식에서 규정한 기타 분류의 성분 함량 요구에 부합해야 함(즉, 기타 3가지 분류는 반드시 해당 4가지 성분을 제한량 범위 내에서 첨가해야 함. 하지만 영유아 과자 혹은 기타 영유아 곡물 보조식품은 필수 첨가해야 하는 성분이 아니며, 첨가하고자 할 경우 기타 분류 제한량을 참고)

<sup>b</sup> 열량 수치 계산법: 100g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함량을 계산하여, 각 17kJ, 37kJ, 17kJ(식이섬유의 열량계수는 탄수화물 열량계수의 50%로 계산)을 곱한 후 값을 더하여 얻어지는 100g당 kJ열량 수치로, kcal로 계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4.184로 나눈다. 그중 탄수화물의 함량 A1은 공식 (1)에 따라 산출함

$$A1 = 100 - (A2 + A3 + A4 + A5 + A6) \dots\dots\dots(1)$$

공식 중:

A1 - 탄수화물의 함량, g/100g

A2 - 단백질의 함량, g/100g

A3 - 지방의 함량, g/100g

A4 - 수분의 함량, g/100g

A5 - 회분의 함량, g/100g

A6 - 식이섬유의 함량, g/100g

C 지방이≥0.8g/100kJ인 제품에 한해 적용함

#### 5.4 선택 가능한 영양성분 지표

기본 영양성분 지표 외, 제품에 <표 3> 중 1종 이상의 성분을 첨가하거나 라벨에 표시하고자 할 경우, 그 함량은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만약 <표 2>, <표 3> 외의 기타 물질을 제품에 첨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관 규정을 따라야 함

<표 3> 선택 가능한 영양성분 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방법      |
|------------------------------|----------------------|-----------|
| 비타민E/(mg/100kJ(mg/100kcal))  | 0.08~1.20(0.33~5.02) | GB5413.9  |
| 비타민B2/(μg/100kJ(μg/100kcal)) | ≥ 13.0(54.4)         | GB5413.12 |
| 비타민B6/(μg/100kJ(μg/100kcal)) | ≥ 8.4(35.1)          | GB5413.13 |
| 비타민12/(μg/100kJ(μg/100kcal)) | ≥ 0.02(0.08)         | GB5413.14 |
| 니코틴산/(μg/100kJ(μg/100kcal))  | ≥ 83.7(350.2)        | GB5413.15 |
| 엽산/(μg/100kJ(μg/100kcal))    | ≥ 1.2(5.0)           | GB5413.16 |
| 판토텐산/(μg/100kJ(μg/100kcal))  | ≥ 50.4(210.9)        | GB5413.17 |
| 비타민C/(mg/100kJ(mg/100kcal))  | ≥ 1.4(5.9)           | GB5413.18 |
| 비오틴/(μg/100kJ(μg/100kcal))   | ≥ 0.17(0.71)         | GB5413.19 |
| 인/(mg/100kJ(mg/100kcal))     | 8.4~30.0(35.1~125.5) | GB5413.22 |
| 요오드/(μg/100kJ(μg/100kcal))   | 1.4~8.8(5.9~36.8)    | GB5413.23 |
| 칼륨/(mg/100kJ(mg/100kcal))    | 13~66(56~278)        | GB5413.21 |

5.5 만약 제품에 탄수화물(지당, 과당, 포도당, 포도 시럽 설탕이나 꿀을 포함)을 첨가하면 탄수화물 첨가 제한량은 <표 4>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4> 탄수화물 첨가 제한량

| 항목                                  | 지표             |                 |                            | 검사방법            |
|-------------------------------------|----------------|-----------------|----------------------------|-----------------|
|                                     | 영유아 곡물<br>보조식품 | 영유아고단백<br>물보조식품 | 영유아과자<br>혹은 영유아<br>곡물 보조식품 |                 |
| 탄수화물첨가총량/<br>(g/100kJ(g/100kcal)) ≤ | 1.8(7.5)       | 1.2(5.0)        | 1.8(7.5)                   | 배합<br>원료로<br>계산 |
| 과당첨가량/<br>(g/100kJ(g/100kcal)) ≤    | 0.9(3.8)       | 0.6(2.5)        | 0.9(3.8)                   |                 |

## 5.6 기타지표

〈표 5〉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5〉 기타지표

| 항목          | 지표                |                          |                       |                                             | 검사방법     |
|-------------|-------------------|--------------------------|-----------------------|---------------------------------------------|----------|
|             | 영유아<br>곡물보조<br>식품 | 영유아<br>고단백<br>곡물<br>보조식품 | 영유아<br>생(生)곡물<br>보조식품 | 영유아 과자<br>혹은 영유아<br>곡물<br>보조식품 <sup>a</sup> |          |
| 수분/(%)      | ≤                 | 6.0                      | 13.5                  | 6.0                                         | GB5009.3 |
| 불용성식이섬유/(%) | ≤                 | 5.0                      |                       |                                             | GB5413.6 |

<sup>a</sup> 수분 지표는 기타영유아 곡물 보조식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 5.7 오염물질 제한량

〈표 6〉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6〉 오염물질 제한량

| 검사 항목                                  |                        |   | 지표(mg/kg) | 검사방법        |
|----------------------------------------|------------------------|---|-----------|-------------|
| 납                                      | 어류, 간(肝)류, 채소류가 첨가된 제품 | ≤ | 0.30      | GB5009.12   |
|                                        | 기타 제품                  | ≤ | 0.20      |             |
| 무기비소                                   | 조류(藻類)가 첨가된 제품         | ≤ | 0.30      | GB/T5009.11 |
|                                        | 기타 제품                  | ≤ | 0.20      |             |
| 질산염 <sup>a</sup> (NaNO <sub>3</sub> )  |                        |   | ≤         | GB5009.33   |
| 아질산염 <sup>b</sup> (NaNO <sub>2</sub> ) |                        |   | ≤         |             |
|                                        |                        |   | 2         |             |

<sup>a</sup>: 질산염 지표는 채소와 과일을 첨가한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sup>b</sup>: 아질산염 지표는 콩류를 첨가한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 5.8 진균독소 제한량

〈표 7〉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7〉 진균독소 제한량

| 검사 항목           | 지표 | 검사방법      |
|-----------------|----|-----------|
| 아플라톡신B1/(μg/kg) | ≤  | 0.5       |
|                 |    | GB5009.24 |



## 5.9 미생물 제한량

〈표 8〉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8〉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   |       |       | 검사방법              |
|--------------------------|------------------|---|-------|-------|-------------------|
| 항목                       | n                | c | m     | M     |                   |
| 균락총수 <sup>b</sup> /CFU/g | 5                | 2 | 1000  | 10000 | GB4789.2          |
| 대장균군/CFU/g               | 5                | 2 | 10    | 100   | GB4789.3<br>평판계수법 |
| 살모넬라균/CFU/g              | 5                | 0 | 0/25g | -     | GB4789.4          |

<sup>b</sup> 영유아생(生)곡물보조식품과 활성유산균종(호기성 및 혐기성 프로바이오틱)을 첨가한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음(제품의 활성유산균의 활성균수는  $\geq 106\text{CFU/g(mL)}$ 이어야 함)

## 5.10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5.10.1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품질은 관련 안전표준과 규정을 따라야 함

5.10.2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사용은 GB2760과 GB1488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5.11 우레아제 활성

대두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우레아제 활성은 〈표 9〉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9〉 우레아제 활성 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방법                      |
|---------------|----|---------------------------|
| 우레아제 활성 정성 측정 | 음성 | GB/T 5413.31 <sup>a</sup> |

<sup>a</sup> 액상 영아 조제식품의 샘플 추출량은 건조물질 함량에 따라 환산

## 6. 기타

6.1 제품 라벨은 GB13432 의 규정에 따라 영양성분표에 "100킬로줄(100kJ)" 함량의 표시를 추가해야 한다.

6.2 라벨에는 4.1~4.4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유형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ex) "영유아 고단백질곡물보조식품" 등

6.3 영유아 곡물 보조식품 라벨에는 "우유나 단백질을 함유하는 액체에 타서 섭취" 또는 유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 2018년 1~10월 질검총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1월  | 2       | 0   | 0% |
| 2월  | 2       | 0   | 0% |
| 3월  | 1       | 0   | 0% |
| 5월  | 9       | 0   | 0% |
| 6월  | 2       | 0   | 0% |
| 7월  | 26      | 0   | 0% |
| 8월  | 43      | 0   | 0% |
| 9월  | 2       | 0   | 0% |
| 10월 | 2       | 0   | 0% |
| 합계  | 89      | 0   | 0%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국가 일부 발체)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1월 | 1901109000 | **대만산 유산균<br>배아미분(사과배맛)   | 라벨 불합격                | 상해  |
|    | 1901109000 | **대만산 귀리 배아미분<br>(바나나비트맛) | 라벨 불합격                | 상해  |
| 2월 | 1901101000 | **스위스산 영유아<br>조제분유 2종     | 콜린 함량 국가표준 불합격        | 강서성 |
| 3월 | 1901109000 | **이탈리아산 영유아<br>바나나 푸레     | 식품첨가제 비타민C<br>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5월 | 1901090000 | **이탈리아산 영유아<br>종합 과일푸레    | 식품첨가제 비타민C<br>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 1901109000 | **이탈리아산 베이킹<br>누들 8종      | 식품첨가제 젖산칼슘<br>초과범위 사용 | 강소성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6월 | 1901090000 | **대만산 플레인<br>치아발유기        | 아연, 철 함량 국가표준 불합격                   | 하문  |
|    | 1901109000 | **대만산 치아발유기<br>(우유곡물)     | 아연, 철 함량 국가표준 불합격                   | 하문  |
| 7월 | 1901109000 | **이탈리아산 영양미분<br>26종       | 아연, 칼슘, 철, 비타민D, 비타민A함량<br>국가표준 불합격 | 절강성 |
| 9월 | 1901109000 | **이탈리아산 곡물과자<br>4종(영유아과자) | 식품첨가제 제이인산나트륨<br>초과범위 사용            | 절강성 |

#### ■ 불합격 사례 분석

##### - 영양소 국가표준 요구사항 미달/초과

- 영유아 조제분유, 곡물 보조식품은 모두 국가표준에 세부 영양소에 관한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제출 서류상 합격했다고 해도 실제 리스크 검사에서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전 배합에 관한 정확한 확인 및 실 생산시 이를 준수하여 생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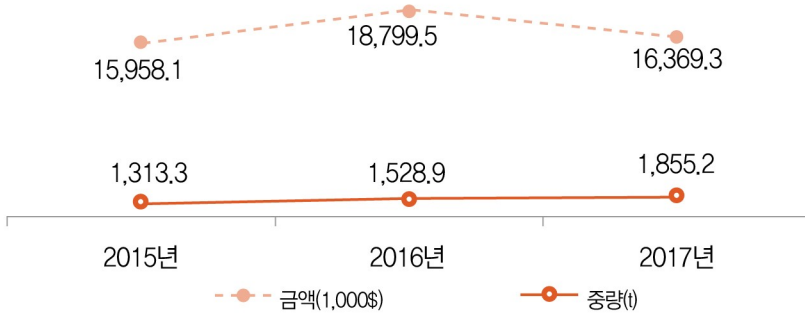
##### - 라벨 불합격

- 국가표준별로 라벨 필수표기 요구사항이나 기재 불가한 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 사전 라벨링을 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국가표준별 상세 영양성분 요구사항 검토                        |
| 2. 중문라벨      | 필수기재사항/기재 불가사항 확인<br>신정책 시행에 따른 제품 등록번호 필수기재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조제분유의 생산공장 중국 등록 및 최신 정책동향 참고                |
| 4. HS CODE   | -                                            |

## 사. 채소류

### ■ 채소류 121 수출실적 ■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1) 김치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식물검역증(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2005.9999.90 초산(식초)이 아닌 것으로 제조한 기타 채소

관세율 보기표 1

|              |                      |              |
|--------------|----------------------|--------------|
| 1. 김치        | HS CODE              | 2005.9999    |
|              | 기준관세율(%)/2018 MFN(%) | 25/5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25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23.75        |
| 2년차          | 2016년                | 22.50        |
| 3년차          | 2017년                | 21.25        |
| 4년차          | 2018년                | 20.00        |
| 5년차          | 2019년                | 18.75        |
| 6년차          | 2020년                | 17.50        |
| 7년차          | 2021년                | 16.25        |
| 8년차          | 2022년                | 15.00        |
| 9년차          | 2023년                | 13.75        |
| 10년차         | 2024년                | 12.50        |
| 11년차         | 2025년                | 11.25        |
| 12년차         | 2026년                | 10.00        |
| 13년차         | 2027년                | 8.75         |
| 14년차         | 2028년                | 7.50         |
| 15년차         | 2029년                | 6.25         |
| 16년차         | 2030년                | 5.00         |
| 17년차         | 2031년                | 3.75         |
| 18년차         | 2032년                | 2.50         |
| 19년차         | 2033년                | 1.25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검역 요구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14-2015 酱腌菜(절임채소)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절임채소에 적용함

2. 용어 및 정의

2.1 절임채소

신선한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염장 혹은 장에 절이는 과정을 거쳐 제조된 각종 채소 제품으로, 장절임채소, 염장채소, 간장절임채소, 당절임채소, 초절임채소, 당초절임채소, 새우기름 절임채소, 발효산채(酸菜) 등이 있음

3. 기술 요구

3.1 원료 요구

원료는 신선해야 하며,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3.2 감관 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 구                                           | 검사 방법                                                              |
|-------|-----------------------------------------------|--------------------------------------------------------------------|
| 맛, 냄새 | 이취가 없어야 함                                     | 샘플을 깨끗한 백색 정반 위에 두고 자연광 아래에서 색과 상태를 점검하고, 냄새를 맡아본다. 입을 행군 후 맛을 본다. |
| 상태    | 곰팡이가 슬거나 백색 서태가 끼지 않아야 하며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3.3 오염물질 제한량

3.3.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 중 절임채소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제한량(mg/kg) |
|-------|------------|
| 납     | 1.0        |
| 아질산염  | 20         |

### 3.4 미생물 제한량

3.4.1 병원균 제한량은 GB29921 중 즉석과채제품(장염채류포함)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CFU/g)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살모넬라균       | 5                      | 0 | 0   | -    |
| 황색포도상구균     | 5                      | 1 | 100 | 1000 |
| 대장균 O157:H7 | 5                      | 0 | 0   | -    |

n: 동일 로트로 샘플링 한 시료의 수량

c: m의 제한수치 초과 허용 시료의 수(단, M의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

m: 검출기준 제한수치

M: 어떤 시료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검출 제한수치(시료 1개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불합격)

3.4.2 미생물 제한량은 <표 2>의 규정에도 부합해야 함

<표 2> 미생물 제한량

| 항목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   |    |     |
|------------------------------|------------------|---|----|-----|
|                              | n                | c | m  | M   |
| 대장균군(CFU/g(mL)) <sup>a</sup> | 5                | 2 | 10 | 103 |

<sup>a</sup> 비열균발효형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3.5 식품첨가제

식품첨가제는 GB2760 중 절임채소 혹은 발효채소 제품의 규정을 따라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 사용 가능여부 및 제한량 부합여부 사전 심의                                                                             |
| 2. 중문라벨          | 평창방지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중문라벨에 주의 문구 기재                                                                           |
| 3. 통관서류/<br>검역항목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하는 “식물검역증” 첨부<br>※ 2016년 7월부터 김치의 식물검역증 관련 통관 이슈 발생, 한국에서는 화물 수출 후 보충발급이 불가하므로 선적서류 사전 준비에 유의 |
| 4. HS CODE       | -                                                                                                          |

## (2) 채소주스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2009.8920 채소주스(즙)
- 2009.9090 혼합채소주스(즙)

■ 관세율 보기표 1 ■

| 1. 채소주스, 혼합채소주스 | HS CODE                | 2009.8920<br>2009.9090 |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5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5(15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33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8.67                  |
| 2년차             | 2016년                  | 17.33                  |
| 3년차             | 2017년                  | 16.00                  |
| 4년차             | 2018년                  | 14.67                  |
| 5년차             | 2019년                  | 13.33                  |
| 6년차             | 2020년                  | 12.00                  |
| 7년차             | 2021년                  | 10.67                  |
| 8년차             | 2022년                  | 9.33                   |
| 9년차             | 2023년                  | 8.00                   |



|                 |                        |                        |
|-----------------|------------------------|------------------------|
| 1. 채소주스, 혼합채소주스 | HS CODE                | 2009.8920<br>2009.909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5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5(15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33                   |
| 10년차            | 2024년                  | 6.67                   |
| 11년차            | 2025년                  | 5.33                   |
| 12년차            | 2026년                  | 4.00                   |
| 13년차            | 2027년                  | 2.67                   |
| 14년차            | 2028년                  | 1.33                   |
| 15년차            | 2029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2009.8920: 10%         |

#### ■ 검역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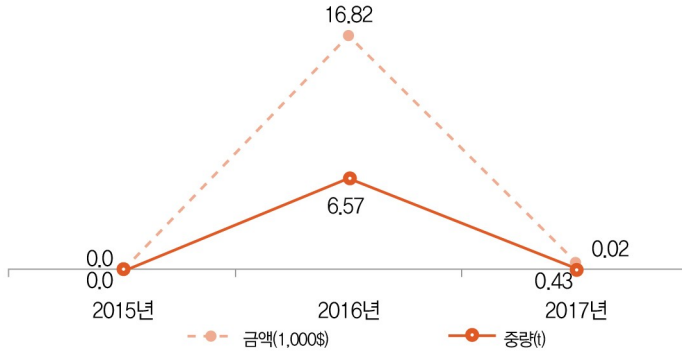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7101-2015 饮料(음료)

※ 해당 국가표준은 음료 베이스, 과채주스, 고형 음료, 일반 음료에 통합 적용되므로 음료류의 국가표준과 동일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 사용가능 여부 및 제한량 부합여부 사전 심의 특이, 채소 중 신식품원료나 신원료를 사용할 경우 원료 규정을 확인 후 수출을 진행해야 함 |
| 2. 종문라벨      | 신식품원료가 포함되었을 경우 필수 기재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식용제한량 등에 관한 문구 기재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보관온도에 따라 대장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수출시 보관온도와 수입통관시 현지 바이어에 운송과 보관 온도에 관해 사전 통지      |
| 4. HS CODE   | -                                                                                 |

## 아. 버섯류

### ■ 버섯류 332 수출실적 ■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1)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식물검역증(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0709.5930 팽이버섯
- 0709.5990 기타 버섯

관세율 보기표 1

|                |                        |                        |
|----------------|------------------------|------------------------|
| 1. 팡이버섯, 새송이버섯 | HS CODE                | 0709.5930<br>0709.599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3/13                  |
|                | 증치세율(%)                | 10                     |
|                | FTA 양허조건               | 10(1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3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1.70                  |
| 2년차            | 2016년                  | 10.40                  |
| 3년차            | 2017년                  | 9.10                   |
| 4년차            | 2018년                  | 7.80                   |
| 5년차            | 2019년                  | 6.50                   |
| 6년차            | 2020년                  | 5.20                   |
| 7년차            | 2021년                  | 3.90                   |
| 8년차            | 2022년                  | 2.60                   |
| 9년차            | 2023년                  | 1.30                   |
| 10년차           | 2024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 검역 요구

- 신선/냉장 버섯류는 식물원성식품으로 중국에서 허가한 품종과 수출허용 국가 명단에 팡이버섯, 아가리쿠스속 버섯, 새송이버섯으로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7096-2014 食用菌及其制品(식용균 및 그 제품)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식용균 및 그 제품에 적용함

2. 용어 및 정의

2.1 식용균

식용 가능한 대형 진균으로, 대부분 양송이, 표고버섯, 풀버섯, 그물버섯 등의 담자균, 일부는 곰보버섯, 송로버섯 등의 자낭균이다.

2.2 식용균제품

식용균을 주원료로 하여 일정 공정을 거쳐 제조된 식품으로 건조된 식용균제품, 절임식용균제품, 즉석식용균 제품 등이 있다.

2.2.1 건조 식용균제품

식용균을 주원료로 하여, 전처리,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식용균제품

2.2.2 절임 식용균제품

식용균을 주원료로 하여, 전처리, 절임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식용균제품

2.2.3 즉석 식용균제품

식용균을 주원료로 하여 일정 공정을 거쳐 제조된 바로 식용이 가능한 식용균제품

3. 기술 요구

3.1 원료 요구

원료는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3.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방법                                                            |
|-------|-------------------------------------------------------------|-----------------------------------------------------------------|
| 색, 광택 | 제품 고유의 색과 광택                                                | 샘플을 취해 백색 정반에 두고, 자연광 아래에서 색과 상태를 관찰한다. 냄새를 맡아보고 입을 행군 후 맛을 본다. |
| 맛, 냄새 | 제품 고유의 특유의 맛, 냄새                                            |                                                                 |
| 상태    | 제품 고유의 상태, 정상시력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곰팡이가 슬거나 벌레 먹은 흔적이 없어야 함 |                                                                 |

### 3.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방법          |
|----------------|------|---------------|
| 수분/(g/100g)    |      |               |
| 표고버섯 건조제품 ≤    | 13   | GB5009.3      |
| 흰목이버섯 건조제품 ≤   | 15   |               |
| 기타식용균 건조제품 ≤   | 12   |               |
| 본크릭산 / (mg/kg) |      |               |
| 흰목이버섯 및 그 제품 ≤ | 0.25 | GB/T 5009.189 |

### 3.4 오염물질 제한량

3.4.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mg/kg) |
|----------------------|------------------|
| 납(식용균 및 식용균제품)       | 1.0              |
| 카드뮴(신선식용균_표고/희송용 제외) | 0.2              |
| 총 수은(식용균 및 식용균제품)    |                  |
| 총 비소(식용균 및 식용균제품)    |                  |

### 3.5 농약 잔류량 제한량

농약 잔류량 제한량은 GB2763의 식용균 규정을 따라야 함

| 항목               | 최대 잔류량(mg/kg) |
|------------------|---------------|
| 2,4-D 및 2,4-D Na | 0.1           |
| chlorothalonil   | 5             |
| diflubenzuron    | 0.3           |

| 항목                                                 | 최대 잔류량(mg/kg) |
|----------------------------------------------------|---------------|
| mancozeb                                           | 1             |
| cyfluthrin 및 beta-cyfluthrin                       | 0.3           |
| flucythrinate                                      | 0.2           |
| procymidone                                        | 5             |
| emamectin benzoate                                 | 0.05 (임시제한량)  |
| dimethoate                                         | 0.5 (임시제한량)   |
| cyhalothrin 및 lambda-cyhalothrin                   | 0.5           |
| permethrin                                         | 0.1           |
| cypermethrin 및 beta-cypermethrin                   | 0.5           |
| malathion                                          | 0.5           |
| prochloraz 및 prochloraz-manganese chloride complex | 2             |
| fenvalerate 및 esfenvalerate                        | 0.2           |
| amitraz                                            | 0.5           |
| penoxsulam                                         | 0.1           |
| deltamethrin                                       | 0.2           |

### 3.6 미생물 제한량

즉석식용균제품의 병원균 제한량은 GB29921 중 즉석식용 과채제품류의 규정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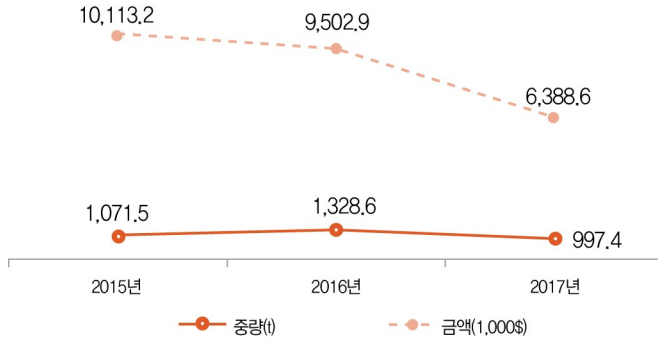
### 3.7 식품첨가제

식품첨가제 사용은 GB276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성분        | 허가된 품종에 한해 수출 가능하므로 유의                                           |
| 중문라벨      | 비닐포장하여 수출할 경우 예포장식품 라벨 통칙에 의거 라벨 사전 제작                           |
| 통관서류/검역항목 | 식물검역증 제출<br>신선버섯류는 유통기한이 짧아 신속통관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서류의 오류나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함 |
| HS CODE   | -                                                                |

## 자. 코코아류

### 코코아류 152 수출실적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1) 초콜릿과 기타 코코아 조제품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2) HS CODE 및 관세율

-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 1806.3100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 1806.3200 속을 채우지 않은 것
- 1806.9000 기타

■ 관세율 보기표 1 ■

| 1. 속을 채운 초콜릿,<br>기타초콜릿 조제품 | HS CODE                | 1806.3100<br>1806.9000 |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8/8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5(15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0.53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7.47                   |
| 2년차                        | 2016년                  | 6.93                   |
| 3년차                        | 2017년                  | 6.40                   |
| 4년차                        | 2018년                  | 5.87                   |
| 5년차                        | 2019년                  | 5.33                   |
| 6년차                        | 2020년                  | 4.80                   |
| 7년차                        | 2021년                  | 4.27                   |
| 8년차                        | 2022년                  | 3.73                   |
| 9년차                        | 2023년                  | 3.20                   |
| 10년차                       | 2024년                  | 2.67                   |
| 11년차                       | 2025년                  | 2.13                   |
| 12년차                       | 2026년                  | 1.60                   |
| 13년차                       | 2027년                  | 1.07                   |
| 14년차                       | 2028년                  | 0.53                   |
| 15년차                       | 2029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6.4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2. 속을 채우지 않은<br>초콜릿 | HS CODE                | 1806.32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0/10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5(15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0.67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9.33         |
| 2년차                 | 2016년                  | 8.67         |
| 3년차                 | 2017년                  | 8.00         |
| 4년차                 | 2018년                  | 7.33         |
| 5년차                 | 2019년                  | 6.67         |
| 6년차                 | 2020년                  | 6.00         |
| 7년차                 | 2021년                  | 5.33         |
| 8년차                 | 2022년                  | 4.67         |
| 9년차                 | 2023년                  | 4.00         |
| 10년차                | 2024년                  | 3.33         |
| 11년차                | 2025년                  | 2.67         |
| 12년차                | 2026년                  | 2.00         |
| 13년차                | 2027년                  | 1.33         |
| 14년차                | 2028년                  | 0.67         |
| 15년차                | 2029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7.7          |

■ 검역 요구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9678.2-2014 巧克力、代可可脂巧克力及其制品  
(초콜릿, 코코아버터 대체유지 초콜릿 및 관련 제품)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초콜릿, 코코아버터 대체 유지 초콜릿 및 관련 제품에 적용됨

2. 용어 및 정의

2.1 초콜릿

코코아 제품(코코아버터, 코코아 고형물 또는 코코아매스/초콜릿즙, 코코아케이크, 코코아파우더) 그리고(또는) 백설탕을 주요 원료로 하여 유제품, 식품첨가제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특정 공정을 거쳐 제조된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식품

2.2 초콜릿 제품

초콜릿과 기타 식품을 일정 비율로 하여 특정 공정을 거쳐 제조된 상온 하 고체상태, 또는 반고체 상태인 식품

2.3 코코아버터 대체 유지 초콜릿

백설탕, 코코아버터 대체 유지 등을 주원료로 하여(배합원료로 계산하여 코코아 버터 대체 유지 첨가량이 5%를 초과) 코코아제품(코코아버터, 코코아 고형물 또는 코코아매스/초콜릿즙, 코코아케이크, 코코아파우더)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특정 공정을 거쳐 제조된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초콜릿 풍미와 형태를 갖춘 식품

2.4 코코아버터 대체 유지 초콜릿 제품

코코아버터 대체 유지 초콜릿과 기타 식품을 일정한 비율로 하여 특정 공정을 거쳐 제조된 상온 하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인 식품

2.5 코코아버터

코코아콩의 지방

## 2.6 코코아버터 대체 유지

코코아버터를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할 수 있으며 코코아에서 유래하지 않은 식물유지

## 3. 기술 요구

### 3.1 원료 요구

원료는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3.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방법                                                                              |
|-------|-----------------------------------------------|-----------------------------------------------------------------------------------|
| 색, 광택 | 제품 고유의 색과 광택                                  | 적정량의 샘플을 취하여 50mL의 비커 또는 백색 쟁반에 두고, 자연광 아래에서 색과 상태를 관찰한다. 냄새를 맡아보고 입을 행군 후 맛을 본다. |
| 맛, 냄새 | 제품 고유의 특유의 맛, 냄새                              |                                                                                   |
| 상태    | 상온 하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를 유지하며 정상시력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3.3 오염물질 제한량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mg/kg) |
|---------------------------------|-------------------|
| 납<br>(코코아제품, 초콜릿 및 초콜릿제품과 설탕과자) | 0.5               |
| 총비소<br>(코코아제품, 초콜릿 및 초콜릿제품)     | 0.5               |

### 3.4 미생물 제한량

병원균 제한량은 GB29921의 규정에 따름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살모넬라균 / CFU/g | 5                | 0 | 0 | - |

### 3.5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3.5.1 식품첨가제 사용은 GB2760의 규정을 따라야 함

3.5.2 영양강화제 사용은 GB1488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4. 기타

4.1 코코아버터 대체 유지 첨가량이 5%를 초과한 제품의 경우 코코아버터 대체 유지 초콜릿으로 명명해야 함

4.2 초콜릿 성분 함량이 25% 미만인 제품을 초콜릿 제품이라 명명할 수 없음

### ■ 2018년 1~10월 질검총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1월 | 1       | 0   | 0% |
| 2월 | 2       | 0   | 0% |
| 3월 | 3       | 0   | 0% |
| 4월 | 1       | 0   | 0% |
| 5월 | 12      | 0   | 0% |
| 6월 | 2       | 0   | 0% |
| 7월 | 3       | 0   | 0% |
| 8월 | 10      | 0   | 0% |
| 9월 | 2       | 0   | 0% |
| 합계 | 36      | 0   | 0%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 국가 일부 발취)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1월 | 1806310000 | **독일산<br>너겟초콜릿제품      | 식품첨가제 착색제<br>carbon black<br>초과범위 사용 | 주해  |
| 2월 | 1806900000 | **호주산 초콜릿             | 식품첨가제 소산나트륨<br>초과범위 사용               | 해남  |
|    | 1806900000 | **호주산 초콜릿             | 식품첨가제 소산나트륨<br>초과범위 사용               | 해남  |
| 3월 | 1806310000 | **말레이시아산 건망고<br>초콜릿제품 | 라벨 불합격                               | 광동성 |
|    | 1806310000 | **말레이시아산 건딸기<br>초콜릿제품 | 라벨 불합격                               | 광동성 |
|    | 1806900000 | **벨기에산 초콜릿            | 식품첨가제 구연산 칼슘<br>초과범위 사용              | 해남  |
| 4월 | 1806900000 | **이탈리아산 초콜릿분말         | 유통기한 초과                              | 상해  |
| 5월 | 1806900000 | **인도네시아산 초콜릿          | 화물증서/실제화물 불일치                        | 광동성 |
| 6월 | 1806320000 | **호주산 우유초콜릿<br>구운 아몬드 | 화물증서/실제화물 불일치                        | 천진  |
|    | 1806900000 | **이탈리아산 초콜릿           | 라벨 불합격                               | 상해  |
| 8월 | 1806900000 | **일본산 말차맛 초콜릿         | 원산지 증서 미제출                           | 북경  |
|    | 1806200000 | **이탈리아산<br>블랙초콜릿제품    | 식품첨가제 초과범위 사용                        | 사천성 |

■ 제품 불합격 유형 ■

| 유형             | 건수 |
|----------------|----|
| 라벨 불합격         | 14 |
| 유통기한 초과        | 10 |
| 구비서류 제출 미비     | 5  |
| 식품첨가제 과다/초과 사용 | 7  |

## ■ 불합격 사례 분석

### - 라벨 불합격

- 초콜릿이나 기타 코코아 조제품은 배합 원료의 특성상 단계별로 첨가제가 조금씩 함유되어 있으며, 중문라벨에 성분 표기시 확장항목으로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글 포장지에 있는 기재사항을 그대로 번역하여 작성할 경우 라벨 불합격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전문 기관을 통해 성분검토와 라벨링을 진행한 후 수출을 진행해야 함

### - 식품첨가제 초과사용

- 2월 불합격된 호주산 초콜릿은 초산나트륨 초과사용으로 불합격 되었으며, 해당 첨가제는 복합조미료와 팽화식품에만 첨가 가능하므로 초콜릿 및 그 제품에 사용 불가함. 초콜릿에는 유화제나 기타 색소 등 식품첨가제가 다량 함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수출전 수출적합성 사전 심의 단계에서 식품첨가제의 첨가량을 정확하게 제공하여,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고, 생산시 실제 기준량을 준수하여 생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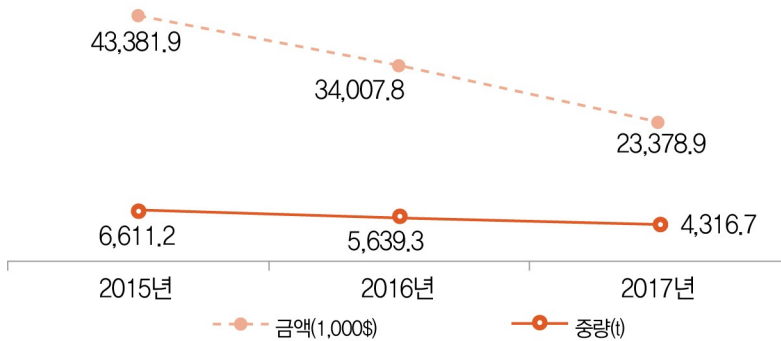
### - 구비서류 제출 미비

- 5~6월 불합격된 사례 중 실제 화물과 구비 증서의 불일치 사례는 위생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 등의 선적서류에 기재된 제품의 수량,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실제 화물과 불일치한 것으로 판명되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추정됨. 수출시 실물 출고 전 선적서류와 유통기한 및 패키징 수량이 일치하는지 점검 필요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사용가능 여부 사전 심의.<br>내용물을 채운 초콜릿 제품일 경우 사용된 과일이나 채소 등 원료 적합성 여부 심의 필수                                                   |
| 2. 중문라벨      | 초콜릿이 여러가지 맛이 한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 최종 부착되는 라벨에는 모든 제품의 성분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하절기에 수출을 진행할 경우 컨테이너 온도가 높고 운송 시간이 길어질 경우 내용물이 녹아 감관지표 부분에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고온이 지속되는 하절기에는 냉장이나 냉동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4. HS CODE   | -                                                                                                                                 |

## 차. 커피류

### ■ 커피류 151 수출실적 ■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1) 로스팅 커피원두/분말, 인스턴트커피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로스팅커피원두/분말은 식물검역증 제출(지역 CIQ별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음)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0901.2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로스팅 커피원두/분말
- 2101.1100 커피의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
- 2101.1200 인스턴트커피

관세율 보기표 1

|                |                        |              |
|----------------|------------------------|--------------|
| 1. 로스팅 커피원두/분말 | HS CODE                | 0901.21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5/10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0(1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5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3.50        |
| 2년차            | 2016년                  | 12.00        |
| 3년차            | 2017년                  | 10.50        |
| 4년차            | 2018년                  | 9.00         |
| 5년차            | 2019년                  | 7.50         |
| 6년차            | 2020년                  | 6.00         |
| 7년차            | 2021년                  | 4.50         |
| 8년차            | 2022년                  | 3.00         |
| 9년차            | 2023년                  | 1.50         |
| 10년차           | 2024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2. 커피 추출물, 에센스,<br>농축물 | HS CODE                | 2101.11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7/17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5(15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13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5.87        |
| 2년차                    | 2016년                  | 14.73        |
| 3년차                    | 2017년                  | 13.60        |
| 4년차                    | 2018년                  | 12.47        |
| 5년차                    | 2019년                  | 11.33        |
| 6년차                    | 2020년                  | 10.20        |
| 7년차                    | 2021년                  | 9.07         |
| 8년차                    | 2022년                  | 7.93         |
| 9년차                    | 2023년                  | 6.80         |
| 10년차                   | 2024년                  | 5.67         |
| 11년차                   | 2025년                  | 4.53         |
| 12년차                   | 2026년                  | 3.40         |
| 13년차                   | 2027년                  | 2.27         |
| 14년차                   | 2028년                  | 1.13         |
| 15년차                   | 2029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관세율 보기표 3 ■

|              |                        |              |
|--------------|------------------------|--------------|
| 3. 인스턴트커피    | HS CODE                | 2101.12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30/12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5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28.50        |
| 2년차          | 2016년                  | 27.00        |
| 3년차          | 2017년                  | 25.50        |
| 4년차          | 2018년                  | 24.00        |
| 5년차          | 2019년                  | 22.50        |
| 6년차          | 2020년                  | 21.00        |
| 7년차          | 2021년                  | 19.50        |
| 8년차          | 2022년                  | 18.00        |
| 9년차          | 2023년                  | 16.50        |
| 10년차         | 2024년                  | 15.00        |
| 11년차         | 2025년                  | 13.50        |
| 12년차         | 2026년                  | 12.00        |
| 13년차         | 2027년                  | 10.50        |
| 14년차         | 2028년                  | 9.00         |
| 15년차         | 2029년                  | 7.50         |
| 16년차         | 2030년                  | 6.00         |
| 17년차         | 2031년                  | 4.50         |
| 18년차         | 2032년                  | 3.00         |
| 19년차         | 2033년                  | 1.50         |
| 20년차         | 2034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검역 요구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7101-2015 饮料(음료)

※ 인스턴트커피의 경우 GB7101 음료 국가표준이 적용되며, 커피원두와 커피분말은 고형 음료로 분류되며 통용표준 중 해당 품목의 기준으로 검역 실시

■ 2018년 1~10월 질검총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1월 | 2       | 1   | 50% |
| 2월 | 2       | 0   | 0%  |
| 3월 | 1       | 0   | 0%  |
| 5월 | 1       | 0   | 0%  |
| 7월 | 5       | 0   | 0%  |
| 합계 | 11      | 1   | 9%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 국가 일부 사례 및 한국 제품 사례 발췌)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1월 | 0901210000 | **한국산 원두커피         | 라벨 불합격             | 상해  |
| 2월 | 2101120000 | **베트남산 귀리커피        | 라벨 불합격             | 광시성 |
|    | 2101120000 | **베트남산 귀리커피        | 라벨 불합격             | 광시성 |
| 5월 | 2101120000 | **말레이시아산 커피(고형음료)  | 화물증서/실제화물 불일치      | 광둥성 |
| 7월 | 2101120000 | **베트남산 커피 (고형음료)   | 식품첨가제 강황색소 초과범위 사용 | 광둥성 |
|    | 2101120000 | **대만산 인스턴트커피 음료 4종 | 라벨 불합격             | 하문  |

## ■ 불합격 사례 분석

### - 식품첨가제 초과사용

- 7월에 불합격된 베트남산 커피는 강황색소 첨가로 불합격되었으며,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GB2760-2014에서 규정한 첨가가능 품목에 커피가 없어 사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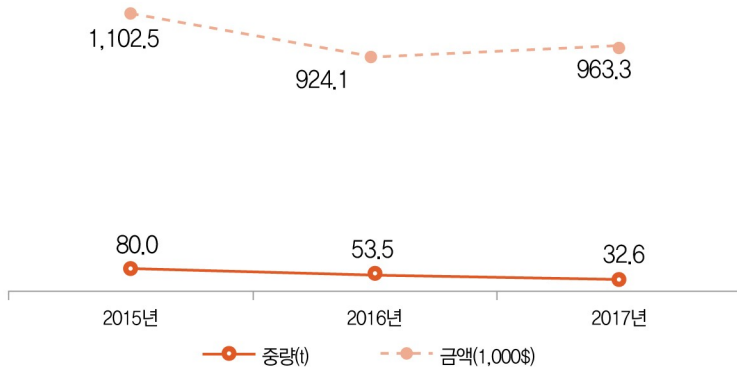
### - 라벨 불합격

- 1월 불합격된 한국산 커피는 라벨 불합격으로 최종 검역 불합격 처리 되었으며, 커피의 원산지, 유통기한 등 제품 관련 표기 사항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사용가능 여부 사전 심의                         |
| 2. 중문라벨      | 제품명에 원산국 표기시 커피원두의 원산지 별도 표기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일부 검역국 별로 로스팅된 커피에 대해서도 식물검역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 4. HS CODE   | 커피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커피향 음료와 같은 품목은 일반음료로 분류됨          |

## 카. 차류

### 차류 153 수출실적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1) 녹차 / 홍차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식물검역증(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차류(100% 녹차 잎으로 된 차, 혹은 분말)

※ 단순히 향을 가미하기 위한 향신료 유형의 식물이나 식품 첨가제의 미량 첨가의 경우에도 해당 품목으로 분류되며, 녹차성분이 일부 있고 다른 성분이 첨가된 형태의 녹차고형분 등은 2201로 분류됨

- 0902.1 녹차(3kg이하)

- 0902.2 그 밖의 녹차
- 0902.3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3kg 이하)
- 0902.4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관세율 보기표 1

|              |                        |              |
|--------------|------------------------|--------------|
| 1. 차류(녹차/홍차) | HS CODE                | 09.02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5/15        |
|              | 중치세율(%)                | 10           |
|              | FTA 양허조건               | 10(1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5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3.50        |
| 2년차          | 2016년                  | 12.00        |
| 3년차          | 2017년                  | 10.50        |
| 4년차          | 2018년                  | 9.00         |
| 5년차          | 2019년                  | 7.50         |
| 6년차          | 2020년                  | 6.00         |
| 7년차          | 2021년                  | 4.50         |
| 8년차          | 2022년                  | 3.00         |
| 9년차          | 2023년                  | 1.50         |
| 10년차         | 2024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7.5          |

■ 검역 요구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7101-2015 饮料(음료)

※ 녹차잎과 녹차분말은 고형음료로 해당 국가표준 음료의 국가표준과 통용표준 중 개별 품목별로 검역 항목이 적용됨

■ 2018년 1~10월 질검중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1월  | 30      | 0   | 0% |
| 6월  | 1       | 0   | 0% |
| 7월  | 4       | 0   | 0% |
| 8월  | 14      | 0   | 0% |
| 9월  | 5       | 0   | 0% |
| 10월 | 2       | 0   | 0% |
| 합계  | 26      | 0   | 0%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 국가 일부 발체)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6월 | 0902301000 | **대만산 차잎       | 라벨 불합격    | 복건성 |
| 7월 | 0902109000 | **영국산 녹차(티백)   | 관련 서류 미제출 | 영파  |
|    | 0902309000 | **영국산 홍차 3종    | 관련 서류 미제출 | 영파  |
| 8월 | 0902109000 | **스리랑카산 티백 녹차  | 관련 서류 미제출 | 상해  |
|    | 0902109000 | **일본산 말차(고형음료) | 관련 서류 미제출 | 북경  |
|    | 0902201000 | **독일산 화차       | 관련 서류 미제출 | 상해  |

## ■ 불합격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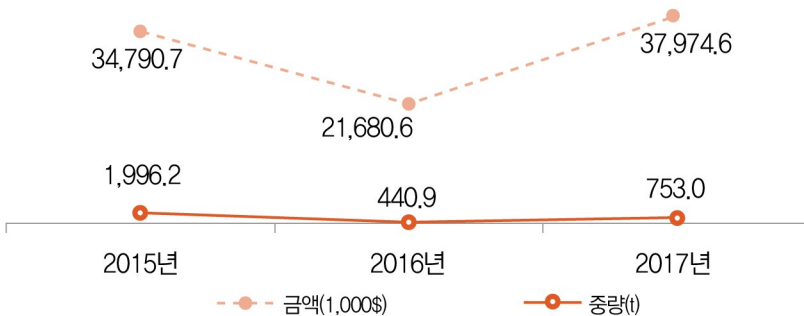
### - 관련 서류 미제출

- 찻잎의 가공 공정에 따라 최종 제품이 식물원성(源性)을 띠는 경우 식물검역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제품별 상세 검토가 필요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차의 원료가 중국에서 허가된 원료인지 확인                                           |
| 2. 중문라벨      | 예포장된 제품일 경우 사전 중문라벨 제작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식물검역증 제출                                                          |
| 4. HS CODE   | 차 분말이 약간만 함유된 기타 유형의 차류는 2202 일반음료로 분류되므로 제품 유형, 성분비율을 확인하여 사전 확정 |

## 타. 인삼류

### ■ 인삼류 155 수출실적 ■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1) 홍삼정, 홍삼음료, 인삼음료, 홍삼조제품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신고 HS CODE별로 식물검역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2106.9090 홍삼정(물에 희석하여 인삼차 등으로 응용이 가능한 유형)
- 1302.1990 인삼 추출물(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홍삼엑기스 등))
- 2202.9000 홍삼음료(물, 당 함량이 홍삼성분에 비해 더 많은 것, 홍삼 한뿌리가 들어간 것), 홍삼정(성분과 유형에 따라 홍삼음료로 분류될 수 있음)



- 2006.0090 홍삼정과와 절편
- (관세율 해석에 보면 2008.9990 혹은 2106.9090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으나 중국에서 “당절임 식품”으로 위생표준 적용을 위해 2006.0090으로 분류)

※ 홍삼 정과/절편 수입을 위해 국가표준 적용시 GB14884 당절임식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원료가 전통적인 의미의 채소나 과일이여야 하는데, 인삼과 홍삼 모두 전통적인 의미의 중약재로 해당 표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통용표준에도 적정 분류를 찾기가 어려워 검역 당국에서

수입을 불허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소량의 경우 협의 하에 수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검역 당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 홍삼캔디는 과자류 중 캔디류로 분류됨(1704.9000)

관세율 보기표 1

|              |                        |           |
|--------------|------------------------|-----------|
| 1. 홍삼정       | HS CODE                | 2106.909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12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PR-8      |
|              | 균등철폐세율(%)              | 0.32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9.68     |
| 2년차          | 2016년                  | 19.36     |
| 3년차          | 2017년                  | 19.04     |
| 4년차          | 2018년                  | 18.72     |
| 5년차          | 2019년                  | 18.40     |
| 아태무역협정(APTA) |                        | 18.4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2. 홍삼엑기스, 추출물 | HS CODE                | 1302.199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2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5 (15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33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8.67         |
| 2년차           | 2016년                  | 17.33         |
| 3년차           | 2017년                  | 16.00         |
| 4년차           | 2018년                  | 14.67         |
| 5년차           | 2019년                  | 13.33         |
| 6년차           | 2020년                  | 12.00         |
| 7년차           | 2021년                  | 10.67         |
| 8년차           | 2022년                  | 9.33          |
| 9년차           | 2023년                  | 8.00          |
| 10년차          | 2024년                  | 6.67          |
| 11년차          | 2025년                  | 5.33          |
| 12년차          | 2026년                  | 4.00          |
| 13년차          | 2027년                  | 2.67          |
| 14년차          | 2028년                  | 1.33          |
| 15년차          | 2029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15.0          |

■ 관세율 보기표 3 ■

|                       |                        |               |
|-----------------------|------------------------|---------------|
| 3. 홍삼정, 홍삼음료,<br>인삼음료 | HS CODE                | 2202.99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35/5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 (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75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33.25         |
| 2년차                   | 2016년                  | 31.50         |
| 3년차                   | 2017년                  | 29.75         |
| 4년차                   | 2018년                  | 28.00         |
| 5년차                   | 2019년                  | 26.25         |
| 6년차                   | 2020년                  | 24.50         |
| 7년차                   | 2021년                  | 22.75         |
| 8년차                   | 2022년                  | 21.00         |
| 9년차                   | 2023년                  | 19.25         |
| 10년차                  | 2024년                  | 17.50         |
| 11년차                  | 2025년                  | 15.75         |
| 12년차                  | 2026년                  | 14.00         |
| 13년차                  | 2027년                  | 12.25         |
| 14년차                  | 2028년                  | 10.50         |
| 15년차                  | 2029년                  | 8.75          |
| 16년차                  | 2030년                  | 7.00          |
| 17년차                  | 2031년                  | 5.25          |
| 18년차                  | 2032년                  | 3.50          |
| 19년차                  | 2033년                  | 1.75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29.5          |

※ 2202.9000 기타 무알코올 음료의 2018년도 MFN 일반관세율은 5%로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

관세율 보기표 4

|              |                        |              |
|--------------|------------------------|--------------|
| 4. 홍삼절편/정과   | HS CODE                | 2006.009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30/5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5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28.50        |
| 2년차          | 2016년                  | 27.00        |
| 3년차          | 2017년                  | 25.50        |
| 4년차          | 2018년                  | 24.00        |
| 5년차          | 2019년                  | 22.50        |
| 6년차          | 2020년                  | 21.00        |
| 7년차          | 2021년                  | 19.50        |
| 8년차          | 2022년                  | 18.00        |
| 9년차          | 2023년                  | 16.50        |
| 10년차         | 2024년                  | 15.00        |
| 11년차         | 2025년                  | 13.50        |
| 12년차         | 2026년                  | 12.00        |
| 13년차         | 2027년                  | 10.50        |
| 14년차         | 2028년                  | 9.00         |
| 15년차         | 2029년                  | 7.50         |
| 16년차         | 2030년                  | 6.00         |
| 17년차         | 2031년                  | 4.50         |
| 18년차         | 2032년                  | 3.00         |
| 19년차         | 2033년                  | 1.50         |
| 20년차         | 2034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 검역 요구

- 6년근 이상 인삼 조제품은 중약재/보건식품으로 등록 후 수입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5년근 이하 인공재배한 뿌리와 줄기를 사용한 제품에 한해 “일반식품”으로 수입이 가능
- 홍삼절편, 홍삼정과는 국가표준 적용에 대한 의견 차이(절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로 수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어 사전 수입 항구 검역국에 최종 확인 후 수출 진행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7101-2015 饮料(음료)

- ※ 홍삼음료와 홍삼정은 음료의 국가표준이 적용되며, 기타 식품첨가제 등은 통용표준 중 음료의 상세 분류에 따라 개별 적용됨
- ※ 홍삼절편/정과는 당절임식품의 국가표준이 적용이 적합하나, 일부 검역국별로 의견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입예정 항구별 확인 필요

### ■ 불합격 사례

- 해당 항목은 인삼/홍삼의 생산지 특성상 한국제품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인삼/홍삼 전체 제품의 불합격 사례 기준으로 작성함

####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6월 | 1       | 1   | 100% |
| 합계 | 1       | 1   | 100% |

#### ■ 제품 불합격 사례(불합격 사례 전체)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6월 | 2106909090 | **홍삼차(고형음료) | 균락총수 초과 | 산동성 |

### 제품 불합격 유형(한국산)

| 유형        | 건수 |
|-----------|----|
| 균락충수 초과검출 | 1  |

#### ■ 불합격 사례 분석

##### - 미생물 초과검출

- 홍삼차의 경우 원료 투입 전 세척 등 위생관리에 미흡하거나 고품분으로 가공시 수분 함량이 높을 경우 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미생물 초과 검출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함

##### - 라벨 불합격

- 인삼/홍삼 제품은 중국의 신식품원료 규정에 따라 5년근 이하 인공 재배한 뿌리와 줄기에 한해 하루 섭취 제한량 3g 미만인 일반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함. 단, 중문라벨에 임산부 수유기 여성과 14세 이하 어린이의 섭취 제한에 관한 문구를 기재해야 함. 신식품원료 관련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문라벨을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정확한 중문라벨을 작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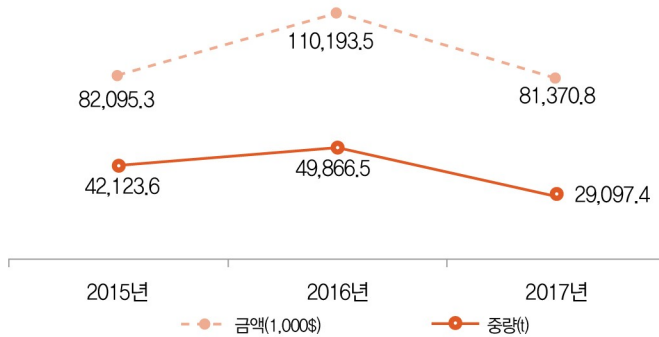
##### - 구비서류 미제출

- 인삼/홍삼 제품은 신식품원료 규정에 따라 5년근 이하 인공재배한 뿌리와 줄기만을 사용해야 하며, 완제품에 사용된 인삼의 원료에 대한 증명으로 “경작증명서”의 중국대사관 인증 문서를 요청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5년근 이하 인공재배한 뿌리, 줄기 가능                           |
| 2. 중문라벨      | 예포장된 제품일 경우 임산부, 영유아 섭취 제한 문구 기재, 규정에 맞는 중문라벨 제작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경작증명서 주한중국대사관 인증서 제출(검역국별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 4. HS CODE   | 원료, 성분, 유형에 따른 코드 분류, 사전 심의 후 확정                 |

## 파. 과실류

### 과실류 116 수출실적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1) 견과류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식물검역증(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2008.1999 혼합견과



관세율 보기표 1

| 1. 혼합견과류     | HS CODE                | 2008,1999    |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0/5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0(1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0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9.00         |
| 2년차          | 2016년                  | 8.00         |
| 3년차          | 2017년                  | 7.00         |
| 4년차          | 2018년                  | 6.00         |
| 5년차          | 2019년                  | 5.00         |
| 6년차          | 2020년                  | 4.00         |
| 7년차          | 2021년                  | 3.00         |
| 8년차          | 2022년                  | 2.00         |
| 9년차          | 2023년                  | 1.00         |
| 10년차         | 2024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5.00         |

## ■ 검역 요구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9300-2014 坚果与籽类食品(견과 및 씨앗류 식품)

##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생건조 및 익힌 견과 및 씨앗류 식품에 적용함

## 2. 용어 및 정의

## 2.1 견과 및 씨앗류 식품

견과, 씨앗류 혹은 그 알맹이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 제조된 식품

#### 2.1.1 견과

딱딱한 껍질을 가진 목본류 식물의 씨앗으로 호두, 바, 살구씨, 아몬드, 산복사씨, 피스타치오, 비자, 마카다미아, 잣 등을 포함함

#### 2.1.2 씨앗류

박, 과일, 채소, 유지류 등 식물의 씨앗으로 해바라기씨, 수박씨, 호박씨, 땅콩, 참두, 완두, 대두 등을 포함함

#### 2.1.3 씨앗(과일의 알맹이 포함)

견과, 씨앗의 껍질을 제거한 부분

#### 2.2 생건조 견과 및 씨앗류 식품

세척, 선별 혹은 껍질 제거와 건조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 익힘 공정을 통해 가공된 견과 및 씨앗류 식품

#### 2.3 익힌 견과 및 씨앗류 식품

견과 및 씨앗류 혹은 그 알맹이를 주원료로 하여, 기타 부원료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볶기, 튀기기, 찌기 혹은 기타 익힘 공정을 통해 제조된 식품  
주: 익힌 견과류 및 씨앗류 식품도 전통적인 볶음식품(炒貨)이라고 부른다.

#### 2.4 곰팡이가 핀 입자

껍질 혹은 알맹이에 곰팡이가 핀 입자

### 3. 분류

가공방식에 따라 생건조 견과, 씨앗류식품과 익힌견과류 및 씨앗류 식품으로 구분함

### 4. 기술 요구

#### 4.1 원료 요구

원료는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4.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방법                                                                                                                               |
|-------------------------------------------|------------------------|------------------------------------------------------------------------------------------------------------------------------------|
| 맛, 냄새                                     | 산패된 것과 같은<br>냄새가 없어야 함 | 샘플을 채취하여 깨끗하고 건조한<br>흰색 쟁반에 올려두고, 자연광<br>아래에서 관찰함. 냄새를 맡고 맛을<br>보고 곰팡이 변색된 입자가 있는지<br>확인 후 비율을 계산함. 검사 방법은<br>별도의 기준을 참고(국가표준 부록A) |
| 곰팡이변색알갱이/%<br>겉질이 있는 제품 ≤<br>겉질을 제거한 제품 ≤ | 2.0<br>0.5             |                                                                                                                                    |
| 이물질                                       | 육안으로 보이는<br>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4.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지표   |      |       |      |
|---------------------------|------|------|-------|------|
|                           | 생건조  |      | 익힌 것  |      |
|                           | 견과   | 씨앗류  | 해바라기씨 | 기타   |
| 과산화물값(지방으로 계산)/(g/100g) ≤ | 0.08 | 0.40 | 0.80  | 0.50 |
| 산가(지방으로 계산)(KOH)/(mg/g) ≤ | 3    |      |       |      |

지방함량이 낮은 참두, 밤 등은 산가, 과산화물값은 측정하지 않음

## 4.4 오염물질 제한량

4.4.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그중 콩류식품은 GB2762 중 콩류 및 그 제품의 규정에 따르고, 기타 품종은 GB2762 중 견과 및 씨앗류의 규정에 따름

| 검사 항목     | 지표 (mg/kg) |
|-----------|------------|
| 납         | 0.2        |
| 카드뮴<br>망크 | 0.5        |

4.4.2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그중 콩류식품은 GB2761의 콩류 및 그 제품의 규정에 따르고, 기타 품종은 GB2761 중 견과 및 씨앗류의 규정에 따름

| 검사 항목          |        | 지표 ( $\mu\text{g/kg}$ ) |
|----------------|--------|-------------------------|
| 아플라톡신B1        |        |                         |
| 땅콩 및 땅콩류 제품    | $\leq$ | 20                      |
| 기타 익힌 견과류 및 씨앗 | $\leq$ | 5.0                     |

#### 4.5 농약잔류 제한량

생건조 견과 및 씨앗류 식품의 농약잔류 제한량은 GB2763의 규정을 따라야 함

#### 4.6 미생물 제한량

4.6.1 병원균 제한량은 GB29921의 규정에 따름

4.6.2 익힌 견과 및 씨앗류 식품과 직접 식용이 가능한 생견과류 및 씨앗류 식품의 미생물 함량은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3> 미생물 제한량 규정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검사 방법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 대장균군        | 5                        | 2 | 10 | 102 | GB4789.3<br>평판계수법 |
| 곰팡이균 $\leq$ | 25                       |   |    |     | GB4789.15         |

※ 곰팡이균은 볶는 제조공정이 있는 익힌 견과와 씨앗류 식품에만 적용한다.

#### 4.7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식품첨가제 사용은 GB276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2018년 1~10월 질검중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2월 | 3       | 1   | 33.3% |
| 3월 | 1       | 0   | 0%    |
| 6월 | 4       | 0   | 0%    |
| 9월 | 1       | 0   | 0%    |
| 합계 | 9       | 1   | 11.1%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국가 및 한국산)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2월 | 2008199990 | **대만산 아몬드        | 곰팡이균 초과검출 | 하문  |
|    | 2008199990 | **한국산 매일견과       | 곰팡이균 초과검출 | 상해  |
|    | 2008199990 | 대만산 구운 견과        | 곰팡이균 초과검출 | 복건성 |
| 3월 | 2008199990 | **대만산 캐슈넛        | 라벨 불합격    | 상해  |
| 6월 | 2008199990 | **이탈리아산 피스타치오 2종 | 곰팡이균 초과검출 | 상해  |
|    | 2008199990 | **대만산 해바라기씨      | 라벨 불합격    | 하문  |
|    | 2008199990 | **대만산 잠두         | 라벨 불합격    | 하문  |
| 9월 | 2008199990 | **대만산 종합견과       | 곰팡이균 초과검출 | 심천  |

■ 제품 불합격 유형 ■

| 유형             | 건수 |
|----------------|----|
| 라벨 불합격         | 3  |
| 미생물(곰팡이균) 초과검출 | 6  |

## ■ 불합격 사례 분석

### - 미생물 초과검출

- 견과류는 곰팡이균 번식이 쉽게 되므로 산패가 되거나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해야 함

### - 라벨 불합격

- 견과류의 명칭은 영문학명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중문명칭으로 기재해야 함. 통속적으로 불리는 견과류의 명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른 품종으로 오인되어 유통시 식파라치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아몬드(扁桃仁)와 살구씨(杏仁)의 중문명 혼동 사례)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견과류의 정확한 영문 학명 확인<br>첨가제를 첨가하여 가공시 첨가제 첨가가능 여부 사전확인                                 |
| 2. 중문라벨      | 중문라벨에 기재되는 견과류 성분 명칭 정확하게 기재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식물검역증 제출<br>미생물 번식이 되지 않도록 위생, 운송 관리 유의                                             |
| 4. HS CODE   |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견과류 외 생건조 견과류는 0801, 0802로 분류되며, 중국의 허가 국가 및 품목 명단에 한국산 제품은 없으므로 유의 |

## (2) 신선 포도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식물검역증(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0806.1000 신선포도

■ 관세율 보기표 1 ■

|              |                        |              |
|--------------|------------------------|--------------|
| 1. 신선포도      | HS CODE                | 0806.1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3/13        |
|              | 증치세율(%)                | 10           |
|              | FTA 양허조건               | 10(1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3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1.70        |
| 2년차          | 2016년                  | 10.40        |
| 3년차          | 2017년                  | 9.10         |
| 4년차          | 2018년                  | 7.80         |
| 5년차          | 2019년                  | 6.50         |
| 6년차          | 2020년                  | 5.20         |
| 7년차          | 2021년                  | 3.90         |
| 8년차          | 2022년                  | 2.60         |
| 9년차          | 2023년                  | 1.30         |
| 10년차         | 2024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 검역 요구

2015년 8월 5일 한국산 포도의 수입검역 요구에 관한 공고가 정식 발표되어 수입검역 요건을 갖춘 제품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함

단, 중국에 수출 포도단지(선과장 및 농가) 등록, 재배기간 중 중국측 우려 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 포도 입봉재배, 수출검역 후 검역증 발급 등 조건부 수출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함.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 검역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14호를 참고하여 진행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62오염물질 제한량 기준

| 검사 항목           | 지표 (mg/kg) |
|-----------------|------------|
| 납<br>신선과일 중 다육과 | 0.2        |
| 카드뮴<br>신선과일     | 0.05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63 농약 잔류량 제한량 기준

※ 해당 표준 중 “포도”의 항목 규정에 따름

(3) 과일주스/유자차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HS CODE 및 관세율

- 2009. 과일주스
- 2009.9010 혼합과실주스(기타 단품 과일주스는 개별 코드 조회)
- 2106.9090 과육이 포함된 당/꿀절임 유자차



■ 관세율 보기표 1 ■

| 1. 혼합과일주스    | HS CODE                | 2009.9010    |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5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5(15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5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8.67        |
| 2년차          | 2016년                  | 17.33        |
| 3년차          | 2017년                  | 16.00        |
| 4년차          | 2018년                  | 14.67        |
| 5년차          | 2019년                  | 13.33        |
| 6년차          | 2020년                  | 12.00        |
| 7년차          | 2021년                  | 10.67        |
| 8년차          | 2022년                  | 9.33         |
| 9년차          | 2023년                  | 8.00         |
| 10년차         | 2024년                  | 6.67         |
| 11년차         | 2025년                  | 5.33         |
| 12년차         | 2026년                  | 4.00         |
| 13년차         | 2027년                  | 2.67         |
| 14년차         | 2028년                  | 1.33         |
| 15년차         | 2029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17.4         |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2. 과육이 포함된 당 /<br>꿀절임 유자차 | HS CODE                | 2106.909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12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PR-8      |
|                           | 균등철폐세율(%)              | 0.32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9.68     |
| 2년차                       | 2016년                  | 19.36     |
| 3년차                       | 2017년                  | 19.04     |
| 4년차                       | 2018년                  | 18.72     |
| 5년차                       | 2019년                  | 18.40     |
| 아태무역협정(APTA)              |                        | 18.4      |

#### 검역 요구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7101-2015 饮料(음료)

과일주스, 당절임 유자차는 GB7101-2015 음료의 국가표준이 적용됨

#### 2018년 1~10월 질검총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1월 | 2       | 0   | 0% |
| 5월 | 1       | 0   | 0% |
| 6월 | 1       | 0   | 0% |
| 합계 | 4       | 0   | 0% |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 국가 전체)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1월 | 2009901000 | **오스트리아산<br>크랜베리주스음료(가당) | 관련 서류 미비                          | 상해  |
|    | 2009901000 | **오스트리아산<br>복합과일주스       | 영양강화제 비타민B1, 비타민B2<br>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5월 | 2009901000 | **독일산 복합과일주스             | 영양강화제 판토텐산, 비오틴,<br>비타민B1 초과범위 사용 | 광둥성 |
| 6월 | 2009901000 | **태국산 복합망고주스             | 라벨 불합격                            | 상해  |

### ■ 제품 불합격 유형 ■

| 유형             | 건수 |
|----------------|----|
| 라벨 불합격         | 1  |
| 영양강화제 과다/초과 사용 | 2  |
| 구비서류 미제출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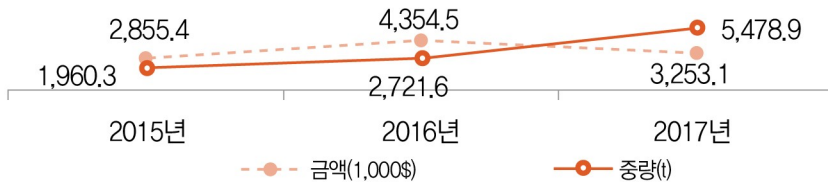
#### ■ 불합격 사례 분석

- 식품첨가제/영양강화제 초과 사용
  - 5월 수입된 독일산 복합 과일주스의 경우 영양강화제 초과 사용으로 불합격되었으며, 판토텐산은 국가표준 영양강화제 GB14880-2012에 따라 과일주스에 사용 불가
- 라벨 불합격
  - 라벨에 정확한 과일의 명칭을 기재하고, 과즙의 함량이 100%가 아닌 경우 기타 첨가제나 부원료의 첨가 가능여부 사전 심의
- 곰팡이균 초과검출
  - 과일의 세척 단계부터 최종 생산 단계까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불합격 사례중 기타국가의 제품 다수가 곰팡이균 초과 검출로 반송이나 폐기 조치되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일반적으로 식용 관습이 있는 품종이 아닌 경우 중국에서 허가한 과일 품종인지 사전 확인         |
| 2. 중문라벨      | 식품첨가제가 첨가된 경우 사전 심의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식품첨가제 과다 사용 유의<br>곰팡이균 초과 검출 유의                          |
| 4. HS CODE   | 과즙의 순 함량이 물이나 기타 부원료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일반 음료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

## 하. 곡류

### 곡류 111 수출실적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1) 쌀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식물검역증(농림축산검역본부)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HS CODE 및 관세율

- 1006.2090 현미
- 1006.3090 정미
- 1006.4090 절미

■ 관세율 보기표 1 ■

|              |                        |                                     |
|--------------|------------------------|-------------------------------------|
| 1. 현미, 정미    | HS CODE                | 1006.2090<br>1006.3090<br>1006.409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65/65                               |
|              | 중치세율(%)                | 10                                  |
|              | FTA 양허조건               | E(현행유지)                             |
|              | 균등철폐세율(%)              | 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부터        | 65.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해당 품목은 쿼터제를 적용, 쿼터 외 65%, 쿼터 내 1% 부여

■ 검역 요구

2015년 12월 17일 중국 질검총국에서 한국산 쌀의 수입검역 요구에 관한 공고를 정식 공표하여 수입검역 요건을 갖춘 현미, 정미, 절미는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나, 이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 수출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함

- 쌀 가공공장 및 저장시설 검역본부 등록 후 중국 검역관의 현지 실사 후 승인
- 등록된 쌀 가공 공장에서 저장/가공/포장된 쌀에 한해 수출 허용
- 수출 전 훈증소독 후 훈증소독증명서 첨부
- 중국 수출용, 쌀의 유형, 가공공장명과 주소, 수출자명과 주소 중국어 표기
- 수출검역 후 식물검역증서 발급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62-2017 오염물질 제한량 기준 ■

| 검사 항목 | 지표(mg/kg) |
|-------|-----------|
| 납     | 0.2       |
| 카드뮴   | 0.2       |
| 크롬    | 1.0       |
| 총수은   | 0.02      |
| 무기비소  | 0.2       |
| 벤조피렌  | 5.0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61-2017 진균독소 제한량 기준 ■

| 검사 항목   | 지표(μg/kg) |
|---------|-----------|
| 아플라톡신B1 | 10        |
| 오크라톡신A  | 5.0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63-2016 농약 잔류량 제한량 기준 ■

| 항목                          | 제한량(mg/kg) |
|-----------------------------|------------|
| 벤설향론메틸(bensulfuron-methyl)  | 0.05       |
| 프레틸라클로르(pretilachlor)       | 0.1        |
| 벤퓨라카브(benfuracarb)          | 0.2*       |
| 펜토에이트(phenthoate)           | 0.05       |
| 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   | 1.0        |
| 프로파닐(propanil)              | 2.0        |
| 에디펜포스(edifenphos)           | 0.1        |
| 뷰타클로르(butachlor)            | 0.5        |
| 카벤다짐(carbendazim)           | 2.0        |
| 플루톨라닐(flutolanil)           | 1.0        |
| 몰리네이트(molinate)             | 0.1        |
|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 1.0        |

| 항목                             | 제한량(mg/kg) |
|--------------------------------|------------|
| 카바릴(carbaryl)                  | 1.0        |
| 퀴날포스(quinalphos)               | 0.2*       |
|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 | 0.05       |
| 술푸릴 플루오라이드(sulfuryl fluoride)  | 0.1*       |
| 말라티온(malathion)                | 0.1        |
| 싸이오사이클램(thiocyclam)            | 0.2        |
| 티오설팅-디소듐(thiosultap-disodium)  | 0.2        |
| 카르타프(cartap)                   | 0.1        |
|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 1.0*       |
|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 5.0        |
| 델타메트린(deltamethrin)            | 0.5        |
| 아이소프로카브(isoprocarb)            | 0.2        |
| 알드린(aldrin)                    | 0.02       |
| 디엘드린(dieldrin)                 | 0.02       |
|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 0.05       |
| 헵타클로르(heptachlor)              | 0.02       |

\* 임시 제한량

■ 2018년 1~10월 질검중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5월 | 1       | 0   | 0% |
| 합계 | 1       | 0   | 0%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 국가 전체)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5월 | 1006301001 | **태국산 흑잡쌀 | 관련 서류 미제출 | 상해 |

## ■ 불합격 사례 분석

### - 구비서류 미제출/서류 불합격

- 식물검역증 제출 및 선적서류와 실제 도착한 화물의 품종, 상태, 수량이 일치해야 함

### - 유해 해충 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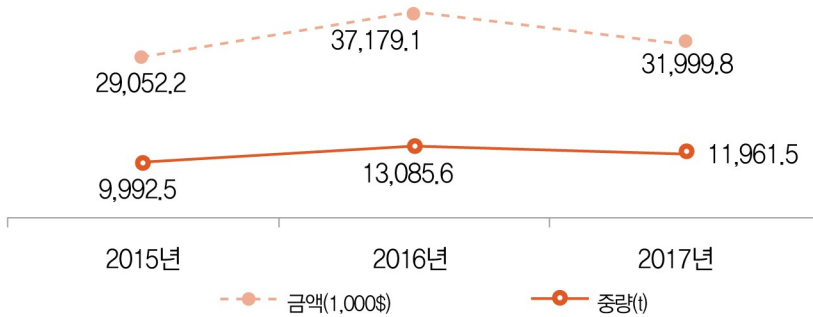
- 유해 병해충에 예찰 및 방역 조치에 대한 중국의 요구사항이 엄격하여 수출 전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현미/정미/절미에 한정함                             |
| 2. 중문라벨      | 중국 수출용, 쌀의 유형, 가공공장명과 주소, 수출자명과 주소 중국어 표기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식물검역증 제출                                  |
| 4. HS CODE   | -                                         |



## 거. 소스류

### ■ 소스류 143 수출실적 ■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1) 간장, 토마토케첩, 기타 소스류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 (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2103.10 간장
- 2103.20 토마토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 2103.90 기타(고추장, 된장, 조미료 등)

관세율 보기표 1

|              |                        |              |
|--------------|------------------------|--------------|
| 1. 간장        | HS CODE                | 2103.1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8/12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4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26.60        |
| 2년차          | 2016년                  | 25.20        |
| 3년차          | 2017년                  | 23.80        |
| 4년차          | 2018년                  | 22.40        |
| 5년차          | 2019년                  | 21.00        |
| 6년차          | 2020년                  | 19.60        |
| 7년차          | 2021년                  | 18.20        |
| 8년차          | 2022년                  | 16.80        |
| 9년차          | 2023년                  | 15.40        |
| 10년차         | 2024년                  | 14.00        |
| 11년차         | 2025년                  | 12.60        |
| 12년차         | 2026년                  | 11.20        |
| 13년차         | 2027년                  | 9.80         |
| 14년차         | 2028년                  | 8.40         |
| 15년차         | 2029년                  | 7.00         |
| 16년차         | 2030년                  | 5.60         |
| 17년차         | 2031년                  | 4.20         |
| 18년차         | 2032년                  | 2.80         |
| 19년차         | 2033년                  | 1.40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2. 토마토케첩     | HS CODE                | 2103.2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5/12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0(1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5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3.50        |
| 2년차          | 2016년                  | 12.00        |
| 3년차          | 2017년                  | 10.50        |
| 4년차          | 2018년                  | 9.00         |
| 5년차          | 2019년                  | 7.50         |
| 6년차          | 2020년                  | 6.00         |
| 7년차          | 2021년                  | 4.50         |
| 8년차          | 2022년                  | 3.00         |
| 9년차          | 2023년                  | 1.50         |
| 10년차         | 2024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관세율 보기표 3

|                          |                      |              |
|--------------------------|----------------------|--------------|
| 3. 기타 소스류<br>(고추장, 된장 등) | HS CODE              | 2103.9090    |
|                          | 기준관세율(%)/2018 MFN(%) | 21/12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20(2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05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9.95        |
| 2년차                      | 2016년                | 18.90        |
| 3년차                      | 2017년                | 17.85        |
| 4년차                      | 2018년                | 16.80        |
| 5년차                      | 2019년                | 15.75        |
| 6년차                      | 2020년                | 14.70        |
| 7년차                      | 2021년                | 13.65        |
| 8년차                      | 2022년                | 12.60        |
| 9년차                      | 2023년                | 11.55        |
| 10년차                     | 2024년                | 10.50        |
| 11년차                     | 2025년                | 9.45         |
| 12년차                     | 2026년                | 8.40         |
| 13년차                     | 2027년                | 7.35         |
| 14년차                     | 2028년                | 6.30         |
| 15년차                     | 2029년                | 5.25         |
| 16년차                     | 2030년                | 4.20         |
| 17년차                     | 2031년                | 3.15         |
| 18년차                     | 2032년                | 2.10         |
| 19년차                     | 2033년                | 1.05         |
| 20년차                     | 2034년 01월 01일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18.5         |

■ 검역 요구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18-2014 酿造酱(양조장류)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양조장류에 적용함

본 표준은 반고체상태의 복합조미료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용어 및 정의

2.1 양조장

곡물과(또는) 콩류를 주원료로 하여 미생물의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된 반고체상태의 조미품으로 춘장(面酱), 황두장(黄豆酱), 잠두장(蚕豆酱) 등이 있음

3. 기술 요구

3.1 원료 요구

3.1.1 곡류, 콩류는 GB2715의 규정을 따라야 함

3.1.2 기타 원부재료는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원료는 신선해야 하며, 반드시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3.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 구                                           | 검사 방법                                                           |
|-------|-----------------------------------------------|-----------------------------------------------------------------|
| 맛, 냄새 | 이취가 없어야 함                                     | 샘플을 깨끗한 백색 쟁반 위에 두고 자연광 아래에서 색과 상태를 점검하고, 냄새를 맡아봄. 입을 헹군 후 맛을 봄 |
| 상태    | 곰팡이가 슬거나 백색 서태가 끼지 않아야 하며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3.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방법        |
|-----------------|-------|-------------|
| 아미노태질소/(g/100g) | ≥ 0.3 | GB/T5009.40 |

### 3.4 오염물질 제한량

3.4.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3.4.2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 3.5 미생물 제한량

3.5.1 병원균 제한량은 GB29921의 규정을 따라야 함

3.5.2 미생물 제한량은 <표 3>의 규정에도 부합해야 함

<표 3>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대장균군  | 5                        | 2 | 10 | 102 |

### 3.6 식품첨가제

식품첨가제는 GB276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된장, 춘장 등 양조장의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 외 고추장, 간장, 기타 복합조미료는 하기 통용표준의 개별 항목별로 검역 진행 기타 추가 검역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62-2017 오염물질 제한량 기준

| 검사 항목 | 지표 (mg/kg) |
|-------|------------|
| 납     | 1.0        |
| 식염    | 2.0        |
| 향신료   | 3.0        |

| 검사 항목                                 | 지표 (mg/kg) |
|---------------------------------------|------------|
| 카드뮴                                   |            |
| 식염                                    | 0.5        |
| 어류조미품                                 | 0.1        |
| 총수은                                   |            |
| 식용염                                   | 0.1        |
| 비소                                    |            |
| 수산조미품, 해조류조미품 및 향신료 외 수산조미품(어류조미품 제외) | 0.5(총비소)   |
| 어류조미품                                 | 0.5(무기비소)  |
|                                       | 0.1(무기비소)  |
| 3-chloro-1,2-propanediol              |            |
| 액체형태 조미료                              | 0.4        |
| 고체형태 조미료                              | 1.0        |
| ※ 산분해식물단백질을 첨가한 제품에 적용                |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761-2017 진균독소 제한량 기준 | | | | |
| 검사 항목 | 지표 (μg/kg) | | | |
| 아플라톡신B1 |  | | | |
| 간장, 식초, 양조장 | 5.0 | | |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9921-2013 병원균 제한량 기준 | | | | |
| 즉석조미품 간장 소스 및 소스제품 수산조미품 복합조미료 (마요네즈 등)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살모넬라균 | 5 | 0 | 0 | - |
| 황색포도상구균 | 5 | 2 | 100CFU/g(mL) | 10000CFU/g(mL) |
| 비브리오균 | 5 | 1 | 100MPN/g(mL) | 1000MPN/g(mL) |

■ 2018년 1~10월 질검총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1월 | 6       | 5   | 83.3% |
| 3월 | 4       | 2   | 50%   |
| 4월 | 2       | 0   | 0%    |
| 5월 | 5       | 0   | 0%    |
| 6월 | 3       | 1   | 33.3% |
| 7월 | 1       | 0   | 0%    |
| 8월 | 2       | 1   | 50%   |
| 9월 | 5       | 0   | 0%    |
| 합계 | 28      | 9   | 32.1%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 국가 및 한국산 일부 발체)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1월 | 2103909000 | **한국산 카레 가루 5종     | 식품첨가제 아산화유황 초과범위 사용    | 산동성 |
|    | 2103909000 | **그리스산 올리브 소스(통조림) | 유통기한 초과                | 상해  |
| 3월 | 2103300000 | **호주산 과립 머스터드      | 식품첨가제 메타중아황산칼륨 초과범위 사용 | 상해  |
|    | 2103909000 | **이탈리아산 트러플조미료     | 라벨 불합격                 | 안휘성 |
|    | 2103909000 | **한국산 김치용 양념기름     | 관련 서류 미제출              | 상해  |
|    | 2103909000 | **한국산 김치용 양념기름     | 관련 서류 미제출              | 상해  |
| 4월 | 2103909000 | **대만산 간장           | 식품첨가제 DL-알라닌 초과범위 사용   | 하문  |
|    | 2103909000 | **대만산고추장           | 라벨 불합격                 | 하문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6월 | 2103100000 | **대만산 간장          | 아미노산질소 함량 국가표준 불합격   | 북건성 |
| 7월 | 2103100000 | **일본산 간장          | 영양강화제 비타민B1 초과범위 사용  | 강소성 |
| 9월 | 2103200000 | **이탈리아산 토마토페이스트2종 | 포장 불합격               | 상해  |
|    | 2103200000 | **요르단산 와사비 소스     | 포장 불합격               | 심천  |
|    | 2103909000 | **일본산 소스 2종       | 식품첨가제 사카린나트륨 초과범위 사용 | 심천  |

### ■ 제품 불합격 유형 ■

| 유형                    | 건수 |
|-----------------------|----|
| 라벨 불합격                | 5  |
| 구비 서류 미제출             | 5  |
| 유통기한 초과               | 1  |
|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과다/초과 사용 | 15 |

### ■ 불합격 사례 분석

#### - 식품첨가제 초과 사용

- 1월 불합격된 한국산 카레는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 초과사용으로 불합격됨. 이산화유황은 복합조미료에 사용 불가하며 “반고체형 복합조미료”에 사용 가능함. 카레가루는 가루의 형태로 반고체형이 아니므로 최종 첨가 불가
- 이산화유황은 마늘, 고추 등 조미료의 주원료가 될 수 있는 원재료로 인해 인공적으로 첨가하지 않더라도 자연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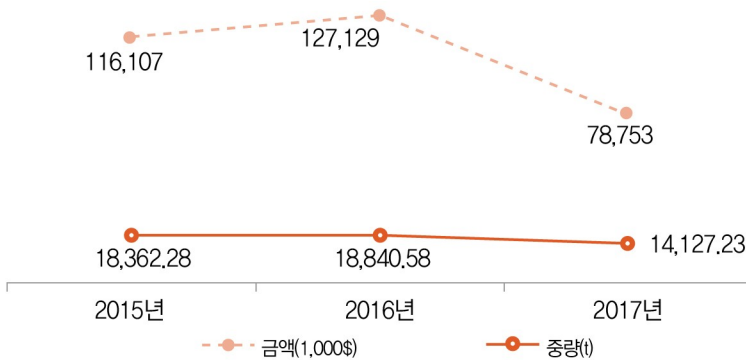
#### - 라벨 불합격

- 소스류의 명칭, 유형, 성분 등 관련 필수 기재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해야 함. 특히 제품 원료가 추가될 때 분류 유형이 변화될 경우 식품 첨가제 등 제한량 기준에 대한 품목이 변경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 사전 검토 필수                                                                |
| 2. 중문라벨      | 원재료 중 수산품이 포함된 경우 함량에 따라 수산조미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중문라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제품 명칭과 유형을 기재해야 함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                                                                             |
| 4. HS CODE   | -                                                                             |

## 너. 낙농품

### ■ 낙농품 241 수출실적 ■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1) 생유: 조제유, 저온살균유, 멸균유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동물검역증(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수입자(바이어)는 유제품수입자동허가를 사전에 획득해야 함

HS CODE 0401100000-0406900000, 1901100010, 1901900000, 2106909001, 3501100000, 3502200000에 해당하는 제품(유제품)은 수입자가 해관에 신고시 “유제품 자동 수입허가” 절차에 따라 자동수입허가 시스템에 신청 후 통과가 되면 발급되는 번호를 입력해야 해관에 수입 신고가 가능함. 생산자의 경우, CIQ 검역 신고시 한국 생산공장이 중국 CNCA(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조건 하에 수입 신고가 가능함

#### ■ HS CODE 및 관세율

-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0401.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 0401.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 0401.4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 0401.5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Ⅰ 관세율 보기표 1 Ⅰ

|              |                        |                                          |
|--------------|------------------------|------------------------------------------|
| 1. 생유        | HS CODE                | 0401.10<br>0401.20<br>0401.40<br>0401.5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5/15                                    |
|              | 중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E(현행유지)                                  |
|              | 균등철폐세율(%)              | 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부터        | 15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 검역 요구

- 유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공장으로 등록이 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생산공장 등록시 공장별 수출이 허용되는 제품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음. 2018년 8월 7일 기준 총 64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음
- 조제유와 살균유 중 현재 한국산 우유는 조제유가 주로 수출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조제유는 살균온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이며, 조제유는 반드시 기타 원료 혹은 식품첨가제(영양강화제)를 첨가해야 하는 규정상 “고칼슘” 등의 문구를 기재할 수 있어 특정 소비층에는 더욱 구매 홍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5191-2010 调制乳(조제유)

###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전지, 탈지 및 부분 탈지된 조제유에 적용함

### 2. 참고 문헌

본 가이드북에서는 세부 내용 생략

### 3. 용어 및 정의

#### 3.1 조제유 modified milk

80% 이상의 생유(生乳, 양유(羊乳) 포함) 혹은 환원유를 주원료로 하여, 기타 원료 혹은 식품첨가제 혹은 영양강화제를 첨가하여 적절한 살균 혹은 멸균처리하여 생산된 액체 상태의 제품

### 4. 기술 요구

#### 4.1 원료 요구

##### 4.1.1 생유: GB19301의 규정을 따라야 함

4.1.2 기타 원료: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4.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 구                                                                        | 검사 방법                                  |
|-------|----------------------------------------------------------------------------|----------------------------------------|
| 색, 광택 | 조제유 고유의 색과 광택                                                              | 샘플을 취해 50mL의 비커에                       |
| 맛, 냄새 | 조제유 고유의 향, 다른 냄새가 나지 않음                                                    | 담은 후 자연광 아래에서 색과                       |
| 상태    | 균일한 액체 상태로 덩어리가 지지 않아야 하며, 배합과 관련하여 부원료의 침전물이 있을 수 있음.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상태를 관찰하며, 다른 냄새가 나는지 맡아봄. 입을 행구고 맛을 봄. |

#### 4.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방법     |
|---------------------------|----|----------|
| 지방 <sup>a</sup> /(g/100g) | ≥  | 2.5      |
| 단백질/(g/100g)              | ≥  | 2.3      |
|                           |    | GB5413.3 |
|                           |    | GB5009.5 |

<sup>a</sup>전지 제품에만 적용함

#### 4.4 오염물질 제한량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mg/kg) |
|-------|-------------------|
| 납     | 0.05              |
| 총수은   | 0.01              |
| 총비소   | 0.1               |
| 크롬    | 0.3               |

#### 4.5 진균독소 제한량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
| 아플라톡신M1 | 0.5 $\mu$ g/kg |

#### 4.6 미생물 요구

4.6.1 멸균공정을 거쳐 생산된 조제유는 상업무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GB/T4789.26에 따라 검사를 진행함

4.6.2 기타 조제유는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3>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mL))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균락총수    | 5                            | 2 | 50000     | 100000 |
| 대장균군    | 5                            | 2 | 1         | 5      |
| 항색포도상구균 | 5                            | 0 | 0/25g(mL) | -      |
| 살모넬라균   | 5                            | 0 | 0/25g(mL) | -      |

#### 4.7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4.7.1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품질은 관련 안전표준과 규정을 따라야 함

4.7.2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사용은 GB2760과 GB1488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5. 기타

5.1 전부 분유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은 제품명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환원유”를 표기해야 함. 생유중 분유를 부분적으로 첨가하여 생산된 조제유는 제품명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XX% 환원유 포함” 문구를 기재해야 함

비고: “XX%”는 첨가된 분유가 조제유의 전유(全乳)고형분에서 차지하는 질량 분수를 지칭함

5.2 “환원유”와 제품명은 포장용기의 동일 주요 표시면에 표기해야 함. 표기한 “환원유”의 글자는 눈에 잘 띄어야 하며, 글자의 크기는 제품명의 글자 크기보다 작아서는 안 되고 글자체의 높이는 주요 주표시면 높이의 1/5보다 낮아서는 안 됨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9645-2010 巴氏杀菌乳(저온살균유(파스퇴르 살균유))

##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전지, 탈지와 부분 탈지된 저온살균유(파스퇴르 살균유)에 적용함

## 2. 참고 문헌

본 가이드북에서는 세부 내용 생략

## 3. 용어 및 정의

## 3.1 저온살균유 pasteurized milk

생유만을 원료로 하여 저온살균(파스퇴르살균) 등의 공정을 거쳐 얻어진 액체 상태의 제품

## 4. 기술 요구

## 4.1 원료 요구

생유: GB19301의 규정을 따라야 함

## 4.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 방법                                                                    |
|-------|---------------------------------------------------------------------------|--------------------------------------------------------------------------|
| 색     | 유백색, 미황색                                                                  |                                                                          |
| 맛, 냄새 | 이취가 없어야 함                                                                 | 샘플을 취해 50mL의 비커에 담은 후 자연광 아래에서 색과 상태를 관찰하며, 다른 냄새가 나는지가 알아봄. 입을 행구고 맛을 봄 |
| 상태    | 균일한 액체 상태로 덩어리가 지지 않아야 하며 배합과 관련하여 부원료의 침전물이 있을 수 있음.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4.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방법      |
|-----------------------------------|-------|-----------|
| 지방 <sup>a</sup> /(g/100g)         | ≥ 3.1 | GB5413.3  |
| 단백질/(g/100g)                      |       |           |
| 우유                                | ≥ 2.9 | GB5009.5  |
| 양유                                | ≥ 2.8 |           |
| 우유 중 지방과 물을 제외한<br>기타 성분 (무지유고형분) | ≥ 8.1 | GB5413.39 |
| 산도/(OT)                           |       |           |
| 우유                                | 12~18 | GB5413.34 |
| 양유                                | 6~13  |           |

<sup>a</sup>전지 제품에만 적용함

#### 4.4 오염물질 제한량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mg/kg) |
|-------|-------------------|
| 납     | 0.05              |
| 총수은   | 0.01              |
| 총비소   | 0.1               |
| 크롬    | 0.3               |

#### 4.5 진균독소 제한량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
| 아플라톡신M1 | 0.5 $\mu$ g/kg |

#### 4.6 미생물 요구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lt;표 3&gt;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mL))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균락총수    | 5                            | 2 | 50000     | 100000 |
| 대장균군    | 5                            | 2 | 1         | 5      |
| 황색포도상구균 | 5                            | 0 | 0/25g(mL) | -      |
| 살모넬라균   | 5                            | 0 | 0/25g(mL) | -      |

## 5. 기타

- 5.1 제품 포장의 주표시면의 제품명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 제품명의 글자크기보다 작지 않고, 높이는 주표시면 높이의 1/5보다 낮지 않은 크기의 중국어로 “신선우유(양유)”를 표기해야 함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5190-2010 灭菌乳(멸균유)

###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전지, 탈지와 부분 탈지된 멸균유에 적용함

### 2. 참고 문헌

본 가이드북에서는 세부 내용 생략

### 3. 용어 및 정의

#### 3.1 초고온 멸균유 ultra high-temperature milk

생유를 원료로 하여 환원유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연속 유동하는 상태에서 최소 132℃의 온도에서 가열하여 아주 짧은 시간의 멸균을 유지한 뒤 무균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액체 상태의 제품

#### 3.2 레토르트 멸균유 retort sterilized milk

생유를 원료로 하여, 환원유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예열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용기에 주입하고 밀봉한 후 멸균 등 공정을 거쳐 제조한 액체 제품

#### 4. 기술 요구

##### 4.1 원료 요구

생유: GB19301의 규정을 따라야 함

분유: GB19644의 규정을 따라야 함

##### 4.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 구                                                                       | 검사 방법                                                                  |
|-------|---------------------------------------------------------------------------|------------------------------------------------------------------------|
| 색     | 유백색, 미황색                                                                  | 샘플을 취해 50mL의 비커에 담은 후 자연광 아래 색과 상태를 관찰하며, 다른 냄새가 나는지가 알아볼. 입을 행구고 맛을 봄 |
| 맛, 냄새 | 이취가 없어야 함                                                                 |                                                                        |
| 상태    | 균일한 액체 상태로 덩어리가 지지 않아야 하며 배합과 관련하여 부원료의 침전물이 있을 수 있음.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4.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지표    | 검사방법      |
|-------------------------------|-------|-----------|
| 지방 <sup>a</sup> /(g/100g)     | ≥ 3.1 | GB5413.3  |
| 단백질/(g/100g)                  |       |           |
| 우유                            | ≥ 2.9 | GB5009.5  |
| 양유                            | ≥ 2.8 |           |
| 우유 중 지방과 물을 제외한 기타 성분(무지유고형분) | ≥ 8.1 | GB5413.39 |
| 산도/(OT)                       |       |           |
| 우유                            | 12~18 | GB5413.34 |
| 양유                            | 6~13  |           |

<sup>a</sup>전지 제품에만 적용함

## 4.4 오염물질 제한량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
| 납     | 0.05mg/kg |
| 총수은   | 0.01mg/kg |
| 총비소   | 0.1mg/kg  |
| 크롬    | 0.3mg/kg  |

## 4.5 진균독소 제한량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
| 아플라톡신M1 | 0.5 $\mu$ g/kg |

## 4.6 미생물 요구

상업무균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GB/T 4789.26의 규정에 따라 검역함

## 5. 기타

5.1 생유만을 원료로 하는 초고온멸균유는 포장지의 주표시면 제품명의 가장 근접한 위치에 제품명의 글자크기보다 작지 않으면서 주표시면 높이의 1/5보다 낮지 않은 글자로 “생유(양)유”를 표시해야 함

5.2 전부 분유를 사용하여 생산한 멸균유 제품은 제품명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환원유”를 표기해야 함. 생유 중 분유를 부분적으로 첨가하여 생산된 조제유는 제품명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XX% 환원유 포함” 문구를 기재해야 함  
비고: “XX%”는 첨가된 분유가 멸균유 중 전유(全乳)고형분에서 차지하는 질량 분수를 지칭함

5.3 “환원유”와 제품명은 포장용기의 동일 주요 표시면에 표기해야 함. 표기한 “환원유”의 글자는 눈에 잘 띄어야 하며, 글자의 크기는 제품명의 글자 크기보다 작아서는 안 되고 글자체의 높이는 주요 주표시면 높이의 1/5보다 낮아서는 안 됨

■ 2018년 1~10월 질검총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3월 | 5       | 0   | 0% |
| 5월 | 1       | 0   | 0% |
| 6월 | 1       | 0   | 0% |
| 7월 | 1       | 0   | 0% |
| 9월 | 2       | 0   | 0% |
| 합계 | 10      | 0   | 0%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 국가 전체)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3월 | 0401200000 | **벨기에산 양젖(초고온 살균유) | 산도 초과검출                   | 하문  |
|    | 0401200000 | **프랑스산 부분 탈지우유     | 관련 증서 미제출                 | 상해  |
|    | 0401200000 | **프랑스산 전지우유        | 관련 증서 미제출                 | 상해  |
|    | 0401200000 | **호주산 전지우유         | 화물증서/실제화물 불일치             | 상해  |
|    | 0402100000 | **벨기에산 탈지분유        | 포장 불합격                    | 상해  |
| 5월 | 0401200000 | **호주산 전지우유         | 포장 불합격                    | 상해  |
| 6월 | 0402990000 | **이탈리아산 가당 연유      | 관련 서류 미제출                 | 천진  |
| 7월 | 0402990000 | **말레이시아산 가당 연유     | 단백질 함량비 국가표준 불합격          | 광둥성 |
| 9월 | 0402290000 | **호주산 어린이 분유 2종    | 식품첨가제 염화칼륨, 요드화칼륨 초과범위 사용 | 광둥성 |

## ■ 불합격 사례 분석

- 관련 증서 미제출/화물증서와 실제 화물 불일치
  - 유제품은 동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와 기타 선적서류상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일치해야 함(제품명, 수량, 수출업체 영문명 등)
- 유통기한 초과
  - 생유는 멸균유가 아니면 유통기한이 짧아 신속통관을 진행해야 하므로, 선적서류나 통관시 필수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조제유의 경우 식품첨가제/영양강화제 종류 및 제한량 준수 |
| 2. 중문라벨      | 국가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 표기 규정 반영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동물검역증 첨부                        |
| 4. HS CODE   |                                 |

## (2) 발효유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동물검역증(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 (계약서)

※ 수입자(바이어)는 유제품수입자동허가를 사전에 획득해야 함

### ■ HS CODE 및 관세율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 0403.1000 요구르트
- 0403.9000 기타

■ 관세율 보기표 1 ■

|              |                        |           |
|--------------|------------------------|-----------|
| 1. 요구르트      | HS CODE                | 0403.1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0/1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E(현행유지)   |
|              | 균등철폐세율(%)              | 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부터        | 1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 2. 기타        | HS CODE                | 0403.9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20/20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E(현행유지)   |
|              | 균등철폐세율(%)              | 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부터        | 2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 검역 요구

- 유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공장으로 등록이 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생산공장 등록시 공장별 수출이 허용되는 제품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음. 2018년 8월 6일 기준 총 64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음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19302-2010 发酵乳(발효유)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전지, 탈지와 부분 탈지된 조제유에 적용함

2. 참고 문헌

본 가이드북에서는 세부 내용 생략

3. 용어 및 정의

3.1 발효유(fermented milk)

생유 혹은 분유를 원료로 하여, 살균, 발효 후 PH수치를 낮춘 제품

3.1.1 요구르트(yoghurt)

생유 혹은 분유를 원료로 하여, 살균을 거쳐 스트렙토코커스 써모 필러스(*Streptococcus thermophilus*)와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Lactobacillus bulgaricus*), 락토바실러스 델브루에키이 서브스피시스 불가리쿠스(*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ecies bulgaricus*)를 접종하여 발효, 제조된 제품

3.1.2 풍미발효유(flavored fermented milk)

80% 이상의 생유 혹은 분유를 원료로 하여 기타 원료를 첨가한 후 살균, 발효 후 PH수치를 낮추고 발효 전후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과일과 채소, 곡물 등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제조된 제품

3.1.3 풍미 요구르트(flavored fermented milk)

80% 이상의 생유 혹은 분유를 원료로 하여 기타 원료를 첨가한 후 살균을 거쳐 스트렙토코커스 써모 필러스(*Streptococcus thermophilus*)와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Lactobacillus bulgaricus*), 락토바실러스 델브루에키이 서브스피시스 불가리쿠스(*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ecies bulgaricus*)를 접종하여 발효 전후에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과일과 채소, 곡물 등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제조된 제품

#### 4. 기술 요구

##### 4.1 원료 요구

4.1.1 생유: GB19301의 규정을 따라야 함

4.1.2 기타 원료: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4.1.3 발효균종: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락토바실러스 델브루에키이 서브스피시스 불가리쿠스), 스트렙토코커스 써모필러스 또는 기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허가한 사용 가능 균종

##### 4.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 구                                                           |                    | 검사 방법                                                                    |
|-------|---------------------------------------------------------------|--------------------|--------------------------------------------------------------------------|
|       | 발효유                                                           | 풍미발효유              |                                                                          |
| 색, 광택 | 색과 광택이 균일해야 하고 유백색 혹은 미황색을 띰                                  | 첨가한 성분에 부합하는 색과 광택 | 샘플을 취해 50mL의 비커에 담은 후 자연광 아래에서 색과 상태를 관찰하며, 다른 냄새가 나는지가 맡아봄. 입을 헹구고 맛을 봄 |
| 맛, 냄새 | 발효유 특유의 맛과 냄새                                                 | 첨가한 성분에 부합하는 맛과 냄새 |                                                                          |
| 상태    | 조각이 세밀하고 균일하며, 소량의 유청이 있을 수 있고, 풍미발효유가 가지고 있는 첨가된 성분 특유의 조직상태 |                    |                                                                          |

##### 4.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 지표  |       | 검사방법      |
|---------------------------|---|-----|-------|-----------|
|                           |   | 발효유 | 풍미발효유 |           |
| 지방 <sup>a</sup> /(g/100g) | ≥ | 3.1 | 2.5   | GB5413.3  |
| 단백질/(g/100g)              | ≥ | 8.1 | -     | GB5413.39 |



| 항목                               |   | 지표   |       | 검사방법      |
|----------------------------------|---|------|-------|-----------|
|                                  |   | 발효유  | 풍미발효유 |           |
| 우유 중 지방과 물을 제외한<br>기타 성분(무지유고형분) | ≥ | 2.9  | 2.3   | GB5009.5  |
| 산도/(OT)                          | ≥ | 70.0 |       | GB5413.34 |

<sup>a</sup>전지 제품에만 적용함

#### 4.4 오염물질 제한량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mg/kg) |
|-------|-------------------|
| 납     | 0.05              |
| 총수은   | 0.01              |
| 총비소   | 0.1               |
| 크롬    | 0.3               |

#### 4.5 진균독소 제한량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μg/kg) |
|---------|-------------------|
| 아플라톡신M1 | 0.5               |

#### 4.6 미생물 요구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3〉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mL))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대장균군    | 5                            | 2 | 1         | 5 |
| 황색포도상구균 | 5                            | 0 | 0/25g(mL) | - |
| 살모넬라균   | 5                            | 0 | 0/25g(mL) | - |
| 효모 ≤    | 100                          |   |           |   |
| 곰팡이균 ≤  | 30                           |   |           |   |

#### 4.7 유산균수

〈표 4〉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4〉 유산균수

| 검사 항목             | 제한량 (CFU/g(mL))       | 검사방법      |
|-------------------|-----------------------|-----------|
| 유산균수 <sup>a</sup> | ≥ 1 × 10 <sup>6</sup> | GB4789.35 |

<sup>a</sup>발효 후 열처리된 제품은 유산균수의 요구를 적용하지 않음

#### 4.8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4.8.1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품질은 관련 안전표준과 규정을 따라야 함

4.8.2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사용은 GB2760과 GB1488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5. 기타

5.1 발효후 열처리된 제품에는 반드시 “XX열처리발효유”, “XX열처리 풍미발효유”, “XX열처리요거트” 혹은 “XX열처리풍미요거트”를 기재해야 함

5.2 전량 분유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은 제품명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환원유”를 표기해야 함. 생유 중 분유를 부분적으로 첨가하여 생산된 조제유는 제품명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XX% 환원유 포함” 문구를 기재해야 함

비고: “XX%”는 첨가된 분유가 제품 중 전유(全乳)고형분에서 차지하는 질량 분수를 지칭함

5.3 “환원유”와 제품명은 포장용기의 동일 주요 표시면에 표기해야 함. 표기한 “환원유” 글자는 눈에 잘 띄어야 하며, 글자의 크기는 제품명의 글자 크기보다 커야 하며, 글자체의 높이는 주요 주표시면 높이의 1/5보다 낮아서는 안 됨

## ■ 2018년 1~10월 질검중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3월 | 5       | 0   | 0% |
| 합계 | 5       | 0   | 0% |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 국가 전체)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3월 | 0403100000 | **프랑스산 요구르트          | 관련 증서 미제출 | 상해 |
|    | 0403100000 | **프랑스산 아자맛 풍미 요구르트   | 관련 증서 미제출 | 상해 |
|    | 0403100000 | **프랑스산 레몬맛 풍미 요구르트   | 관련 증서 미제출 | 상해 |
|    | 0403100000 | **프랑스산 바닐라맛 풍미 요구르트  | 관련 증서 미제출 | 상해 |
|    | 0403100000 | **프랑스산 파인애플맛 풍미 요구르트 | 관련 증서 미제출 | 상해 |

## ■ 불합격 사례 분석

### - 관련 증서 미제출

- 유제품은 중국 CNCA 공장등록 후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중문라벨에 해당 공장등록 번호 등을 기재해야 함.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유제품의 성분 함량을 줄여서 생산하면 유제품 음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르트가 아닌 \*\*\*요구르트 음료로 기재 가능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영양강화제 종류 및 제한량 준수                                                  |
| 2. 중문라벨      | 국가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 표기 규정 반영<br>국가표준에서 정의한 정확한 제품유형기재<br>유산균종의 중국 허가 품종 사용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동물검역증 첨부                                                                 |
| 4. HS CODE   | -                                                                        |

### (3) 치즈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동물검역증(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수입자(바이어)는 유제품수입자동허가를 사전에 획득해야 함

#### ■ HS CODE 및 관세율

##### 0406 치즈와 커드(curd)

- 0406.10 신선한 치즈와 커드
- 0406.20 갈았거나 가루 형태를 한 모든 종류의 치즈
- 0406.3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형태의 것 제외)
- 0406.4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르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 0406.90 그 밖의 치즈

관세율 보기표 1

|                       |                        |                                                  |
|-----------------------|------------------------|--------------------------------------------------|
| 1. 치즈<br>(0406.40 제외) | HS CODE                | 0406.1000<br>0406.2000<br>0406.3000<br>0406.9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2/12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5(15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0.8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1.20                                            |
| 2년차                   | 2016년                  | 10.40                                            |
| 3년차                   | 2017년                  | 9.60                                             |
| 4년차                   | 2018년                  | 8.80                                             |
| 5년차                   | 2019년                  | 8.00                                             |
| 6년차                   | 2020년                  | 7.20                                             |
| 7년차                   | 2021년                  | 6.40                                             |
| 8년차                   | 2022년                  | 5.60                                             |
| 9년차                   | 2023년                  | 4.80                                             |
| 10년차                  | 2024년                  | 4.00                                             |
| 11년차                  | 2025년                  | 3.20                                             |
| 12년차                  | 2026년                  | 2.40                                             |
| 13년차                  | 2027년                  | 1.60                                             |
| 14년차                  | 2028년                  | 0.80                                             |
| 15년차                  | 2029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관세율 보기표 2 ■

|              |                        |              |
|--------------|------------------------|--------------|
| 2. 블루바인치즈    | HS CODE                | 0406.400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5/15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5(15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0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4.00        |
| 2년차          | 2016년                  | 13.00        |
| 3년차          | 2017년                  | 12.00        |
| 4년차          | 2018년                  | 11.00        |
| 5년차          | 2019년                  | 10.00        |
| 6년차          | 2020년                  | 9.00         |
| 7년차          | 2021년                  | 8.00         |
| 8년차          | 2022년                  | 7.00         |
| 9년차          | 2023년                  | 6.00         |
| 10년차         | 2024년                  | 5.00         |
| 11년차         | 2025년                  | 4.00         |
| 12년차         | 2026년                  | 3.00         |
| 13년차         | 2027년                  | 2.00         |
| 14년차         | 2028년                  | 1.00         |
| 15년차         | 2029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검역 요구

- 유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공장으로 등록이 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생산공장 등록시 공장별 수출이 허용되는 제품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음. 2018년 8월 6일 기준 총 64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음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5420-2010 干酪(치즈)

##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숙성치즈, 곰팡이 숙성 치즈와 미숙성 치즈에 적용함

## 2. 참고 문헌

본 가이드북에서는 세부 내용 생략

## 3. 용어 및 정의

## 3.1 치즈 cheese

성숙 혹은 미성숙된 연질, 반경질, 경질 혹은 특경질, 코딩된 유제품으로, 유청단백/카제인의 비율이 우유의 상응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치즈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됨

- a) 응결효모 혹은 기타 적합한 응결제의 작용으로 우유, 탈지유, 부분 탈지유, 크림, 유청크림, 버터밀크 중 1종 이상을 원료로 하여 단백질 응고 혹은 부분 응고하여 응고체 중 부분 유청을 제거하여 얻어짐. 이 과정은 유단백(특히 카제인 부분)의 농축 과정으로, 치즈 중 단백질의 함량이 원료 중 단백질의 함량보다 높음
- b) 가공 과정 중 우유와 유제품 중 단백질의 응고 과정을 거쳐 (a)에서 설명한 제품과 유사한 물리, 화학, 감각 특성이 있는 제품

## 3.1.1 숙성치즈 ripened cheese

생산후 바로 식용이 불가능하며, 일정한 온도 하에 일정 시간 저장을 하여 생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통해 생산되는 해당 치즈의 특성을 가진 치즈

## 3.1.2 곰팡이 숙성치즈 mould ripened cheese

주로 치즈 내부와(혹은) 표면의 특정 곰팡이균의 성장에 따라 숙성도가 진전되는 치즈

## 3.1.3 미숙성치즈 unripened cheese

미숙성치즈(신선치즈 포함)는 생산후 바로 식용 가능한 치즈

#### 4. 기술 요구

##### 4.1 원료 요구

4.1.1 생유: GB19301의 규정을 따라야 함

4.1.2 기타 원료: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4.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 구                          | 검사 방법                                                                    |
|-------|------------------------------|--------------------------------------------------------------------------|
| 색, 광택 | 제품 고유의 정상적인 색과 광택            | 샘플을 취해 50mL의 비커에 담은 후 자연광 아래에서 색과 상태를 관찰하며, 다른 냄새가 나는지가 맡아봄. 입을 헹구고 맛을 봄 |
| 맛, 냄새 | 제품 고유의 특성이 있는 맛과 냄새          |                                                                          |
| 상태    | 조각이 세밀하고 균일하며, 제품 고유의 경도가 있음 |                                                                          |

##### 4.3 오염물질 제한량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mg/kg) |
|-------|-------------------|
| 납     | 0.05              |

##### 4.4 진균독소 제한량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μg/kg) |
|---------|-------------------|
| 아플라톡신M1 | 0.5               |

##### 4.5 미생물 요구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lt;표 2&gt; 미생물 제한량

| 구분<br>검사 항목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
|                   | n                        | c  | m     | M    |
| 대장균군              | 5                        | 2  | 100   | 1000 |
| 항색포도상구균           | 5                        | 2  | 100   | 1000 |
| 살모넬라균             | 5                        | 0  | 0/25g | -    |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    | 5                        | 0  | 0/25g | -    |
| 효모 <sup>b</sup>   | ≤                        | 50 |       |      |
| 곰팡이균 <sup>b</sup> | ≤                        | 50 |       |      |

<sup>b</sup> 는 곰팡이 숙성치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4.6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4.6.1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품질은 관련 안전표준과 규정을 따라야 함

4.6.2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사용은 GB2760과 GB1488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25192-2010 再制干酪 (가공치즈)

####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가공치즈에 적용함

#### 2. 참고 문헌

본 가이드북에서는 세부 내용 생략

#### 3. 용어 및 정의

##### 3.1 가공 치즈(process(ed) cheese)

치즈(15% 비율 이상)를 주원료로 하여, 유화염을 첨가하고, 기타 원료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가열, 반죽, 유화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

#### 4. 기술 요구

##### 4.1 원료 요구

4.1.1 치즈: GB2100의 규정을 따라야 함

4.1.2 기타 원료: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4.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 방법                                                                   |
|-------|-------------------------------------------------------------------|-------------------------------------------------------------------------|
| 색, 광택 | 균일한 색과 광택                                                         |                                                                         |
| 맛, 냄새 | 입에서 잘 녹고, 버터의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제품 고유의 맛과 냄새가 있음                       | 샘플을 취해 50mL의 비커에 담은 후 자연광 아래에서 색과 상태를 관찰하며, 다른 냄새가 나는지 맡아봄. 입을 행구고 맛을 봄 |
| 상태    | 표면이 매끄럽고, 조직이 부드러우며, 제품 특유의 맛과 원료 입자가 있으며, 정상 시력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어야 함 |                                                                         |

##### 4.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지표                              |                                 |                                 |                                 |                       | 검사방법     |
|--------------------------------------------------|---------------------------------|---------------------------------|---------------------------------|---------------------------------|-----------------------|----------|
| 지방(건조물질 중) <sup>a</sup><br>(X <sub>1</sub> )/(%) | 60.0 ≤ X <sub>1</sub><br>≤ 75.0 | 45.0 ≤ X <sub>1</sub><br>< 60.0 | 25.0 ≤ X <sub>1</sub><br>< 45.0 | 10.0 ≤ X <sub>1</sub><br>< 25.0 | X <sub>1</sub> < 10.0 | GB5413.3 |
| 최소건조물질<br>함량 <sup>b</sup> (X <sub>2</sub> )/(%)  | 44                              | 41                              | 31                              | 29                              | 25                    | GB5009.3 |

##### 4.4 오염물질 제한량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mg/kg) |
|-------|-------------------|
| 납     | 760.05            |

## 4.5 진균독소 제한량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 $\mu\text{g/kg}$ ) |
|---------|--------------------------------|
| 아플라톡신M1 | 0.5                            |

## 4.6 미생물 요구

〈표 3〉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3〉 미생물 제한량

| 구분             | 샘플 시료의 검출 제한량 기준 (CFU/g) |    |       |      |
|----------------|--------------------------|----|-------|------|
| 검사 항목          | n                        | c  | m     | M    |
| 균락총수           | 5                        | 2  | 100   | 1000 |
| 대장균군           | 5                        | 2  | 100   | 1000 |
| 황색포도상구균        | 5                        | 2  | 100   | 1000 |
| 살모넬라균          | 5                        | 0  | 0/25g | -    |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 | 5                        | 0  | 0/25g | -    |
| 효모             | ≤                        | 50 |       |      |
| 곰팡이균           | ≤                        | 50 |       |      |

## 4.7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4.7.1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품질은 관련 안전표준과 규정을 따라야 함

4.7.2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사용은 GB2760과 GB1488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2018년 1~10월 질검총국 발표 수입 불합격 사례

■ 불합격 사례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 건수 및 비율 ■

| 시기 | 총 해당 건수 | 한국산 | 비율 |
|----|---------|-----|----|
| 1월 | 2       | 0   | 0% |
| 3월 | 10      | 0   | 0% |
| 4월 | 5       | 0   | 0% |
| 5월 | 4       | 0   | 0% |
| 6월 | 1       | 0   | 0% |
| 7월 | 1       | 0   | 0% |
| 8월 | 3       | 0   | 0% |
| 9월 | 2       | 0   | 0% |
| 합계 | 28      | 0   | 0% |

■ 제품 불합격 사례(기타 국가 일부 발체) ■

| 시기 | HS CODE    | 제품명                | 불합격 사유         | 지역  |
|----|------------|--------------------|----------------|-----|
| 1월 | 0406200000 | **미국산 모차렐라 치즈(피자용) | 화물증서/실제 화물 불일치 | 상해  |
|    | 0406300000 | **이탈리아산 모차렐라치즈     | 효모균 초과검출       | 상해  |
| 3월 | 0406200000 | **프랑스산 치즈 2종       | 관련 서류 미제출      | 상해  |
|    | 0406300000 | **이탈리아산 치즈 2종      | 곰팡이균/효모균 초과검출  | 상해  |
|    | 0406400000 | **프랑스산 치즈          | 대장균균 초과검출      | 상해  |
|    | 0406900000 | **프랑스산 치즈 4종       | 관련 서류 미제출      | 상해  |
| 4월 | 0406900000 | **프랑스산 치즈 4종       | 곰팡이균 초과검출      | 상해  |
| 5월 | 0406200000 | **백러시아산 치즈 3종      | 유통기한 초과        | 상해  |
|    | 0406900000 | **프랑스산 양젖 치즈       | 곰팡이균/효모균 초과검출  | 상해  |
| 6월 | 0406900000 | **미국산 치즈           | 식품첨가제 초과범위 사용  | 사천성 |
| 8월 | 0406900000 | **네덜란드산 치즈 슬라이스    | 제품 변질          | 상해  |
|    | 0406900000 | **스페인산 치즈          | 제품 변질          | 상해  |

### ■ 불합격 사례 분석

#### - 곰팡이균 초과검출

- 곰팡이 치즈를 제외하고는 곰팡이균 제한량 규정이 있으므로 생산시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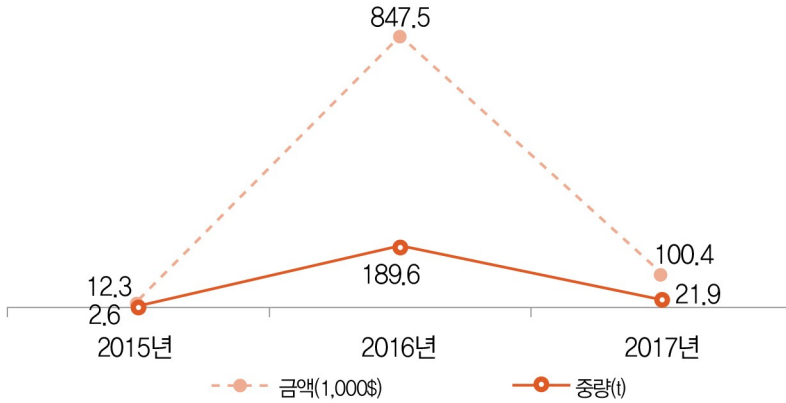
#### - 식품첨가제

- 질산나트륨은 치즈류에 첨가할 수 없는 첨가제로, 치즈 생산시 원료를 포함하여 모두 식품첨가제 제한 규정 GB2760에 부합하는 첨가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한량 규정이 있다면 이에 부합하도록 생산해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식품첨가제/영양강화제 종류 및 제한량 준수               |
| 2. 중문라벨      | 국가표준에서 정의한 정확한 치즈 유형기재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동물검역증 첨부<br>곰팡이 숙성치즈 제외, 곰팡이균 초과검출 유의 |
| 4. HS CODE   | -                                     |

## 더. 삼계탕

### 삼계탕 22015601 수출실적



※ 자료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 기본 선적서류 List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청 발급 가능)
- 영문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 동식물검역증(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Sales Contract(계약서)

#### ■ HS CODE 및 관세율

- 1602.3210 삼계탕(캔, 레토르트 포장)

■ 관세율 보기표 1 ■

|              |                        |              |
|--------------|------------------------|--------------|
| 1. 삼계탕       | HS CODE                | 1602.3210    |
|              | 기준관세율(%) / 2018 MFN(%) | 15/5         |
|              | 증치세율(%)                | 16           |
|              | FTA 양허조건               | 10(10년 균등철폐) |
|              | 균등철폐세율(%)              | 1.50         |
| 시행 연차        | 해당 연도                  | 적용 관세율(%)    |
| 1년차          | 2015년 12월 20일          | 13.50        |
| 2년차          | 2016년                  | 12.00        |
| 3년차          | 2017년                  | 10.50        |
| 4년차          | 2018년                  | 9.00         |
| 5년차          | 2019년                  | 7.50         |
| 6년차          | 2020년                  | 6.00         |
| 7년차          | 2021년                  | 4.50         |
| 8년차          | 2022년                  | 3.00         |
| 9년차          | 2023년                  | 1.50         |
| 10년차         | 2024년                  | 0.00         |
| 아태무역협정(APTA) |                        | -            |

## ■ 검역 요구

- 육류 제품은 국가별로 수입이 허가된 품목에 한해 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육류생산기업으로 등록이 된 업체에서 도축하여 생산된 제품만 중국 수출이 가능하며, 2018년 2월 9일 기준 한국의 경우 삼계탕 도축공장 8개, 삼계탕 생산공장 11개가 등록되어 있음
- 기타 육류 및 육가공품(기타 제품군에 쓰인 원료 포함)은 수출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함

▶ 식품안전 국가표준 GB7098-2015 罐头食品(통조림식품)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통조림 식품에 적용함

본 표준은 영유아 통조림 보조식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용어 및 정의

2.1 통조림 식품

과일, 채소, 식용균, 가금육, 수산동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처리 후 통조림으로 포장, 밀봉, 가열살균 등 절차를 거쳐 생산된 상업무균상태의 통조림 식품

2.2 통조림 팽창

통조림 내부 미생물의 활동 혹은 화학작용으로 인해 기체가 생성되어, 양압으로 인해 한쪽 끝 혹은 양쪽 끝이 밖으로 돌출되는 현상

2.3 상업무균

통조림식품은 적합한 온도의 살균과정을 거쳐, 병원성 미생물을 함유하지 않은, 일반 온도 하에서도 번식할 수 없는 비 병원성 미생물조차도 함유하지 않은 상태

3. 기술 요구

3.1 원료 요구

원료는 상응하는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3.2 감관지표

〈표 1〉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1〉 감관지표

| 항목  | 요구                                                                  | 검사방법      |
|-----|---------------------------------------------------------------------|-----------|
| 용기  | 밀봉상태가 완전해야 하며, 새거나 팽창하지 않아야 함. 용기외관 부식현상, 용기 내부의 도료가 벗겨지는 현상이 없어야 함 | GB/T10786 |
| 내용물 | 해당 통조림식품이 갖추어야 할 색, 냄새, 맛,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함                            |           |



### 3.3 이화지표

이화지표는 <표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표 2> 이화지표

| 항목                            |   | 지표              | 검시방법          |
|-------------------------------|---|-----------------|---------------|
| 히스타민 <sup>a</sup> / (mg/100g) | ≤ | 10 <sup>2</sup> | GB/T 5009.208 |
| 본크렉산 <sup>b</sup> / (mg/kg)   | ≤ | 0.25            | GB/T 5009.189 |

<sup>a</sup>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통조림에만 적용함

<sup>b</sup> 흰목이버섯에만 적용함

### 3.4 오염물질 제한량

3.4.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2762의 규정을 따라야 함

| 검사 항목            | 검출 제한량 기준 (mg/kg) |
|------------------|-------------------|
| 납<br>육류제품        | 0.5               |
| 총비소<br>육류 및 육류제품 | 0.5               |
| 크롬<br>육류 및 육류제품  | 1.0               |

3.4.2 진균독소 제한량은 GB2761의 규정을 따라야 함

### 3.5 미생물 제한량

3.5.1 통조림식품의 상업무균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GB4789.26의 규정에 따라 검역함

3.5.2 토마토케첩 통조림의 곰팡이계수(%시아)는 ≤50으로, GB4789.15 규정에 따라 검역함

### 3.6 식품첨가제와 식품영양강화제

3.6.1 식품첨가제 사용은 GB2760의 규정을 따라야 함

3.6.2 식품영양강화제 사용은 GB14880의 규정을 따라야 함

| 항목           | 유의사항                                                           |
|--------------|----------------------------------------------------------------|
| 1. 성분        | 사용된 인삼은 인공재배된 5년근 이하의 줄기와 뿌리일 것/한국의 생산공장/도축공장 등록 및 유지 여부 상시 확인 |
| 2. 중문라벨      | 인삼의 산식품원료 기재 규정에 따라 임산부, 영유아 인삼 섭취 제한 문구 기재                    |
| 3. 통관서류/검역항목 | 동물검역증 제출                                                       |
| 4. HS CODE   | -                                                              |

# 5

## 식품 수출시 유의사항

### 가. 사전 검토

중국 수출에 대한 무조건적 기대감으로 제품이나 카탈로그만 준비하여 바이어 미팅을 하고, 바이어로부터 발주서를 받고 제품을 선적까지 진행했으나 현지에서는 통관이 되지 않아 폐기되거나 반송되어 힘들게 개발한 신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중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중국의 식품 수입규정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화물이 중국에 도착한 뒤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수출 예정 제품의 성분이 수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나. 통관서류 준비

수출 전 제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 특히 중문라벨과 제품 포장지 및 성분표 등의 번역본 등 통관시 필요한 서류를 일괄 준비해 두고 바이어 미팅을 하는 것을 권장함

바이어 또한 검역조건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수입을 강행하다가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생산자나 수출자가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면, 바이어는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수고스러움도 덜 수 있어 같은 제품이라도 준비된 업체를 더욱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다. 품목별 검역 동향 파악

중국은 품목별로 검역 최신 동향을 발표하고 있고, 국가표준을 갱신하거나 새로 발표하고 있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검역 변경사항이나 통관거부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함



[2018년 하반기 해외 이슈조사] 중국 농식품 통관 가이드북

**보고서 기획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청두지사

**발행 일 :** 2018년 12월

**발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www.kati.net](http://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및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